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420-14

www.mifaff.go.kr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요령



2009. 12

농림수산식품자료실



0018569

 농림수산식품부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420-14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요령

2009. 12

|| 일러두기 ||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요령”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농어촌 정비법」 제5조(경관관리 계획의 수립), 「경관법」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및 「경관계획수립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5장(특정경관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 등이 농어촌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어촌경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수립요령을 참조하여 원활하게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요령은 농어촌경관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관자원의 조사·분석, 경관계획 및 실행계획의 내용, 방법 및 작성 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 하였습니다

본 요령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농어촌지역에서의 경관계획수립과 경관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을 참고하여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본 요령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이나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농어촌경관 관리·활용 매뉴얼은 참고자료로서 농어촌의 가치 있는 경관자원을 보전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형성을 위해 농어업 경관, 자연경관, 생활경관 등을 구성하는 농어촌경관 요소 등을 사례 중심으로 제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 적용과정에서 제도의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농어촌경관관리 유형별 사례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요령 · 1

I. 총 칙	3
1. 목 적	3
2. 농어촌경관계획의 법적 근거, 지위 및 성격	3
3. 농어촌경관계획의 대상 및 수립	4
II.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요령	6
1. 농어촌경관계획의 내용	6
2. 농어촌경관계획의 목표 및 방향	7
3. 농어촌경관 현황 조사	7
4. 농어촌경관 평가 및 과제 도출	9
5. 농어촌경관 기본구상	9
6. 경관유형별 계획	10
III. 농어촌경관계획의 실행	18
1. 실행계획의 범위	18
2. 농어촌 경관조례 반영사항	18
3. 농어촌지역에 대한 경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18
4. 연계 가능한 사업의 지원	19
5. 농어촌경관협약 관련 내용	20
6. 농어촌경관 관리체계 구축	20
IV.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계획	22
1.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계획의 내용	22
2. 재원조달	22
3. 단계적 추진계획	22

목 차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요령

농어촌경관 관리 · 활용 매뉴얼 · 25

I. 총 칙	27
1. 목 적	27
2. 주요내용	27
II. 농어업경관	29
1. 경작지 경관	29
2. 농어업생산시설경관	31
III. 자연경관	32
1. 산림경관	32
2. 자연생태경관	42
3. 하천경관	60
IV. 생활경관	80
1. 주거경관	80
2. 가로경관	98
3. 건축경관	121
4. 외부공간경관	136
5. 기타 시설물경관	153
6. 색채경관	162

표 목 차

〈표 1〉 한국의 식물대	33
〈표 2〉 녹지 조사 및 계획의 순서	34
〈표 3〉 산림경관 매뉴얼	35
〈표 4〉 용도에 따른 수종	35
〈표 5〉 계절별 적용 가능한 초화류	43
〈표 6〉 계절별 적용 가능한 수종 목록	44
〈표 7〉 절·성토 조성	45
〈표 8〉 접지유형별 조성형식 및 고려사항	45
〈표 9〉 자연생태경관 매뉴얼	46
〈표 10〉 생태통로 유형별 대상지역의 특징	49
〈표 11〉 생태통로의 유형별 설치내용	51
〈표 12〉 비탈면 녹화공법의 종류와 특징	56
〈표 13〉 재료에 따른 축구의 유형	58
〈표 14〉 하천경관 매뉴얼	61
〈표 15〉 어도의 유형 및 특징	69
〈표 16〉 주거경관 매뉴얼	81
〈표 17〉 전통지붕 관리	90
〈표 18〉 전통담 관리	93
〈표 19〉 가로경관 매뉴얼	99
〈표 20〉 높이에 따른 담장효과	118
〈표 21〉 담장의 재료별 기능 및 특징	119
〈표 22〉 건축경관 매뉴얼	122
〈표 23〉 마을회관의 배치유형	123
〈표 24〉 외부공간경관 매뉴얼	136
〈표 25〉 규모와 부지형태에 따른 마을공동쉼터 공간구성 사례	138
〈표 26〉 연령에 따른 마을공동쉼터의 공간별 도입가능 시설물	139
〈표 27〉 주차 유형별 특성	141
〈표 28〉 기타 시설물경관 매뉴얼	153
〈표 29〉 도로법상의 표지판의 유형	159
〈표 30〉 생활경관 색채 매뉴얼	163
〈표 31〉 역사·문화경관 색채 매뉴얼	174
〈표 32〉 외부공간 시설물 및 광고물 색채 매뉴얼	178

그림 목 차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요령

〈그림 1〉 농어촌경관계획의 수립단계별 내용	6
〈그림 2〉 함양 마천 다랑이 논	30
〈그림 3〉 봉평 메밀밭	30
〈그림 4〉 휴게공간으로 이용되는 마을 숲	36
〈그림 5〉 하천변에 조성한 마을 숲	36
〈그림 6〉 나무 보호 목재평상	38
〈그림 7〉 새집의 조형물 설치	38
〈그림 8〉 별 관찰 시설	40
〈그림 9〉 소규모 샘터, 약수터	41
〈그림 10〉 지붕으로 그늘을 만든 우물	41
〈그림 11〉 인공적인 생태연못 조성 사례	47
〈그림 12〉 우수정화연못으로 활용된 생태연못	47
〈그림 13〉 생태통로	50
〈그림 14〉 사람들에게 주의와 경고를 위한 안내표지판	52
〈그림 15〉 야생동물용 반사경	52
〈그림 16〉 비탈면 녹화	53
〈그림 17〉 비탈면 명칭	53
〈그림 18〉 관목 식재	54
〈그림 19〉 교목 식재	54
〈그림 20〉 초본류 식재	54
〈그림 21〉 야생화 식재	54
〈그림 22〉 석축의 종류	58
〈그림 23〉 계단식으로 식수대를 조성한 옹벽	59
〈그림 24〉 관목과 초화류를 식재한 석축	59
〈그림 25〉 목재를 활용한 옹벽	59
〈그림 26〉 슈퍼그래픽 처리	59
〈그림 27〉 여울과 소의 평면형태	63
〈그림 28〉 야생동물서식지 보호를 위한 하천의 하도 복구방법	63
〈그림 29〉 자연하천의 모습으로 복원한 자연호안	64

〈그림 30〉 돌과 넓은 초지로 복원한 친수호안	64
〈그림 31〉 목재를 이용한 호안 휴게시설	65
〈그림 32〉 자연석을 이용한 계단호안	65
〈그림 33〉 콘크리트로 만든 일반적인 계단식 어도	70
〈그림 34〉 자연석 블록을 이용한 계단식 어도	70
〈그림 35〉 인공블록 이용한 어도	70
〈그림 36〉 하천경계에 머무를 공간을 제공한 어도	70
〈그림 37〉 산책로와 쉼터로 이용하는 수변테크	71
〈그림 38〉 수변경관 전망공간으로 이용되는 수중테크	71
〈그림 39〉 벽걸이형 화단	72
〈그림 40〉 장식물을 부착한 데크 난간	72
〈그림 41〉 목재 난간을 설치한 데크(파주 헤이리)	72
〈그림 42〉 소리철 난간을 설치한 데크(파주 헤이리)	72
〈그림 43〉 물놀이장	74
〈그림 44〉 층계형 물놀이장	74
〈그림 45〉 실개울형태로 조성한 도섭지(경기 용인 삼성아파트)	74
〈그림 46〉 도섭지에 조성한 물놀이터(서울숲 공원)	74
〈그림 47〉 낚시를 위한 목재 수변벤치(좌)와 연안변 낚시데크(우)	76
〈그림 48〉 목재로 만든 간이 조류관찰시설(우면산 생태공원)	77
〈그림 49〉 짚으로 만든 간이 조류관찰시설(서천 금강하구)	77
〈그림 50〉 난간이 없는 아치형 자연석 다리	78
〈그림 51〉 난간이 있는 자연석 다리	78
〈그림 52〉 자연석으로 만든 징검다리(좌)와 쉼다리(우)	79
〈그림 53〉 다리난간을 활용한 그늘시렁	79
〈그림 54〉 단독주택 배치 예시	83
〈그림 55〉 지형에 따른 주택 배치 및 예시	84
〈그림 56〉 지형에 따른 옹벽 설치 및 예시	85
〈그림 57〉 주택단지 배치 및 예시	86
〈그림 58〉 100㎡(30평형)일반형 주거평면	87
〈그림 59〉 지붕 계획 및 예시	88
〈그림 60〉 보존상태가 좋은 전통 기와집과 전통 담	89
〈그림 61〉 원색의 행랑채 지붕을 전통기와지붕으로 복원한 사례	89

〈그림 62〉 출입구 계획 및 예시	91
〈그림 63〉 담장 및 외벽 계획 및 예시	92
〈그림 64〉 블록 담을 전통 담으로 교체한 사례	93
〈그림 65〉 목재, 황토, 기와지붕을 활용	96
〈그림 66〉 콘크리트로 건조하고 외벽은 황토	96
〈그림 67〉 복층형태의 방	97
〈그림 68〉 단체이용객들을 위한 방	97
〈그림 69〉 구병리 마을 마을공동숙박(펜션) 1층(좌)과 2층(우) 구상도면 ...	97
〈그림 70〉 가로수 식재(전남 순천 봉산리)	100
〈그림 71〉 초화류 식재(전남 순천 봉산리)	100
〈그림 72〉 중앙식수대와 도로변식재(일본)	101
〈그림 73〉 마을입구부 돌담(전남순천 봉산리)	101
〈그림 74〉 흙 포장(경북 안동 하회마을)	103
〈그림 75〉 쇠석 포장(전남순천 낙안읍성마을)	103
〈그림 76〉 담장변 식재	104
〈그림 77〉 자연석 돌담 복원	104
〈그림 78〉 자연지형을 활용한 자전거도로	105
〈그림 79〉 식수대로 구분한 자전거도로	105
〈그림 80〉 기존 흙포장을 활용하고 주변정비	108
〈그림 81〉 목재데크를 활용하여 조성	108
〈그림 82〉 자연석 디딤돌과 꽃잔디 식재	109
〈그림 83〉 흙포장과 주변의 초화류단지 식재	109
〈그림 84〉 주관찰로와 소형 관찰로	111
〈그림 85〉 숲속 자연관찰로	111
〈그림 86〉 습지 자연관찰로	111
〈그림 87〉 목재데크 계단	112
〈그림 88〉 자연석 돌계단	112
〈그림 89〉 자연스러운 흙포장 등산로	114
〈그림 90〉 경사면의 목재형 계단	114
〈그림 91〉 꽃으로 장식한 가로등	115
〈그림 92〉 장승형태의 정원등	115
〈그림 93〉 자연석을 이용한 경계석	117

〈그림 94〉 목재를 이용한 녹지경계목	117
〈그림 95〉 반투시형 전통담장	119
〈그림 96〉 장식용+반투시형 목재담장	119
〈그림 97〉 목재(대나무)	119
〈그림 98〉 자연석(강돌)	119
〈그림 99〉 흙담(흙+와편)	120
〈그림 100〉 흙담(흙+자연석)	120
〈그림 101〉 슈퍼그래픽 기법을 이용한 담장 정비사례	120
〈그림 102〉 천정고를 높여 넓어 보이는 단층형태의 마을회관	124
〈그림 103〉 기와지붕형태의 마을회관	124
〈그림 104〉 경사지붕의 설치	125
〈그림 105〉 통나무를 활용한 외벽	125
〈그림 106〉 전통형 마을회관(강원 화천 옹호리)	127
〈그림 107〉 펜션형 마을회관(전북 무주 두길리)	127
〈그림 108〉 황토찜질방의 외부	128
〈그림 109〉 황토찜질방의 내부	128
〈그림 110〉 안내홍보센터(일본)	130
〈그림 111〉 농특산물의 판매(일본)	130
〈그림 112〉 방문자센터의 외부공간을 활용한 음식만들기(떡매치기) 체험 ..	130
〈그림 113〉 메밀꽃밭을 조성한 농경지와 연계한 자연체험	130
〈그림 114〉 자연문화촌(일본 교토 미야마초)	131
〈그림 115〉 상설형식의 농특산물 판매장(일본 아치요초)	132
〈그림 116〉 간이 농특산물 판매장(일본 나라현)	132
〈그림 117〉 지역 방문객과 생산자가 이용한 판매소	133
〈그림 118〉 깔끔하게 정리된 농특산물의 진열	133
〈그림 119〉 자율적인 판매가격의 부착	133
〈그림 120〉 공예품 전시박물관의 외형(경북 울진 온정리)	134
〈그림 121〉 내부벽면에 배치한 각종 공예품(일본)	134
〈그림 122〉 일반 방형태의 체험프로그램의 운영(경북 울진 온정리)	135
〈그림 123〉 탁자와 의자를 배치한 체험작업시설(일본 미야마초)	135
〈그림 124〉 정자 목 아래 휴게공간의 조성	138
〈그림 125〉 전통놀이 체험을 위한 마을마당을 배치한 마을공동쉼터	138

〈그림 126〉 잔디마당형태의 야외공간(충남 홍성 문당리)	140
〈그림 127〉 야외공연장	140
〈그림 128〉 잔디블럭을 활용한 주차장(좌)과 쇠석을 활용한 주차장(우)	141
〈그림 129〉 기와지붕형 버스정류장	143
〈그림 130〉 일반목재형 버스정류장(강원 인제)	143
〈그림 131〉 마을안내소 겸용 버스정류장(일본)	143
〈그림 132〉 테마형 버스정류장(일본)	143
〈그림 133〉 친환경화장실 평면도(좌)와 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한 화장실의 원리(우)	145
〈그림 134〉 기와와 목재를 활용한 전통가옥형태의 화장실	145
〈그림 135〉 짚과 황토를 활용한 전통가옥형태의 화장실	145
〈그림 136〉 정자형태에 따른 패턴	147
〈그림 137〉 기와지붕과 목재를 활용한 육각형의 정자	147
〈그림 138〉 전통형의 재료를 사용한 복합형의 정자	147
〈그림 139〉 의자와 야외탁자를 배치한 파고라	149
〈그림 140〉 벤치기능을 함께 도입한 파고라	149
〈그림 141〉 목재로 만든 평상	150
〈그림 142〉 수목과 함께 조성한 평상	150
〈그림 143〉 마을종합안내판	155
〈그림 144〉 시설안내판 사례(경기 이천 자채방아마을(좌) 경기 양평 세미원(우))	155
〈그림 145〉 환경/역사/동식물 해설판 사례	156
〈그림 146〉 식물표찰 사례	157
〈그림 147〉 방향유도표지판 사례	157
〈그림 148〉 마을표지석·입간판 사례	158
〈그림 149〉 도로표지 규격	159
〈그림 150〉 배치에 따른 장승의 공간패턴	160
〈그림 151〉 마을입구에 설치한 솟대	161
〈그림 152〉 마을입구에 설치한 장승	161
〈그림 153〉 자연 색채경관 축색	164
〈그림 154〉 자연경관 분포도 분석	164
〈그림 155〉 역사문화 색채경관 축색	165
〈그림 156〉 역사문화 색채경관 분포도 분석	165
〈그림 157〉 지역 색 분포도 분석	166

〈그림 158〉 Color Concept의 설정	166
〈그림 159〉 Color Image의 설정	167
〈그림 160〉 Color Zoning	167
〈그림 161〉 지붕의 Color Pallet 작성	168
〈그림 162〉 벽, 담, 대문의 Color Pallet 작성	168
〈그림 163〉 주거경관 색채정비 사례	169
〈그림 164〉 가로등 색채경관 사례	170
〈그림 165〉 볼라드, 웬스, 음수대의 색채경관 사례	170
〈그림 166〉 건축경관 색채정비 사례	171
〈그림 167〉 창고 색채정비 사례	172
〈그림 168〉 역사·문화경관의 색채정비 사례	175
〈그림 169〉 향토문화경관에서 색채팔레트 개발 사례	176
〈그림 170〉 파고라 및 벤치의 색채경관 사례	179
〈그림 171〉 버스정류장의 색채경관 사례	179
〈그림 172〉 벤치 색채경관 사례	179
〈그림 173〉 표식시설물 색채경관 사례	180
〈그림 174〉 상업용 광고물 색채계획 사례	181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요령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요령

I. 총 칙

1. 목 적

1.1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요령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질법")제30조(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동법 시행령 제12조, 「농어촌정비법」 제5조(경관관리 계획의 수립), 동법 시행령 제4조, 「경관법」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및 「경관계획수립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5장(특정경관계획)에 따른 농어촌경관계획의 수립·시행 요령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요령은 농어촌경관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관자원의 조사·분석, 경관계획 및 실행계획의 내용, 방법 및 작성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2. 농어촌경관계획의 법적 근거, 지위 및 성격

2.1 법적 근거

- (1) 농어촌경관계획은 「경관법」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및 「경관계획수립지침」 제5장(특정경관계획), 「삶의질법」 제30조(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동법 시행령 제12조(농산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시책 등) 및 「농어촌정비법」 제5조(경관관리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수립한다.
- (2) 「삶의질법」 제5조(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종합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38조(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에서 농산어촌의 경관 보전을 위한 사항을 지역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2.2 지위 및 성격

- (1) 농어촌경관계획은 지역의 농어업 생산조건이 경관과 조화되도록 고려하여 농어업 경관, 자연경관, 생활경관 등 농어촌경관요소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보전·형성·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실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이다.

- (2) 농어촌경관계획은 「삶의질법」 제5조 및 제38조에 근거한 농산어촌지역종합개발 계획의 내용과 부합되어야 하며, 농어촌경관계획의 내용이 농산어촌지역종합개발 계획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농산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3) 농어촌경관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농어촌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도시 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농산어촌개발계획 및 시설도입계획이 농산어촌의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요령을 참조하여 경관부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5)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요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강제적 규정이 아니며,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별도의 경관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 하고 지원하는 성격을 갖는다.

3. 농어촌경관계획의 대상 및 수립

3.1 공간적 범위

- (1) 농어촌경관계획 수립 대상지역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어촌과 준농어촌”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할 수 있다.
- (2) 농어촌경관계획 대상에 따라 시·군, 읍·면, 권역, 지구, 마을단위 경관계획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유형에 따라 조사방법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3.2 내용적 범위

- (1) 농어촌경관계획 수립내용은 대상지역의 농어업경관, 자연경관, 생활경관을 구성하는 농어촌경관요소별 보전·형성·관리의 내용을 다룰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건축 경관 또는 색채경관 등의 부문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2) 농어촌경관의 보전·형성·관리의 내용은 농어촌에 산재한 우수한 농어촌경관자원을 찾아내어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 훼손된 농어촌경관을 복원 또는 농어촌생활의 시대적 흐름에 맞게 농어촌경관을 창출하는 것, 농어촌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3.3 계획수립권자

- (1) 농어촌경관계획은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한다)가 수립한다.
- (2)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농어촌경관계획은 시·도 또는 시·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의 농어촌정비사업과 연계한 경관계획수립 시행은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 및 인가를 거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4 농어촌경관계획의 지원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지역에 경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사업 및 예산이 우선하여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경관계획수립 및 농어촌경관 관련 조례 제정 등 농어촌경관 관리를 위한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지자체나 사업시행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경관자원 조사 및 경관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주민들이 경관관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II.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요령

1. 농어촌경관계획의 내용

1.1 「삶의질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농어촌경관계획은 기본목표 및 방향, 경관조사·평가, 기본구상, 경관유형·요소별 계획, 실행계획,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삶의질법에 따른 경관계획 내용	농어촌경관계획	세부 내용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농어촌경관계획의 목표 및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공간적, 시간적 범위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현황에 관한 사항	농어촌경관 현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현황 조사(자연현황, 인문사회현황) 농어촌경관자원 분포 조사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농어촌경관 평가 및 과제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평가 및 주민의식 조사 주요 경관의 문제점 분석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및 요령에 관한 사항	농어촌경관 기본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경관계획 대상 파악 경관주제 설정 주요 경관계획 대상별 경관구상
	농어촌경관 유형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시적 차원에서의 농어촌경관계획 경관유형에 따른 경관계획 : 농어업경관, 자연경관, 생활경관 등에 대한 경관계획
	농어촌 경관요소별 계획 및 설계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요소별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구성요소 경관계획 농어촌마을 시설물 경관계획 건축물계획, 색채계획 등 경관요소별 설계가이드라인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실행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경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경관사업 지정 및 내용 검토 경관조례 반영사항 경관관리 체계 구축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경관개선 재원조달 방안 단계별 추진계획

〈그림 1〉 농어촌경관계획의 수립단계별 내용

2. 농어촌경관계획의 목표 및 방향

2.1 농어촌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 (1) 지역 정체성 확보를 위한 이미지 연출, 지역 경관자원을 활용한 관광환경조성,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등 경관계획을 통한 성과목표를 제시한다.
- (2) 경관계획을 포함한 각 부문별 계획은 목표·전략·실천계획을 포함하여 계획의 내용이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 (3) 계획수립의 흐름도를 작성하고 경관계획의 내용을 각 장별로 간략히 제시한다.
- (4) 대상지의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농어촌경관은 대상지의 입지적 특성에 따라 도시근교, 산간부(또는 원격지), 평야부 경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입지 유형별로 중요한 경관계획의 착안점은 다음과 같다.

- ① **도시근교 농어촌경관**은 도시와 농어촌의 특성이 혼재되어 농어촌의 고유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나 접근성이 높아 농어촌 관광 및 도농교류 활동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이를 고려한 특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 ② **산간부 또는 원격지 농어촌경관**은 다른 유형에 비해 자연경관의 비중이 높고 산간부 농어업생산경관 자체의 고유성이 높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특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인공시설물 조성계획 시에는 능선 등 원래의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평야부 농어촌경관**은 비교적 시야가 넓어 농어업생산경관, 자연경관, 농어업 생산 기반시설 및 주거경관 등이 어우러진 원경이 시각적으로 중요하므로 자연 요소와 인공요소간의 조화를 고려한 특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3. 농어촌경관 현황 조사

3.1 일반현황 조사

- (1) 일반현황 조사는 자연환경과 인문사회환경으로 구분하여 특성을 제시한다.
- (2) 자연환경은 지형, 녹지 및 동·식물상 등을 조사한다.
- (3) 인문사회환경은 농어촌의 구성요소가 되는 토지이용, 역사적 유산, 랜드마크 등에 대해 조사한다.

3.2 농어촌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 (1) 농어촌의 경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경작지 및 산림의 지형과 녹지, 동·식물, 역사적 유산, 취락경관, 토지이용, 농어업생산시설, 생활기반시설, 랜드마크, 주요 조망점, 농업활동 등 경관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 (2) 경관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어촌경관자원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경관자원의 분포 및 현황을 조사한다.
- (3) 경관자원의 유형은 농어업경관, 자연경관, 생활경관으로 구분하고 이를 세분하여 조사한다.
- (4) 경관자원은 긍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예, 축사, 공장 등)도 포함하여야 하며, 비물리적 요소(예, 마을놀이, 공동체 활동 등)도 포함하도록 한다.
- (5) 경관자원의 조사는 경관계획 대상구역 내부뿐만 아니라, 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지역도 포함하도록 한다.

주변지역의 범위는 대상지 경계로부터 중경범위(약 2km)까지 설정하도록 하고, 그 이상에 위치하더라도 중요한 경관자원은 조사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변지역의 범위가 계획대상지에 비해 너무 넓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 담당자와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6)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포함한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7) 조사된 경관자원은 각 경관자원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경관계획에 반영한다.
- (8) 계절별 경관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립기간을 갖고 조사한다.

3.3 상위계획 및 관련 법규 검토

- (1) 농어촌경관, 농업·농촌, 자연환경, 문화재,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관련 법규와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등을 검토하여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2) 계획대상지역에 수립되어 있는 농어촌경관과 관련된 법정·비법정 계획의 계획목표, 발전 전략, 계획구상 등을 검토하고, 각종 규제지역 등의 지역·지구 및 개발사업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경관계획에 반영한다.

4. 농어촌경관 평가 및 과제 도출

4.1 주민의식 조사 (설문 및 인터뷰 등)

- (1) 지역 내 대표적인 지형·지물, 대표경관 등 경관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경관의 문제점, 경관개선 방향 및 지역이미지 등의 조사를 위하여 주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과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 (2)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객들에 대한 의식조사를 병행하도록 한다.

4.2 주요 경관문제점 분석

- (1) 현황분석을 통하여 경관의 패턴을 추출하고,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로 보전·육성·창조 또는 제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도록 한다.
- (2) 경관문제점 분석에 의하여 경관자원의 보전 및 관리방안과 부정적 경관요소의 제거 방안 등을 도출하고, 계획대상지역의 경관계획목표에 부합하는 경관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5. 농어촌경관 기본구상

5.1 주요 경관계획대상 파악

- (1) 대상지역의 경관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농어촌경관계획에서 주로 다루어야 할 경관 계획대상을 파악하여야 한다.
- (2) 경관계획대상 파악을 토대로 각 대상별 경관계획 구상을 진행한다.
- (3) 필요한 경우에 농경지, 수변·산지주변과 함께 관광지·시장·주요사거리 등의 경관상 중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중점관리지역 설정을 제안할 수 있다.

5.2 주요 경관계획 대상별 경관구상

- (1) 경관저해요소의 극복수단 및 효율적인 경관형성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2) 경관계획 수립지역을 경관현황과 기본구상을 고려하여 경관유형과 권역별로 구분하고, 경관계획대상별 경관구상을 실시한다.

5.3 경관주제 설정 및 추진전략 제시

- (1) 대상지의 경관적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경관주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2) 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과제의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 경관주제는 계획대상지역의 자연환경, 역사·문화환경 및 농어업·농어촌 특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 지역의 미래 경관상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지역의 경관적 특성을 함축적으로 요약하여 농어촌 관광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경관주제를 설정할 수 있다.
- 목표설정에 의하여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한 전체 또는 부분별 이미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5.4 농어촌경관구조계획

- (1) 거시적 차원에서의 농어촌경관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망경관계획, 축경관계획, 랜드마크계획, 경관탐방로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다.
- (2) 조망경관계획 : 경관자원 조망관리 및 조망장소 조성 등의 계획을 의미한다.
- (3) 축 경관계획 : 마을진입로, 하천 등에 대한 경관계획을 의미한다.
- (4) 랜드마크계획 : 정자목, 마을표석 및 상징물 등 지역인지도와 관련된 경관계획을 의미한다.
- (5) 경관탐방로 계획 : 대상지에 산재되어 있는 경관자원을 연계하여 탐방로 형태로 제안할 수 있다.

5.5 농어촌경관 기본구상도 작성

- (1) 농어촌경관 기본구상도는 계획구상의 내용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 (2) 경관유형, 경관중점 관리지역, 랜드마크, 조망점 등을 알기 쉬운 범례를 사용하여 기본구상도를 작성한다.

6. 경관유형별 계획

- (1) 농어촌 경관의 유형은 농어업경관, 생활경관, 자연경관으로 구분 가능하며, 경관 계획 수립 시 유형별 주요 착안사항들을 감안해야 한다.
- (2) 농어업경관은 경작지와 농어업생산시설로 이루어지며, 지역의 농어업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성 있는 경관을 연출하는 동시에 농어업생산시설이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 (3) 자연경관 부문에서는 산림경관에 대한 계획적 관리가 중요하며, 하천, 습지와 수변, 생물서식지 등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생태경관의 환경친화적 계획도 주요한 고려 사항이다.
- (4) 생활경관 부문에서는 마을의 주택과 건축물, 가로 등이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경관을 이루도록 계획 방향을 제시하며, 전통적인 경관을 보여주는 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의 보전과 활용 방안을 계획에서 다룰 수 있다.

6.1 농어업경관분야

(1) 경작지경관

- ① 경관과 조화가 이루어진 영농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권장제도, 협정제도, 농경지 이용 동향, 농경지 전용동향, 농경지, 염전 및 소금창고 등의 농어업용 시설 등 정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일체적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 ② 농어업 생산을 유지함으로써 양호한 경관이 보전되도록 경작을 포기한 곳, 관리가 충분하지 못한 농경지 등에 대한 기반정비 및 직접지불제 등 기타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문제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 ③ 접근성, 질 낮은 토양 등 영농조건 미비로 인해 경작을 포기하고 있는 지역은 숲으로 복원하거나 농어촌 고유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계절별 색상과 질감의 변화, 겨울철 휴경지의 경관형성방안 등을 고려한 경관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2) 농어업생산시설경관

- ① 농어업생산시설은 주변의 자연환경 및 농경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정비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생산기반시설은 지형조건, 구조상 조건, 농어촌경관계획의 위상 및 조건 등을 반영하여 지역의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축사시설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 냄새, 소음 등을 고려하여 주변경관과 함께 종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용·배수로는 농어촌 특유의 경관을 연출하므로 이를 고려한 경관관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농어업의 현대화를 위한 시설 도입 시에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배치, 형태, 색채 등에 관한 요령을 제시할 수 있다.
- 저수지와 소, 담 등은 농어업기반시설인 동시에 주요한 수경관을 창출하므로 이에 대한 경관개선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 토지개량시설은 시설자체의 형태나 기능이 농어촌지역의 양호한 경관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경관중요 공공시설”로 설정하고 농어촌경관계획 사항에 포함하여 농어촌지역의 토지이용과 조화되도록 정비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
- 시설물 배치로 인하여 서식지의 분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물종의 이동경로, 서식처의 연결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6.2 자연경관분야

(1) 산림경관

- ① 산림경관의 개선방안은 숲 등 식생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경관림’ 분야와 지형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산지경관’ 분야로 그 대상을 구분할 수 있다.
- ② 경관림 분야에는 나무심기, 숲 가꾸기, 훼손된 산지의 복원·보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한다.

- 기존의 산림 중 경관상 중요한 지역을 개선·정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새로이 조성되는 지역 주변의 근경 산림을 경관림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시설지, 관광지 또는 거주지 주변의 근경에 해당하는 지역에 식재하여 경관림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거주지 경관림은 경관적 요소를 고려한 마을숲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양적 측면과 더불어 질적 측면을 강조하여 지역의 개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산림 자원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지역적 문화와 지역식생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마을숲, 비보숲, 방풍림, 목초지 등에 대한 보존 및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 ④ 산지경관 분야에 대해서는 산지전용기준의 강화, 훼손된 산지의 복원·보완을 통해 경관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훼손된 산지의 면적, 형태별로 경관훼손에 대한 물리적·심미적 저감방안을 고려하도록 한다.
- 입지선정, 사업시행, 복구 등 산지전용 단계와 대상 사업별 경관훼손 특성분류 및 저감방안을 고려하도록 한다.

(2) 자연생태경관

- ① 농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태계 보전을 감안하여 제반 경관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②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연소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경관을 연출하도록 계획한다.
- ③ 하천은 농어촌 자연경관의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이므로 지역여건에 맞게 하천 경관의 질을 향상시키는 구상을 계획에 반영하며, 가급적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하천경관을 정비할 때에는 수역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수위 변화의 정도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생태하천, 생태연못 및 호수 등 물을 도입한 경관을 조성할 때 호안 및 사면의 처리는 자연소재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 실개천은 기존 수로·수원으로부터 선형으로 계획하고, 보행자도로·완충녹지 등을 활용하여 하천 등과 연계한 생태통로를 형성하도록 한다.

- ④ 자연지형은 훼손되면 복원하기 어려우므로 최대한 보존하도록 계획하며, 경사도, 향, 바람의 방향 및 주위의 구릉이나 하천 등 세부적인 자연요소들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고지대 및 급경사지 지역을 가능한 한 보전하며, 자연지형에 건축물을 도입할 때에는 최소한의 부지를 이용하여 지형훼손을 줄이도록 한다.
- 주변의 산에 대한 조망 및 구릉, 하천, 바다 등 자연경관이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훼손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위치, 규모 등을 제안할 수 있다.
- 보전요구 동식물 서식처,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표고 및 경사율 등을 고려하여 자연순응형으로 계획한다.

- ⑤ 철새도래지, 생태습지, 야생화 군락지 등 동·식물 생태서식 환경의 보존을 고려하여 경관을 조성한다.

- 생태계 기능향상 및 생물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식재는 자생종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 전 국토차원의 녹지축 및 생태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장소에는 야생동물의 생태통로를 설치토록 제안한다.
- 야생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잠재적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통로 설치 시 이동의 빈도, 구조물의 유형, 구조물의 규모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6.3 생활경관분야

(1) 건축경관

- ① 주거공간은 마을회관, 저장·가공시설과 같은 공공시설과 주택건축 등을 포함하며, 자연환경 및 농어업 생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한다.
- ② 자연경관이 형성하는 스카이라인(이하 “자연스카이라인”)을 훼손하지 않도록 건축물 및 시설물의 계획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주택이 형성하는 스카이라인이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유도한다.

- 스카이라인 보전을 위한 계획 시 주택이나 인공시설보다 녹지대 등의 자연요소를 위주로 계획한다.
- 자연스카이라인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규모와 위치, 고도기준 등을 적정하게 유도할 수 있다.
- 기존의 랜드마크를 강화하는 동시에 주요 조망점 주변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높이, 형태, 규모 등의 기준을 정하여 아름다운 조망을 유도할 수 있다.
- 조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옥외광고물 및 색채, 야간조명, 식재 등에 관한 계획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건축물의 담장, 지붕, 벽체 등의 외장색채, 재질 등이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유도 한다.

- 주택건축에 통일감을 부여하고 그 지역만의 고유한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농어촌 어메니티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은 외벽의 높이 및 길이, 외벽재료, 지붕형태 등에 대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마을 단위의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 건축물은 생태적 건축기법 등을 활용하여 일반적인 도시형 건물과 차별되도록 하며, 지역의 전통적인 건축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단, 주변환경과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한다.
- 주택의 지붕형태는 다른 경관요소와 자연스러운 연결이 가능하도록 경사지붕이 바람직하며, 자연적 소재의 선택과 색채계획을 통한 색채선정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④ 폐가와 폐교 등과 같이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있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2) 가로경관

- ① 지역성을 나타내는 식재를 활용하여 가로경관의 상징성을 강조할 수 있다.
- ② 지역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장승, 비석 등 표식과 조각을 배치하여 주 진입로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 표식과 조각 등의 도입 시에는 가급적 목재와 석재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 지역을 상징하는 특정 야생동물이나 패턴 등을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여 가로 시설물, 옹벽 등의 정비에 적용할 수 있다. 단, 가로수나 가로시설물 등을 배치할 때 주변 농어업생산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③ 경관자원을 연계하여 경관도로를 제시하고, 경관도로의 선형은 자연지형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개별 경관요소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역사·문화경관

① 고택, 사당, 사찰, 향교, 서원 등 가치가 있는 역사·문화경관의 보존 및 복원을 도모하고, 이와 연계하여 주변지역 정비를 중점으로 계획한다.

- 해당 지역 내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문화재가 입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의 보호는 물론 그 주변지역에서 역사성을 저해하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역사적 가치를 지닌 역사·문화경관자원이 있는 경우 이들 자원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한다.
- 역사·문화경관 주변의 주택과 공공시설의 재료 등은 해당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되도록 한다.
- 역사·문화경관자원 주변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지구로 지정하도록 제안하여 주변지역 내 건축물과 시설물의 높이, 규모, 형태, 용도, 의장 및 옥외광고물 등을 관리하고, 역사·문화경관자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해당 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경관자원이 입지한 경우에는 색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역사·문화성이 표현되도록 한다.

- 이미 사라진 역사·문화경관 중에서 지역의 역사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원을 파악하고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물레방아, 정자목, 솥대 등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던 전통시설물 및 전통공간을 보존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③ 대상지 일대에 분포하는 역사·문화경관자원이 연계되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 역사·문화경관 네트워크가 경관의 주요 축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녹지계획, 도로계획 등 각종 관련 계획에서 배려하도록 한다.

- 역사·문화경관자원과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등을 연계하여 도보 및 자전거를 이용한 접근성을 제고한다.

- 특정한 축제, 마을놀이, 농어업공동체활동, 마을문화활동 등 무형의 역사·문화자원과도 연계하여 역사·문화경관 보전과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4) 색채경관

① 건축물의 색채는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하며, 색채조사 계획을 별도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의 입지유형별 색채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 도시근교 농촌마을 : 전원도시형의 밝은 이미지를 살려, 지붕색은 N5~N8의 무채색과 5YR, 10YR 명도 5~8 / 채도 0.5이하의 색채를, 벽면색은 명도 6이상/채도 4이하의 색채를 적용한다.

- 평야부 농촌마을 (적황색토) : 지붕색은 YR계열 명도 3~5 / 채도 4이하, 벽면색은 명도 6이상 /채도 4이하의 색채를 적용한다.

- 평야부 농촌마을 (갈색산림토) : 지붕색은 YR계열 명도 4~6 / 채도 2이하, 벽면색은 명도 6이상 /채도 4이하의 색채를 적용한다.

- 산간부 농촌마을 (온대북부삼림대) : 지붕색은YR계열 명도 5이하 / 채도 2이하의 색채를 적용하고, 벽면색은 명도 6이상 /채도 4이하의 색채를 적용한다.

- 산간부 농촌마을 (온대중부삼림대) : 지붕색은 YR계열 명도 4~6 / 채도 2이하의 색채를, 벽면색은 명도 6이상 /채도 4이하의 색채를 적용한다.

- 산간부 농촌마을 (온대남부삼림대) : 지붕색은 YR계열 명도 4이하 / 채도 4이하의 색채를, 벽면색은 명도 6이상 /채도 4이하의 색채를 적용한다.

- 도서어촌마을 (동해안) : 지붕색은 10YR 명도 6이상 / 채도 1이하의 색채나 N6이상의 무채색을 적용하며, 벽면색은 N7이상의 무채색이나 YR계열 명도 8이상 /채도 2이하의 색채를 적용한다.
- 도서어촌마을 (서해안) : 지붕색은 5YR, 7.5YR 명도 4~6 / 채도 6이하의 색채를, 벽면에는 N7이상의 무채색, YR계열 명도 8이상 / 채도 2이하의 색채를 적용한다.
- 도서어촌마을 (남해안) : 지붕색은 5YR, 7.5YR 명도 4~7/채도 4~8의 색채를 적용 하고, 벽면에는 N7이상의 무채색이나 YR계열의 명도 8이상/채도 2이하의 색채를 적용한다.
- 도서어촌마을 (제주도) : 지붕색은 N6이하의 무채색이나 YR계열 명도 3이하/채도 2이하의 색채를 적용하고, 벽면색은 채도4이하의 색채를 적용한다.
- 강촌마을 : 지붕색은 YR계열 명도 4이상 / 채도 1 이하의 색채를, 벽면색은 채도 2이하의 색채를 적용한다.

② 건축물의 지붕과 벽면에 적용하는 외장 마감재료는 재료의 물성자체로 색이 표현 되는 재료를 사용한다.

③ 시설물 색채를 별도로 조사하여 계획하지 못하는 경우,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구조물, 보행자도로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 공공시설물은 나무, 석재 등 자연재질을 권장하며, 무광택소재를 원칙으로 한다. 색채는 10YR 명도6이상 채도1이하의 색채나, 무채색을 적용한다.
- 옥외광고물의 바탕색은 건물 외장색과 조화되도록 하고, 채도 4이상의 색채 사용은 제한하며, 문자의 색채는 광고물 바탕색과 조화롭게 하고, 상호명은 가급적 2가지색 이내로 제한한다.
- 구조물의 주조색은 N, YR계열 채도2이하로 하고, 전체 사용색채는 2색 이하로 제한하며, 그래픽은 지양한다.
- 보행자도로는 자연소재를 적용하고, 가급적 재료 자체색으로 표현되도록 하며, 명도는 6이상, 채도는 4이하로 제한한다.

III. 농어촌경관계획의 실행

1. 실행계획의 범위

- 1.1 농어촌 경관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제시한다.
- 1.2 농어촌 경관조례 적용을 위한 지구나 구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시한다.
- 1.3 경관계획에서 제안된 경관지구 등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한다.
- 1.4 경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사업 유형 및 핵심 내용)을 제시한다.
- 1.5 경관협약의 적용 및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 1.6 농어촌경관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을 제시한다.

2. 농어촌 경관조례 반영사항

- 2.1 농어촌경관계획 및 지역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와 요령을 제시한다.
- 2.2 주민들의 경관 보전 및 관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운영을 위한 요령을 제시한다.
- 2.3 경관보전 및 관리를 위한 공공사업 요령을 제시한다.
- 2.4 개발행위허가기준 등 경관보호와 형성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3. 농어촌지역에 대한 경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 3.1 농어촌경관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농어촌지역에 대한 경관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제안하며, 관련 내용이 시·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되도록 한다.
- 3.2 경관특성과 관리수단 등을 고려하여 지정 가능한 지역, 구역, 지구의 종류와 규제내용 등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경관 관련 지구 지정을 제안한다.

3.3 경관지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지역의 특성에 적합하게 세부경관지구를 지정·제안한다.

3.4 농어촌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경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 관련 지역, 구역, 지구 등의 적용 및 연계 관리방안 등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3.5 경관 보전과 관리를 위해 농어촌경관계획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대한 경관지구 지정을 제안할 경우 이러한 사항이 경관법에 의한 시·군 경관계획에 반영 되도록 한다.

3.6 농어촌경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대한 경관지구를 지정·관리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책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4. 연계 가능한 사업의 지원

4.1 개성 있는 농어촌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농어촌생활환경에 대한 종합적·일체적 정비를 위한 사업 추진을 제안하며, 이 과정에 다양한 지역 주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지역 활성화의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이다.
- 공공부문은 지역활성화 시책 추진 시 행정적 절차와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주체이다.
- 전문가는 지역활성화 시책추진 시 추상적인 주민의 의견과 요구에 대한 논리적 근거의 마련과 방법의 전개를 담당하는 주체이다.
- 관광객은 지역활성화의 경제적 측면과 마케팅 측면을 좌우하는 중요한 주체로서 관광객이 갖는 방문이미지에 따라 지역활성화의 성공여부가 좌우된다.

4.2 경관사업은 시설의 이전·보수 등 공공부문이 시행하여야 할 사항과 마을 가꾸기 사업 등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5. 농어촌경관협약 관련 내용

- 5.1 경관자원 분포 현황, 주민들의 참여 의지,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자율적인 경관관리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경관협약을 체결한다.
- 5.2 농어촌경관협약이 이루어진 대상지에 대해서는 경관보전직불제 등의 지원을 통해 경관작물 식재 및 다양한 경관관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5.3 협약 대상지의 경관 형성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문객들을 유치하여 지역 축제 등 이벤트를 연계 추진하며, 이를 위해 필요시 지자체의 추가적인 사업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 5.4 「경관법」에 따라 주민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경관협정과 농어촌경관협약이 상호 연계 가능할 경우 이러한 사항이 경관법에 의한 시·군 경관계획에 반영 되도록 한다.
- 5.5 농어촌경관협약 대상지 일대의 효과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지역의 관련 주체들이 동의할 경우 일정 구역을 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6. 농어촌경관 관리체계 구축

- 6.1 농어촌경관관리를 위한 행정적 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 6.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관련행정가, 전문가 및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경관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 6.3 경관관리 활동 추진 시 주요 주체(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별로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1)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주민이 경관관리 활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리고 주민들이 경관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반 활동에 참여하도록 교육 및 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 (2) 지자체는 경관관리 활동 추진 시 행정적 절차와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3) 전문가는 경관관리 활동 추진 시 전문성이 없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분석,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체화하는 방법을 도출하며, 지자체에서는 전문가와 주민이 상호 학습과 연계를 지속해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6.4 NPO 등 비영리 민간단체를 통해 심포지엄 개최, 농어촌체험교육 등 농어촌 경관의 보존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 (1) 일반 농어업인, 농어업 관계자,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농어촌 경관보존을 위한 협력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 (2)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체험교육 실시 등 농어촌 경관가치의 재인식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6.5 지역적 특성을 갖는 농경지 등 경관자원의 보존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 이익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기금을 활용하여 도시민들의 농어촌 경관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관련 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마을조직의 지속적인 보전활동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IV. 자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계획

1. 자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계획의 내용

- 1.1 자원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 1.2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2. 자원조달

2.1 농어촌경관보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므로 농어촌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재원은 우선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방비 등으로 확보하고, WTO협정, 국내 법제도 등의 규정에 합당한 근거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1) 경관계획 상의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구분, 재원별 규모 및 예산확보방안을 제시한다.
- (2) 예산확보방안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 사업자·수익자 부담 및 기타 자원조달방법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2.2 사업예산 검토

- (1) 농어촌경관계획의 추진을 위한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공사내역별 총량 및 기준 단가에 의한 사업비를 검토한다.
- (2) 농어촌경관협약을 통해 경관보전직불금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활동을 파악하여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 규모를 검토한다.
- (3) 재원확보방안에 의하여 총사업비가 예정된 경우에는 사업비 산정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단계별 사업비를 산정하도록 한다.

3. 단계적 추진계획

3.1 농어촌경관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은 사업추진의 우선순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등 단계별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경관계획 상의 개별사업에 대하여 자원조달방법, 사업추진시기 및 시행기간 등을 검토하여 단계별 추진을 위한 체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 (2) 농어촌경관의 보전·형성·관리와 관련된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단계별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3) 사업 대상으로 농어촌경관계획에 당장 반영되어 있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도 주민들에 대한 경관 분야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주민 자율적인 경관자원 조사활동 및 경관관리 계획 수립을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3.2 농어촌경관을 보전·형성·관리하는 정책사업은 경관개선사업, 직접지불제 및 지자체와의 경관보전협약 체결 등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 (1) 경관개선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로 집행하고, 주택 등과 같이 개인 사유재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 하거나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2) 경관보전직불제 등 직접지불제는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여 대상 농업인 및 농어촌주민에게 직접 보조하거나 마을경관보전활동비를 지원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 (3) 농어업인·농어촌주민이 자발적으로 경관협약을 체결하고, 경관활동을 할 경우에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4) 지역적 특성을 갖는 농경지의 보존을 위한 기금 조성, 시민참여 및 활동의 주체인 마을조직의 지속적인 보전활동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농어촌경관 관리·활용 매뉴얼

농어촌경관 관리 · 활용 매뉴얼

I. 총 칙

1. 목 적

농어촌경관 관리 · 활용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함)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질법)제3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농어촌정비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농어촌경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경관유형별, 경관시설물별, 경관요소별 계획요소에 대하여 표준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여 지자체 등 수요자가 이를 참고하여 활용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농어촌의 가치 있는 경관자원을 보전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형성을 위해 농어업경관, 자연경관, 생활경관 등을 구성하는 농어촌경관요소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보전 · 형성 ·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실행방안을 제시함

유구한 역사 속에 형성된 우리 전통경관을 보존 · 관리 · 계승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함

2. 주요내용

1) 농어업경관

- ① 경작지경관 : 농경지(논, 밭, 과수원, 목초지, 염전 등)의 계절에 따른 변화 특성을 고려한 관리방안 등
- ② 농어업생산시설경관 : 용수로, 배수로, 농로, 저수지, 소, 축사 등의 인공시설이 주변의 자연환경 및 농경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관리방안 등

2) 자연경관

- ① 산림경관 : 산림경관의 형성 관리방안은 식생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경관림분야 및 지형의 보전 · 관리 등의 방안 등

- ② 자연생태경관 : 농어촌지역의 개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농어촌경관의 특성을 주변의 자연환경과 연계되도록 정비방안 제시 등
- ③ 하천경관 : 농어촌자연경관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수역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수위변화의 정도 등 생태적·경관적 기능이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방안 등

3) 생활경관

- ① 건축경관 : 농어촌경관에서 건축물이 토지이용계획과 연계되도록 스카이라인, 외장 색채, 재질, 벽면선 후퇴 등의 기본적인 매뉴얼 제시 등
- ② 가로경관 : 주 진입로, 가로시설물, 가로수 및 보도 폭, 공개공지 확보, 산책로 조성 등 도로의 특성 및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방안 등
- ③ 주거경관 : 주택에 대한 기능적인 측면 이외에 규모, 배치, 지붕 등 개별 요소에 대한 계획적 고려 및 공공시설과 주택건축 등이 주변경관과 효과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방안 제시 등
- ④ 외부공간경관 : 마을공동쉼터, 마을마당 및 담장 등 농어촌마을의 외부공간의 구성 요소별 보전·정비 방안 등
- ⑤ 기타 시설물경관 : 안내시설, 가로시설물, 조형물 등 농어촌마을에 도입되는 시설물의 계획안 제시 등
- ⑥ 색채경관
 - ⑥-1. 생활경관의 색채 : 마을의 역사, 문화, 전통, 상징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농어촌다운 색채경관 계획방법과 사례제시 등
 - ⑥-2. 역사·문화경관의 색채 :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마을이나 지역의 색채를 우리나라의 역사·문화경관의 보존 측면에서 계획 제시 등
 - ⑥-3. 외부공간 시설물 및 광고물의 색채 : 마을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공간, 상업용 광고물 및 기타 시설물의 색채도 자연경관, 생활경관과 조화되는 계획 제시 등

II. 농어업경관

1. 경작지 경관

1.1 기본방향

경관과 조화된 영농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권장제도, 협정제도, 농경지 이용 동향, 농경지 전용동향, 농경지 및 농어업용 시설 등 정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일체적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농어촌경관은 농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에 의해 형성되므로 양호한 경관의 보전을 위해서 경작을 포기한 곳, 관리가 충분하지 못한 농경지 등에 대한 기반정비 및 기타 활동 도입 등 문제 해소방안을 제시한다.

- 논은 사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므로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한 경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 계절별 색상과 질감의 변화, 겨울철 휴경지의 경관형성방안 등을 고려
 - 모내기, 벼 수확 등 농업활동에 의한 농어촌경관의 창출을 고려
 - 전통적인 방식의 농업활동에 의한 지역의 특성적인 농어촌경관의 보전을 고려
- 밭은 계절에 따른 경관변화보다 재배되는 작물에 의하여 경관변화가 이루어지므로 경관관리방안 마련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밭 경관은 사계절 동안 지속적으로 작물이 재배·관리되는 공간으로 작물에 따라 식재 패턴, 작물의 높이, 밀도, 질감 등이 상이함을 고려
 - 포도, 다래, 인삼 등 인공시설물을 필요로 하는 작물의 경작지는 시설물의 색채 및 질감과 주위의 경작지의 조화를 고려
 - 작물에 따라 상이한 재배기간(최소 3개월에서 5,6년 까지)을 고려
 - 작물수확 후에 방치된 비닐 등 폐자재에 대한 관리방안을 고려
- 과수원은 꽃·열매를 이용하여 다양한 경관체험이 가능하도록 경관관리방안을 제시한다.
- 목초지는 방목되는 가축과 함께 전원적이고, 특색 있는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경관관리방안을 마련한다.
 - 지역의 특산물 생산과 관련된 경관은 이를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1.2 부문별 계획 및 예시

1) 다랑이 논

- 산지나 구릉지를 경작지로 개간하면서 형성된 다랑이 논은 농촌의 우수한 경관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별로 특색있는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보존방안을 주민들과 공동으로 모색



〈그림 2〉 함양 마천 다랑이 논

2) 지역특산물 재배경관

- 청보리, 메밀, 고랭지배추, 과수 등의 지역 특산물 재배지는 농어촌의 특별한 관광경관으로 부각되고 있음
- 넓은 면적의 지역 특산물 재배지가 형성하는 농어촌경관은 도시민에게 색다른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하는 자원임



〈그림 3〉 봉평 메밀밭

- 지자체별로 경관보전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업생산시설경관

2.1 기본방향

용수로, 배수로, 농로 등 농어업생산기반의 정비 및 개발 시에 경관을 배려한 정비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농어업생산기반시설은 주변 경관과 조화되고, 농어촌 특유의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경관관리방안을 고려한다.
- 농어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및 개발 시에는 기능성, 생물다양성 보전 및 경관적 측면을 고려한다.

인공적인 농어업생산시설은 주변의 자연환경 및 농경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정비방안을 수립한다.

축사시설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 냄새, 소음 등을 고려하여 주변경관과 함께 종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농어업의 현대화를 위한 시설 도입 시에는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배치, 형태, 색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다.

저수지와 소, 담 등은 농어업기반시설인 동시에 주요한 수 경관을 창출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한다.

토지개량시설은 시설자체의 형태나 기능이 농어촌지역의 양호한 경관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경관중요 공공시설”로 설정하고 농어촌경관계획 사항에 포함하여 농어촌지역의 토지이용과 조화되도록 정비방안을 수립한다.

시설물 배치로 인하여 서식지의 분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물종의 이동경로, 서식처의 연결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III. 자연경관

1. 산림경관

1.1 기본방향

산림경관의 형성·관리 방안은 식생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경관림’ 분야와 지형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산지경관’ 분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경관림 분야에는 나무심기, 숲 가꾸기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새로이 조성되는 지역 주변의 근경산림을 경관림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한다.
 - 시설지, 관광지 또는 거주지 주변의 근경에 해당하는 지역에 식재하여 경관림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한다.
 - 기존의 산림이라 하더라도 보완식재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한다.
 - 기존의 산림 중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개선·정비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한다.
 - 시각적 아름다움은 물론 건강하게 생육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고려한다.
- 산지경관 분야에는 산지전용기준의 강화, 훼손된 산지의 복원·보완을 통한 경관개선 등 다음 사항의 내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훼손된 산지의 면적, 형태별로 경관훼손에 대한 물리적·심미적 저감방안을 고려한다.
 - 입지선정, 사업시행, 복구 등 산지전용 단계와 대상 사업별 경관훼손 특성분류 및 저감방안을 고려한다.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을 강조하여 지역의 개성을 부여해 줄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지역적 문화와 지역식생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마을 숲, 보호 숲, 방풍림, 목초지 등에 대한 보존 및 정비 방안을 고려한다.

마을 숲은 중요한 경관자원으로서 ‘전통 마을 숲’은 역사·문화성이 뛰어난 숲이며, ‘생활권 마을 숲’은 공동체 공간, 환경개선 및 생산성을 겸비한 숲으로 정립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 전통 마을 숲의 복원 · 관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 거주 지역에 숲이 부족한 마을을 대상으로 생활권 마을 숲을 신규조성 할 수 있다.
- 기존의 마을 주변 숲의 생태적 건강성과 경관성 제고 등을 통해 생활환경 보전림으로서 기능을 발휘한다.
- 생산 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노거수, 정자목 등에 대한 보존 및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주변 자연환경과 함께 보존될 수 있도록 일정 면적을 함께 보존한다.

〈표 1〉 한국의 식물대

	구 분	내 용
	난대림	상록활엽수림대에서 북위 35°이남으로 연평균 기온 13℃ 이상의 곳으로 해안지방의 제주도, 완도 등의 섬을 포함한다. 온대림 즉, 낙엽활엽수림대는 온대남부, 중부, 남부로 나눌 수 있다.
	온대남부	난대의 끝부터 북위 38℃까지(강원도, 강릉 이남)이며, 전북 · 경북 이남 지역이다.
	온대중부	동해안은 북위 40℃까지, 내륙은 38℃까지로서 경기 · 강원 지역이다.
	온대북부	온대중부 이북지역이다.
	한대림	침엽수림대로서 평지는 없고 주로 이북지역이며 한라산은 1,500m이상, 설악산은 1,060m 이상의 지역이다.

〈표 2〉 녹지 조사 및 계획의 순서

구분	내 용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현존 식생의 보호 보육 • 식물의 개체 보호 • 이용자에 대한 녹지 환경의 제공 • 경관의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의 품종 등의 수집 육성 • 사회교육, 학생 교육, 기술자 교육
기초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의 수집 • 식생의 대략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법의 검토
아이 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 계획 초안 • 녹화 대책 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기술의 도입 플랜과 검토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의 식생 조사· 식물 생육 환경 조사 • 식물 재료 식생의 동향 조사 • 주변 식생 경관의 조사 • 토질조사, 주변의 식물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조사, 주변의 식재 미 원에 시설 조사 • 주변의 자연 교육시설 조사 • 계획지 내 및 주변의 동물 조사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 보존 구역의 결정 • 토지 이용과 녹지 공간에 관한 구상 • 동물의 보호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 구성의 이미지 조성 • 녹지 경관의 조성 • 지역의 녹지산업 등과의 관련에 대한 검토
기본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과 토양에 관한 계획 • 식생보호와 식재 구분의 결정 • 식재의 기본 방침 결정 • 주요부의 녹지공간 구성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공사 계획의 검토 • 유지관리의 검토 • 녹지 공비 개산
실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묘포 가묘포 선정을 위한 조사 • 묘포 시설의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토지의 조사 • 식재 밀도의 검토 • 이식, 식재 공사의 상세 검토
실시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의 기반 조성 설계 • 식생보존의 설계 • 보존 식물의 개별적 결정, 급수·배전 시설등과의 관계 검토 • 이식 식물의 개별적 결정, 소 시설, 퍼니처 등과의 관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재의 결정 • 녹지의 관리·육성 재배 시설의 설계 • 녹지 공사의 결정 • 재료표의 작성 • 설계서의 작성 • 공사 시방서의 작성
공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 녹지의 관리 토목 공사 건축공사의 조정 • 이식 식물의 관리 조경에서의 기타 시설공사의 조정 • 식재 식물묘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 비료, 토양 개량제 등의 검사 • 양생 재료, 부대시설 등의 검사 • 시비 • 관수, 보양 • 유지관리의 결정

1.2 산림경관 매뉴얼

〈표 3〉 산림경관 매뉴얼

구분	매뉴얼
마을 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생태 숲의 식생은 기본적으로 자연천이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복원 • 지역 내에서 자생하는 수종을 활용하여 복원할 수 있도록 식재 • 마을 숲의 기능을 복원하고 보존 • 주변에 주민들의 휴식과 이벤트, 놀이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
산림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산로의 일부구간을 활용하거나, 침엽수림지의 숲, 계곡, 폭포 등이나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들이 인접한 곳에 조성 • 산림욕장 내부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목재를 활용하되, 안전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제작 설치
전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자연풍경 지점이나 흥미지점이 보이는 곳에 설치 • 있는 그대로의 자연지형을 이용 • 기존의 자연식생들을 최대한 제거하지 않고, 전망대가 은폐할 수 있도록 식재
우물 · 샘터 · 약수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의 우물, 샘터, 약수터는 작은 물 확을 설치 • 대나무 등으로 물을 흐르게 하거나 말린 조롱박 등을 이용하여 물을 떠먹을 수 있도록 함 • 규모가 큰 우물은 두레박으로 물을 퍼 올릴 수 있도록 배치 • 물지게, 물 항아리 등의 전통생활 기구를 함께 배치 • 자연석 쌓기를 활용, 우물, 샘터, 약수터의 형태를 복원

〈표 4〉 용도에 따른 수종

용도	수종
방풍용	소나무, 곰솔, 가시나무류, 향나무, 팽나무, 삼나무, 후박나무, 동백나무, 솔송나무, 녹나무, 대나무, 참나무, 후박나무, 편백, 화백, 감탕나무, 사철나무
방화용	가시나무류, 녹나무, 동백나무, 아왜나무, 후박나무, 식나무, 사철나무, 사스페피나무, 굴거리나무, 후피향나무, 광나무, 금송, 은행나무
방사 · 방진용	눈향나무, 사철나무, 쥐똥나무, 동백나무, 보리장나무, 찔레나무, 해당화, 오리나무, 굴거리나무, 족제비싸리, 싸리나무류
방조용	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곰솔, 잣나무, 주목, 화백, 편백, 일본잎갈나무, 삼나무, 독일가문비, 참나무류, 물푸레나무, 히말라야시다
녹음용	느티나무, 버즘나무, 가중나무, 은행나무, 고로쇠나무, 물푸레나무, 벽오동, 피나무, 백합나무, 이팝나무, 침엽수, 오동나무, 벗나무, 회화나무, 미루나무, 쪽동백, 녹나무, 층층나무, 팽나무, 멸구솔나무

<자료 : 조경수목학, 한국조경학회, 1989, 문운당>

1.3 부문별 계획 및 예시

1) 마을 숲

- 일반적으로 생태 숲의 식생은 기본적으로 자연천이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복원
- 지역 내에서 자생하는 수종을 활용하여 복원할 수 있도록 식재
- 마을 숲의 기능을 복원하고 보존
- 주변에 주민들의 휴식과 이벤트, 놀이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

가. 배 치

- 마을입구, 마을내부, 마을뒷산 등에 위치한 마을 숲을 복원

나. 규모 및 형태

- 기존 마을 숲의 형태를 충분히 복원할 수 있는 것이 중요
-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함
- 도로와 주거공간의 가로수 및 정자목을 비롯한 마을 내 자투리땅 활용
- 마을전체가 하나의 녹지공간을 이룰 수 있도록 함

다. 재 료

- 정자, 벤치 등 휴게시설을 도입할 경우에는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유지
- 주변 마을 숲과 어울리는 색채와 재료를 사용



〈그림 4〉 휴게공간으로 이용되는 마을 숲



〈그림 5〉 하천변에 조성한 마을 숲

라. 식재

지역 내에서 자생하는 수종을 활용하여 복원할 수 있도록 식재

- 마을 숲의 역할을 수행하는 숲의 경우, 대부분 지역 내에 자생하는 수목(소나무, 느티나무, 업나무 등) 가운데 한 종류를 선택
- 가급적 기존식생을 바탕으로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
인위적으로 복원할 경우에는 산림의 자연천이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복원
- 복원초기에는 빨리 자라고 많은 광량을 요구하는 식물을 도입함으로써 조기에 식생 피복을 이루도록 함
- 토양배수 조건을 개량하고 질소고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 궁극적으로 수명이 길고, 성장속도가 느리며, 내음성(음지에서 자랄 수 있는 성질)이 강한 식물들이 우위를 점하는 최상단계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복원

마. 부대시설

-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인 벤치, 의자 등을 제작하여 배치
- 인간의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수목의 보호를 위해 마을 숲 경계나 수목 하단부에 보호책을 둘러 접근을 제한함

바. 기타 참고사항

- 마을공동숙박 이용객의 예약, 안내 등 전담 관리인을 두어 운영관리 하도록 함
- 단체이용 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성

2) 산림욕장

- 등산로의 일부구간을 활용하거나, 침엽수림지의 숲, 계곡, 폭포 등과 같이 육체적 · 정신적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는 장소 인접지에 조성
- 산림욕장 내부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목재를 활용하되, 안전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야 함
- 동물, 물, 바람, 햇빛, 식물 등을 오감을 통해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함

가. 배 치

- 소나무 등과 같은 침엽수가 많은 산림 혹은 계곡, 폭포 등과 같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장소에 배치
- 건강증진에 유효한 등산로, 약수터, 약초원 등에 조성

나. 규모 및 형태

- 기존 마을 숲의 형태를 복원할 수 있는 것이 중요
-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함
- 마을 숲만 동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마을 가로수나 정자 목과 함께 조성
- 마을전체가 하나의 녹지공간을 이룰 수 있도록 함

다. 재 료

- 산림욕장 내 시설물 재료는 주변과 어울리는 자연재료를 권장함
- 휴게시설인 벤치, 의자 등을 배치

라. 식 재

- 다양한 수목과 식물을 식재함으로써, 주변경관이 아름답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산책과 등산을 할 수 있도록 함
- 조류를 유인할 수 있도록 수목을 선정하여 식재

마. 부대시설

- 목재와 같은 자연재료로 만든 벤치는 수목과 잘 조화됨
- 주변에는 새집 등 목재로 만든 조형물을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즐거움을 줌



〈그림 6〉 나무 보호 목재평상



〈그림 7〉 새집의 조형물 설치

바. 기타 참고사항

- 등산로는 정기적으로 잡풀을 제거하고, 환경미화를 통해 쾌적하게 유지
- 마을청년회 등 마을주민들이 숲속자연생태에 관한 생태체험학습정보를 습득하여, 나무모빌 만들기, 수목명찰 만들기, 열매 관찰하기 등 다양한 임산자원을 활용한 숲속체험을 유도
- 마을의 주요체험활동으로 운영

3) 전망대

-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점이나 흥미로운 조망권이 확보되는 지점에 설치하고, 자연 지형을 적극 이용
- 기존의 자연식생들을 최대한 제거하지 않고, 전망대가 은폐될 수 있도록 식재
- 기와지붕의 전통 전망대는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

가. 배 치

-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점이나 흥미로운 조망권이 확보되는 지점에 배치하되 자연 지형을 적극 이용
- 기존의 자연식생들을 최대한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에 배치

나. 규모 및 형태

- 전망시설의 규모는 주변 경관의 규모를 넘지 않는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
- 소요면적은 1인당 5~7㎡가 필요(문화체육부, 1993)
- 전망시설은 위험한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 주의 환기를 위한 경고판, 안전책, 돌담, 방호벽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
- 원거리 경관이 조망되어야 하는 경우, 계단을 설치하여 2층 형태의 전망대로 설치
- 기와를 엮은 전통적인 정자형태 전망대는 전통적 농어촌 경관을 형성하는데 기여

다. 재 료

- 통나무를 비롯한 목재를 이용하고, 지붕은 기와 등을 활용하여 제작함으로써 주변 경관에 비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유의

라. 식 재

-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주변에 초화류 및 녹음을 줄 수 있는 교목을 식재
- 위치를 은폐할 수 있도록 하되, 조망하고자 하는 곳은 식재에 의하여 가리지 않도록 함

마. 부대시설

- 전망지점에는 벤치나 파고라, 휴지통 등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

바. 기타 참고사항

- 별 관찰시설과 함께 배치하여 야간에는 별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함



〈그림 8〉 별 관찰 시설

4) 우물·샘터·약수터

- 소규모의 우물, 샘터, 약수터는 작은 물 확을 설치
- 대나무 등으로 물을 흐르게 하거나 말린 조롱박 등을 이용하여 물을 떠먹을 수 있도록 함
- 규모가 큰 우물은 두레박으로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함
- 물지게, 물 항아리 등의 전통 생활기구를 함께 배치
- 자연석 쌓기를 활용, 우물, 샘터, 약수터의 형태를 복원

가. 배 치

- 오랫동안 마을에 입지해 왔던 장소에 배치하고, 가능한 과거 형태 복원을 유도

나. 규모 및 형태

- 소규모 우물이나 샘터, 약수터의 경우, 작은 물 확을 설치
- 대나무로 물을 흘리고 말린 조롱박을 이용하여 떠먹을 수 있도록 함
- 규모가 큰 우물은 두레박으로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함
- 물지게나 물 항아리 등 전통 생활기구를 함께 배치
- 지속적으로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도록 유도
- 물이 고여 수질을 더럽히거나 이용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주변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



〈그림 9〉 소규모 샘터, 약수터



〈그림 10〉 지붕으로 그늘을 만든 우물

다. 재 료

- 기본적인 형태는 전통돌담과 같이 자연석을 쌓아 설치하거나 정비
-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색채와 재료를 사용

라. 식 재

- 수양버들과 같은 물을 좋아하는 수종을 우물가에 식재

마. 부대시설

- 수질확보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지붕을 만들 수 있음

바. 기타 참고사항

- 수자원으로서 가치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장소로 활용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 정기적인 수질검사 등을 실시
-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요령(환경부훈령 제506호)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주변 환경의 청결유지 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우물이나 약수터 등을 연계하여 물지게체험이나 물 향아리 옮기기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2. 자연생태경관

2.1 기본방향

개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농어촌경관의 인공적 특성을 주변의 자연환경과 연계되도록 정비한다.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농업생산경관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식재를 통해 사계절 특성 있는 경관을 연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마을 역사와 함께 형성된 생태하천, 연못, 습지, 야생화 군락지 등으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경관자원은 지속적으로 유리관리가 요구된다. 생태하천, 생태연못 및 호수 등 물을 도입한 환경을 조성한다. 수질정화 및 주거지역과 일체화 되도록 경관 계획을 수립한다. 개발로 인한 변화를 생태계의 변화를 극소화 한다. 경사도, 경사 방향, 바람의 방향 및 주위의 구릉이나 하천 등 부지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한다.

- 자연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계획을 유도하고, 고지대 및 급경사지 지역은 가능한 보전한다.
- 보전요구 동식물 서식처, 보전적성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표고 및 경사율 등을 고려하여 자연순응형으로 계획한다.
- 주변의 산에 대한 조망 및 구릉, 하천, 바다 등 자연경관이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훼손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위치, 규모 등을 제한한다.
-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지형은 훼손되면 복원하기 어려우므로 최대한 보존하도록 계획한다.
- 자연지형에 건축물을 계획할 때는 경관계획에 의거해 최소 부지를 이용하여 지형훼손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공기 질 역시 수질과 함께 농어촌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연요소로서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환경부 참조)

생태계 기능향상 및 생물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식재는 자생종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야생동식물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경관을 조성한다.

- 철새도래지, 생태습지, 야생화 군락지 등 동·식물 생태서식환경의 보존방안을 제시한다.
- 수려한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고, 생물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표 5〉 계절별 적용 가능한 초화류

이름	연출가능 색채	배식대상지	개화 시기							
			봄			여름			가을	
			3	4	5	6	7	8	9	10
동의나물	진노랑색	하부식재용	■	■						
앵 초	연분홍색	”	■	■						
수호초	연황록색	”		■	■					
세 덩	노란색	”			■	■				
아주가	청색	”			■	■				
돌단풍	흰색	”			■	■				
연 꽃	연분홍색	습지					■	■		
부 들	황적색	”					■			
맥문동	연자색	하부식재용					■	■		
섬기린초	황색	”				■	■			
돌나물	황색	”			■					
큰괘의비름	붉은분홍색	”						■	■	
비비추	연자색	”						■	■	
구절초	연보라색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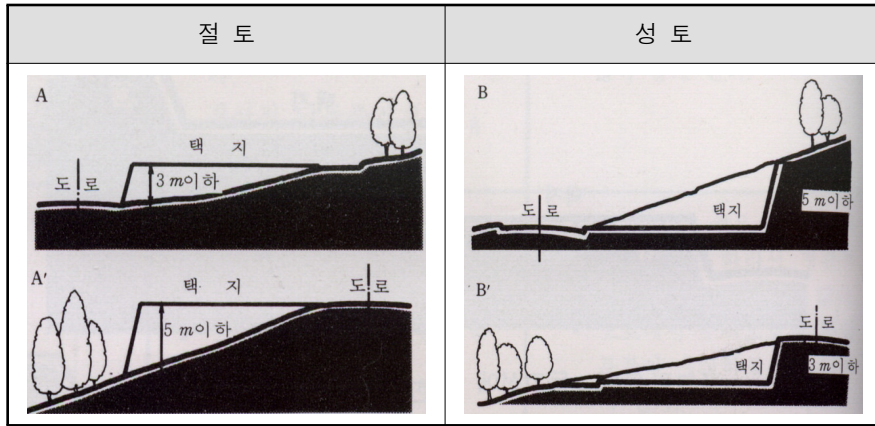
〈사 례〉



〈표 6〉 계절별 적용 가능한 수종 목록

성상	수목명	성목 (m)	배식대상지	연출가능색채		개화 시기(계절과 월)															
				꽃	잎	봄			여름			가을									
						3	4	5	6	7	8	9	10								
상목	교목	잣나무	30	외곽녹지(차폐식재)	녹황	녹색															
		소나무	30	주요지점, 주차장주변	황색	녹색															
	관목	논항나무	1~5	경계식재	황색	녹색															
		회양목	1~3	경계식재	황색	녹색															
다목	교목	낙우송	50	외곽녹지, 습지주변	자색	황갈색															
		자작나무	20	외곽녹지(초점·차폐식재)	황색	황색															
		밤나무	20	건물주변	황백	황갈색															
		느티나무	25	건물입구(녹음제공, 초점식재)	담황색	황적색															
		틀림(백합)나무	30	가로수(버스정류장)	녹황색	담갈색															
		산사나무	6	건물주변	백색(홍색)	황색															
		왕벚나무	15	주거동, 가로수	백색(홍색)	황적색															
		팔배나무	15	건물주변	백색(황적색)	황홍색															
	관목	매자나무	1~2	건물주변	황색(적색)	적색															
		생강나무	3	건물주변	황색(자홍색)	황색															
		황매화	2	건물주변, 외곽녹지	황색(홍갈색)	황색															
		앵두나무	3	건물주변	연분홍(적색)	황색															
		조팝나무	2	경계식재	백색	황적색															
		안개나무	3~5	주요지점, 건물주변	담자색(적록)	황색															
		낙산홍	2~5	주요지점, 건물주변	담홍색(적색)	적색															
		화살나무	2~3	주요지점, 건물주변	황록	적색															
		현말채나무	3	건물주변, 경계식재	황백	적색															
		진다래	2~3	주요지점, 건물주변	자홍색	적색															
		산철쭉	1~2	건물주변(경계·초점식재)	홍자색	적황색															
		취뽕나무	5~6	건물주변(경계식재)	백색	황색															
		수수꽃다리	5	건물주변	담자색	황적색															
		좁쌀나무	2	건물주변, 외곽녹지	담자	황색															
		만경류	으름덩굴	5	건물주변	자홍	황색														
			등나무	10	건물주변	연자색	황색														

〈표 7〉 절 · 성 토 조성



〈표 8〉 접지유형별 조성형식 및 고려사항

	접지 유형	조성형식	고려사항
단차형 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와 도로와의 단차의 최소화를 위하여 대지에 단차를 두어 분할된 형식의 주택을 조성 마을전체의 경관적 측면에서 유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조성과 더불어 건축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전체를 수평으로 조성하고 대지의 단부를 옹벽으로 처리 가장 일반적인 접지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사가 급할 경우 옹벽의 면적증가로 인하여 주거환경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 주택 진입부의 세심한 계획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전체를 수평으로 조성으로 도로와의 연결부의 단차를 이용하여 주차공간을 설치 경사지 마을에 유용한 접지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공간이 매설형으로 형성이 되므로 초기 공사비의 증가가 예상됨
사면형 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만한 경사지의 경우 경사면에 주거가 직접 접지 경사가 큰 경우 인공테라스를 조성하여 테라스 공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지 전체가 경사가 있어 마당 조성이 어려움 경우에 따라 필로티 상부에 주거가 형성될 경우 구조적인 대책이 요구됨

2.2 자연생태경관 매뉴얼

〈표 9〉 자연생태경관 매뉴얼

구분	매뉴얼
생태연못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곤충, 어류, 조류의 서식처 조성기법을 적용하여 생물다양성 증진을 꾀함 • 연못의 가장자리형태, 수심의 변화를 주어 다양한 서식처를 조성 • 연못의 호안부는 통나무와 자연석을 활용하고, 다층적인 식생대를 유지
생태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지역의 생태 축이 사람동선이나 차량동선으로 인해 단절된 경우, 동물류의 이동을 위한 생태통로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조성 • 조성지역의 특징에 따라 구조와 크기를 결정하여 설치 • 일반적으로 생태통로에는 선형, 터널형, 육교형으로 구분되며, 주변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존식생을 활용
비탈면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한 자연생태로 복원 •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녹화공법을 사용 • 지역에 자생하면서 뿌리활착이 좋고, 생육속도가 빠른 수종을 식재 • 자연 경관을 파괴하는 요인의 제거 및 감소노력 • 건설과정에서 친환경적인 마감처리가 필요
옹벽 · 석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자연지형과 조화될 수 있도록 조성 • 경사면 상하부분의 경계선은 완만한 곡선으로 처리 • 조화로운 경관적 연속성을 부여 • 옹벽은 구조물특성상 시멘트, 돌 등 내구성있는 재료로 조성 • 주변부에 담쟁이 등의 덩굴성식물이나 교목류를 식재하여 녹화

2.3 부문별 계획 및 예시

1) 생태연못

- 곤충, 어류, 조류의 서식처 조성기법을 적용하여 생물다양성 증진을 꾀함
- 연못의 가장자리형태, 수심의 변화를 주어 다양한 서식처를 조성
- 연못의 호안부는 통나무와 자연석을 활용하고, 다층적인 식생대를 유지
-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연못은 개발계획 시 가급적 보존

가. 배 치

연못의 위치는 생물서식에 필요한 공간으로 가능한 한 햇볕이 잘 드는 곳이 적당함
기존의 실개울과 수림대를 연계하여 생태네트워크를 형성

- 생물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수림대를 이용하여 주변의 서식처와 자연스럽게 연결
- 실개울과 연계하여 흐르는 물의 유속, 수심의 변화를 주어 다양한 서식환경을 조성

나. 규모 및 형태

연못의 형태와 수심의 변화를 주어 다양한 생물서식 공간을 제공

- 연못의 수변을 급경사와 완경사, 돌출부분과 오목부분 등 다양한 생태환경 조성
- 부분적으로 수심이 최소한 1.5~2.0m가 되도록 조성(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2000)
진출입구를 만들어 물이 순환하여 자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물이 생태연못 내로 유입되고, 연못을 순환한 후에 유출구를 통해서 빠져나가도록 함
- 물이 고여 있지 않고 순환되어 자연적으로 정화되도록 함



〈그림 11〉 인공적인 생태연못 조성 사례



〈그림 12〉 우수정화연못으로 활용된 생태연못

연못가운데에 수중 섬을 조성하면 업페가 가능하여 조류 등의 서식처 환경이 됨
수서곤충 연못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종의 특성을 파악하여 계획

- 잠자리 연못, 개구리 연못 등 특정생물의 서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종의 생애주기(life cycle) 및 서식특성을 파악하여 조성
- 잠자리연못은 잠자리 등 여러 곤충류와 어류가 공존할 수 있는 생물서식공간을 조성
- 잠자리는 종류가 다양하고 번식장소와 서식장소가 다르므로 풍부한 잠자리 서식을 위해서 수심의 변화를 주고, 육지에 걸치는 복잡한 구조를 갖는 생물서식공간을 조성
- 수생식물로는 연꽃, 제비붓꽃, 창포, 미나리, 속새 등을 식재하고, 잠자리가 살 수 있는 막대기를 연못과 주변에 설치

다. 재 료

연못 호안은 통나무 및 자연석을 이용, 하안의 일부는 모래와 자갈을 이용하여 조성

- 배수구는 통나무와 굵은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나뭇잎과 같은 이물질이 막지 않도록 방지장치 조성

라. 식 재

다양한 식생대를 조성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창출

- 식재수종은 수중식물, 수생식물, 부유식물, 수변식물 등의 다양한 식생대를 조성
-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모습을 창출하기 위해 다층적인 군락으로 식재
- 수심의 차이에 따라 생육높이가 다르므로, 적절한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
친수, 이수, 치수의 관점에서 수변침식 방지와 정수능력이 있는 수종을 도입
- 연못의 경계부(완충구역)에 다년생 숙근초화류를 식재하고, 수변침식 방지와 정수능력이 있는 갈대 등을 식재
- 야생조류의 먹이를 제공하고, 기타 곤충류의 서식처와 은신처를 제공할 수 있는 수종을 우선적으로 선택

자연학습을 포함한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이 유용한 식물을 선정하여 식재
정기적으로 연못주변의 식생을 관리

- 적절한 수심, 수량 유지 및 부영양화로 인해 부유물이 생기지 않도록 정기적인 식생관리

마. 부대시설

- 추후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야생동물 서식이 증가할 경우에는 조류 보호시설, 조류 관찰대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

바. 기타 참고사항

- 주거지 인근에는 우기에 지붕에서 모아지는 빗물을 이용하여 생태연못에 물을 공급하는 우수정화 연못과 우수정화 시설의 유출부에 설치한 우수정화 연못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생태통로

- 농어촌지역의 생태축이 인간의 동선이나 차량동선에 의해 단절된 경우, 동물류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생태통로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조성
- 조성지역의 특징에 따라 구조와 크기를 결정하여 설치
- 일반적으로 생태통로에는 선형, 터널형, 육교형으로 구분되며, 주변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존식생을 활용

가. 배 치

- 조성지역의 생태특성을 고려하여 통로의 구조와 크기를 선정
- 조성위치가 개활지, 경작지, 큰 규모의 하천인 경우는 선형으로 설치
- 중·소규모의 하천, 산지, 계곡이나 저지대의 성토구간에는 터널형으로 설치
- 큰 규모의 산지, 계곡의 절토구간에는 육교형의 생태통로를 설치(국립환경원,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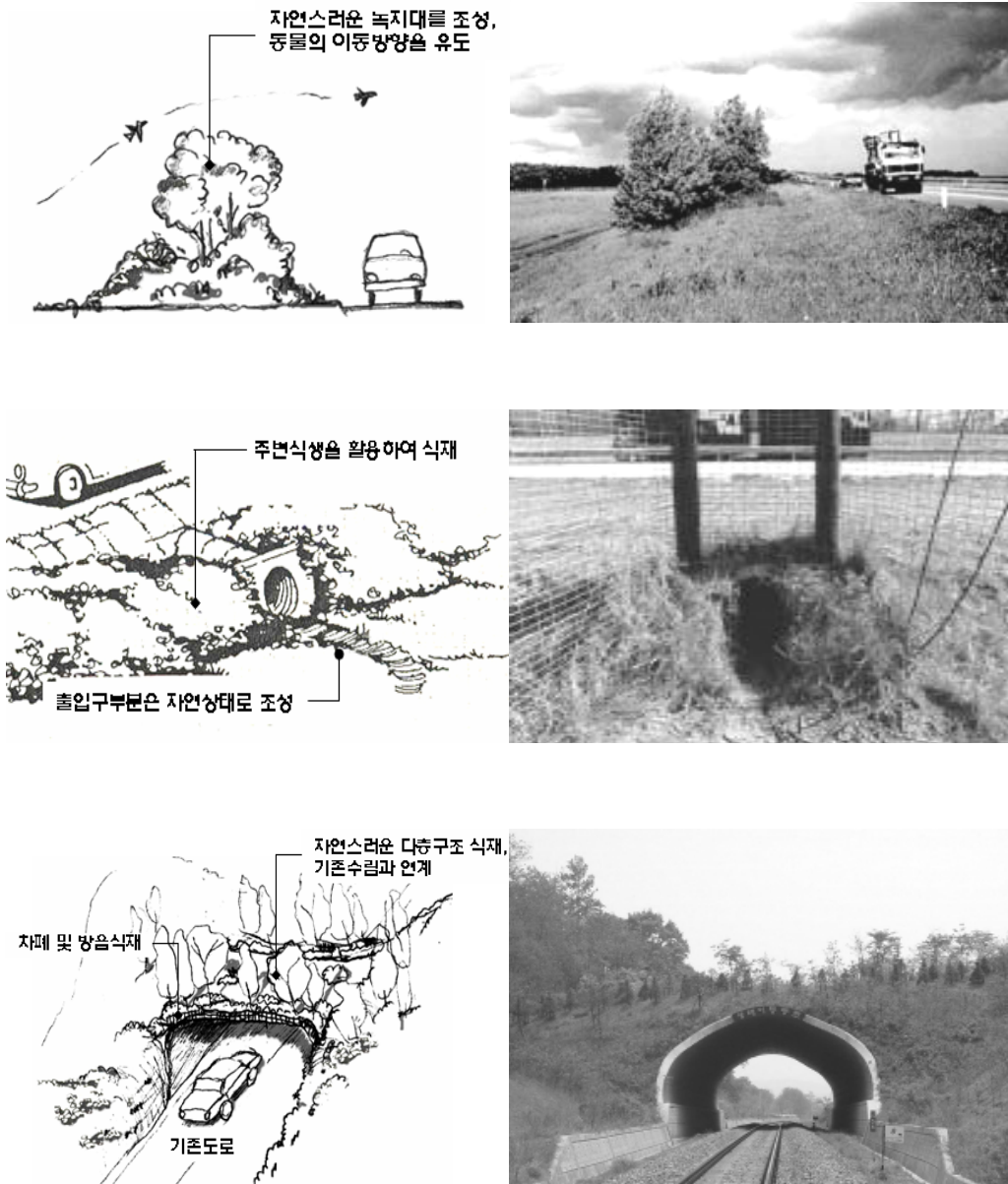
〈표 10〉 생태통로 유형별 대상지역의 특징

구분	대상지역 특징
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활지, 경작지, 큰 규모의 하천변 등 주변공간을 활용 가능한 곳 • 서식지간의 지표면을 따라 직선 연결 가능 • 경작지, 주거지 등의 주변 지역과 구분 또는 보호가 필요한 곳
터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규모의 하천, 산지, 계곡의 성토구간으로 지상연결이 곤란한 곳 • 생태통로를 설치할 경우 하천, 계곡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는 곳 • 이동거리가 짧은 곳 • 지상에 장애물이나 오염원 등이 있는 곳 • 인간의 통행을 비롯한 영향이 빈번한 곳
육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 계곡의 절토구간 사이의 거리가 먼 곳 • 지표면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곳 • 지상에 장애물이나 오염원 등이 있는 곳 • 서식지간 거리가 먼 곳

나. 규모 및 형태

- 선형의 생태통로는 기존의 울타리 또는 숲을 이용하여 녹지축을 형성
- 터널형의 생태통로는 작은 원형파이프나 박스 형태로 지하부를 연결하여 동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조성(환경부, 2004)

- 육교형은 지하통로형에 비하여 구조물이 복잡하기 때문에 폭이 넓은 진입도로나 주간선도로로 인한 절개지부를 연결해 조성
- 친환경적인 비탈면녹화 및 안정화 공사를 병행하여 실시(환경부, 2004)



〈그림 13〉 생태통로

〈표 11〉 생태통로의 유형별 설치내용

구분		설치내용
선형	생울타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울타리가 있거나 과거에 울타리가 있었던 곳에 설치 • 단일 식물종의 초본이나 관목을 주로 이용하나 넓은 곳은 교목도 이용 • 자투리 산림 간의 연결, 혹은 별도의 선형 식재에 의한 연결
	방풍림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식생처럼 주로 교목성 식물을 여러 줄로 식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때로는 관목도 사용하여 조성 • 농어촌에서 바람, 눈보라 등으로부터 주택과 가축, 야생생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성하거나, 경관적, 심미적 가치 향상에 기여
터널형	암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가, 농수로, 개울을 통과하는 경우에 조성되는 박스형 통로로 수위의 고저차가 적은 경우에 활용 • 내부 벽면 양측에 외부로부터 입·출구와 연결되는 턱구조물을 설치
	박스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 이상의 크기를 갖는 동물이 이용하도록 설치 • 도로가 수로나 작은 도로와 입체적으로 교차하는 곳으로 인간통행이 가능 • 횡단거리가 짧고 서식지가 인접한 곳 • 바닥을 모두 식생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음 • 목표 종의 특성에 따라 다르나, 높이 3~5m, 너비 5~10m정도
	파이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단지역과 서식지간 지표면에 차이가 작거나 도랑이 있던 곳에 조성 • 너구리, 족제비 등을 위한 통로의 경우 내부를 주름지게 설치 • 배수 겸용인 경우 도랑에 빠지지 않도록 도랑에 경사로 추가 • 양서류 등 기타 작은 동물도 이용이 가능 • 파이프의 직경은 약 0.3~2m로 설치
육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곰, 멧돼지, 오소리, 너구리, 고라니, 노루 등의 대형동물이 주로 이용하나, 비교적 다양한 동물이 동시에 이용이 가능 • 통로 중앙을 중심으로 양끝은 비탈진 포물선형으로 하여 건너편 조망 등 넓게 트여진 시야에 의하여 횡단 망설임을 최소화 • 중앙보다 양끝을 넓게 하여 자연스러운 접근을 유도 • 통로 양측에 벽면을 설치하여 주변으로부터 영향(빛, 소음, 천적 접근 등) 차단하고 동물들이 이용 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함. 이때 벽면의 노출은 최소가 되도록 배려 • 필요시 통로 내부에 계류 혹은 습지를 설치하여 양서류의 통행에도 이용될 수 있도록 배려 •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배수로 설치 • 가능한 인간통행은 억제 • 통로 길이가 긴 경우, 중간에 고목, 돌무더기 등 피난용 구조물을 추가하여 설치 • 최소 30m이상의 거리에 설치

다. 재 료

- 주변지역표토를 이용하여 토양층 구성
- 동물들이 생태통로이용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변식생 활용

라. 식 재

- 입·출구 주변은 외부로부터의 영향(빛, 소음, 천적 등) 차단
- 차폐식재를 하고, 입·출구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 야생동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입·출구 및 통로전체는 주변 식생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

마. 부대시설

- 대형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동물의 이동뿐만 아니라 차량의 안전을 고려
-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모
- 동물들이 생태통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입·출구의 좌·우측을 따라 방책(웬스)을 설치
- 차량통행을 경고하기 위한 야생동물용 반사경을 배치
- 차량운전자들에게 야생동물의 이동이 많은 구간을 알려주는 사인설치
- 속도감속용 과속방지턱이나 안내표지판을 설치(환경부, 2003)



〈그림 14〉 사람들에게 주의와 경고를 위한 안내표지판



〈그림 15〉 야생동물용 반사경

바. 기타 참고사항

- 생태통로의 효율은 공사의 완성도와 사후관리에 의해 결정됨
- 부식토의 유지사항, 수목식재부 관리, 하수 및 배수로망의 보수 등을 수행
- 통로설치 후, 야생동물의 혼란 및 이동습관의 변화 등에 대하여 조사
- 정기모니터링을 통해 생태통로 이용 확인
- 기타 밀렵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외부 위협요인의 파악 및 개선책 강구

3) 비탈면 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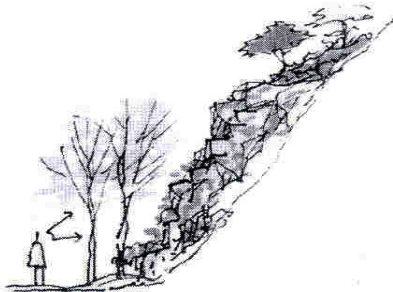
- 가능한 자연생태로 복원
- 지속적으로 보존·유지하기 위한 녹화공법을 사용
- 지역에 자생하면서 뿌리활착이 좋고, 생육속도가 빠른 수종을 식재
- 자연 경관을 파괴하는 요인의 제거 및 감소노력
- 건설과정에서 친환경적인 마감처리가 필요

가. 배 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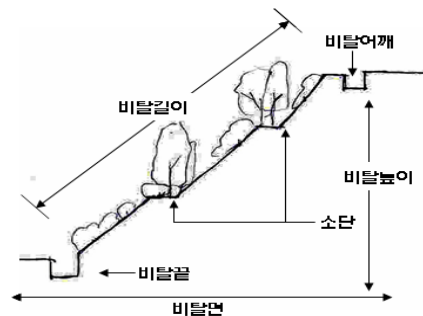
- 절토 및 성토에 의하여 자연생태 및 경관의 훼손이 많은 지역에 조성
- 비교적 면적이 넓은 비탈면에 조성

나. 규모 및 형태

- 급경사 암반비탈면에는 계단형태의 소단을 설치하여서 식생기반을 조성
- 가급적 곡선으로 완만하게 조성하여서 지반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계획
- 암반굴착시 요철을 두고 자연스럽게 굴착하여 식생기반을 조성
- 자연환경이 양호한 곳에서는 통나무를 격자 형태로 설치하여 조성
- 통나무 쌓기를 활용할 경우에는 토양을 유지하고, 사면녹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사면 녹화 및 자연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식생기반은 생육조건이 나쁜 곳과 양호한 곳을 구별하여 식생
- 기반재와 조자층의 두께를 조절하여 전체적으로 균일한 식생녹화
- 식재 및 파종 등 다양한 녹화공법을 이용하여 비탈면을 처리
- 장기적으로는 주변의 자연식생과 동화될 수 있는 계획



〈그림 16〉 비탈면 녹화



〈그림 17〉 비탈면 명칭

다. 재 료

- 식재수종은 지형, 지리적 위치, 토질, 암반상태, 토양경도, 용출수, 배수상태 및 구조물 설치 등 생육 조건에 따라 선별
- 가능한 자생종으로 식재 · 파종하여 녹화
- 건조하고 햇빛이 강한 특수한 환경조건에 적응력이 강한 자생종을 선택
- 급속녹화 및 침식방지를 위하여 외래종의 식재는 가급적 자제

라. 식 재

- 비탈면 녹화식물 종은 인근 산림주변부나 비탈면에서 자생하는 종 선정
- 가능한 비탈면을 안정시키고, 강풍에 견딜 수 있는 심근성 수종을 식재
- 비탈면 녹화초본 및 지피식물로는 잔디, 김의털, 참억새 등이 해당됨
- 관목 및 교목 등 목본식물은 철쭉, 소나무, 곰솔(해안), 콩과식물, 싸리류, 오리나무류, 호랑버들(고산지대) 등의 비료목을 활용
- 종자를 파종할 경우에는 시공직후에 침식이 일어나지 않는 조치가 필요 함
- 야생화를 식재할 경우에는 관상성이 높은 것을 선정하되, 숙근형을 권장
- 일년초와 다년초 및 개화기를 고려하여 식재
- 덩굴식물로는 인동덩굴, 머루, 능소화, 담쟁이덩굴이 적당
- 해안지역에서는 상록성의 송악, 모람 등의 만경류를 이용



〈그림 18〉 관목 식재



〈그림 19〉 교목 식재



〈그림 20〉 초본류 식재



〈그림 21〉 야생화 식재

마. 부대시설

- 비탈면은 안정화가 꼭 필요 함
- 비탈면 하부를 강화하기 위해 옹벽이나 석축을 병행하여 설치

바. 기타 참고사항

- 비탈면의 녹화공법으로는 잔디심기, 네트 잔디, 종자 뿔어 붙이기, 종비로 뿔어 붙이기, 네트종자 뿔어 붙이기, 모목식재, 덩굴식물식재, 식생구멍심기, 새집붙이, 식생자루심기, 차폐수벽 등이 있음
-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공법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비탈면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함

Ⅱ 비탈면 녹화공법의 종류와 특징

- 다양한 공법이 많으나, 본문에서는 농어촌지역에 적합하면서 시공방법이 간편하고, 시공시 경관이 불량하거나, 인력투입과 장비가 많이 소요되어 경비가 많이 드는 공법은 제외함

〈표 12〉 비탈면 녹화공법의 종류와 특징

(● : 적합, ○ : 보통, - : 부적합)

구분	특징	토질조건				경사도조건(°)			
		양토	마사토	연암	경암	30 이하	31~45	46~60	60 이상
잔디심기	평떼 붙이기	●	○	-	-	●	○	-	-
	줄떼 심기	●	○	-	-	●	-	-	-
네트잔디	시공이 간편, 경관이 양호	○	●	○	-	○	●	○	-
종자뿌어 붙이기	초본종자 또는 목본종자만을 사용하거나, 혼합하여 기층기가 급하고 토양조건이 열악한 곳에 파종하는 공법으로 한랭도가 적은 곳에 주로 이용	●	○	○	-	●	●	○	○
종비토뿌어 붙이기	시공이 간편하고 녹화효과가 빠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한 공법	-	-	○	●	-	-	●	●
네트종자 뿌어붙이기 (망덮기)	매트를 비탈면의 침식과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녹화하기 위한 공법으로, 침식발생이 많이 예상되는 곳에 빠르게 녹화할 경우에 사용하며, 코아네트, 쥬네트 등이 있음	○	●	○	-	-	●	○	-
묘목식재공법	부분녹화가 필요한 비탈면에 인력을 투입하여 시공하며, 전면녹화가 불리함	●	○	-	-	●	○	-	-
덩굴식물식재	덩굴식물을 이용하여 비탈면에 식재하는 공법으로 유인시설의 설치가 필요	-	-	●	●	-	-	●	●
식생구멍심기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파고, 종자, 비료, 흙을 섞은 종비토를 구멍에 충전하는 공법	○	●	○	-	○	●	-	-
새집붙이	암석을 채굴하고 깎아내어 비교적 요철이 많은 암절개면에 점적인 식생녹화를 목적으로 적용	-	-	●	○	○	●	○	-
식생자루심기	망대에 파종물을 담아놓으므로, 종자와 비료의 유실이 적고, 유연성이 있어 지반에 밀착하기 용이	-	●	○	-	-	○	●	-
차폐수벽	비탈의 앞쪽에 나무를 2~3열 식재하여 수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	-	○	●	●	-	●	●	●

【출처 : 조경설계기준(2002)한국조경학회, 한국의 비탈복원 및 녹화기술(1998)우보명, 비탈면 녹화 설계 및 시공 잠정 (2005)건설교통부】

4) 옹벽 · 석축

- 주변 자연지형과 조화될 수 있도록 조성
- 경사면 상하부분의 경계선은 완만한 곡선으로 처리
- 조화로운 경관적 연속성을 부여
- 옹벽은 구조물특성상 시멘트, 돌 등 내구성 있는 재료로 조성
- 주변부에 담쟁이 등의 덩굴성식물이나 교목류를 식재하여 녹화

가. 배 치

- 경사면 상하부분의 경계선은 완만한 곡선으로 처리하여 지형의 연속성 부여
- 자연지형의 인위적 변형으로 인해 강하고 메마른 느낌을 주기 쉬우므로, 보다 부드러운 자연지형과 조화노력 필요
- 옹벽은 상부의 흩을 급경사로부터 안정시키고, 경사면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
- 석축은 옹벽에 비하여 재료가 주는 이미지가 자연친화적임
- 석축은 축조할 지역의 지형적 조건과 토질의 상태를 고려하여 축조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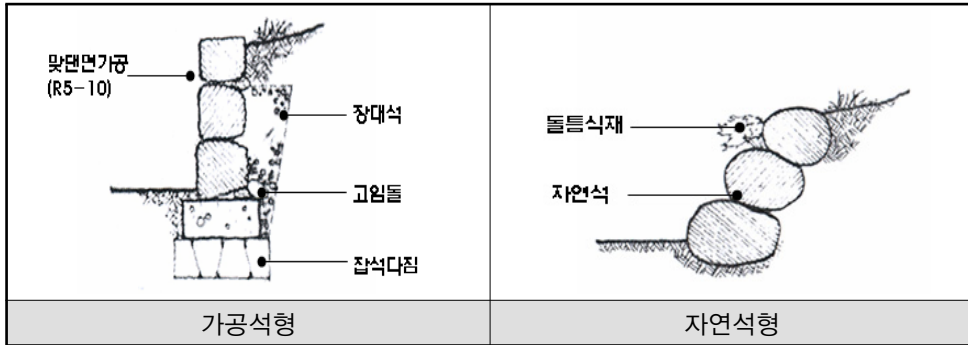
나. 규모 및 형태

① 옹 벽

- 3m이하에는 중력식 옹벽을 사용
- 3~6m에는 역T자형 옹벽 또는 L자형 옹벽
- 6m이상에는 부벽식 옹벽이 적합
- 지하수가 옹벽 배후에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0cm 직경의 배수공을 5% 정도 구배를 두어 3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한국조경학회, 1999)

② 석 축

- 석축은 쌓을 지역의 경사면 기울기가 안식각을 유지한 곳에 쌓는 것이 구조적으로 가장 바람직함
- 자연석 쌓기는 자연석의 외관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조합
- 자연미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



〈그림 22〉 석축의 종류

다. 재 료

- 옹벽의 주재료는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벽돌, 석재를 사용
- 벽돌과 석재는 철근콘크리트 표면 마감재로서 시각적 쾌감을 증진함
- 석재는 화강석 판석을 주로 사용
- 석축은 돌쌓기 시에 자연석으로 산석, 하천석, 호박돌 등과 가공석으로 견치석, 장대석 등을 사용하여 축조

〈표 13〉 재료에 따른 축구의 유형

구 분	내 용
산석	• 산의 능선부에 묻혀 있어 오랜 세월 동안 풍우에 마모되어 형태가 잡힌 돌로서 이끼가 끼어 있는 돌이 좋음
하천석	• 산의 계곡부나 강의 바닥에서 산출되는 돌로서 물의 흐름에 따라 표면이 마모되어 돌의 무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사용
호박돌	• 호박돌은 강호박 돌과 산호박돌 두 종류로 나누어지며, 돌의 배열이 매우 자유롭고 내구성이 우수하고, 유지보수가 용이
견치석	• 전면이 규칙적이며 정사각형에 가깝고 전면에 직각으로 켜 길이가 전면의 최소변보다 1.5배 이상이어야 함
장대석	• 화강석을 직사각형으로 거칠게 정다듬 가공하여 사용

라. 식 재

- 석축의 경우, 자연석 쌓기는 단조로움과 돌과 돌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관목, 초화류를 돌 틈에 식재
- 돌 틈에 식재한 조경 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양질의 토양을 조성해야 함
-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그림 23〉 계단식으로 식수대를 조성한 옹벽



〈그림 24〉 관목과 초화류를 식재한 석축

마. 부대시설

- 비탈면에 옹벽 · 석축을 설치할 경우 사면(비탈면)녹화공법과 연계하여 조성 가능

바. 기타 참고사항

- 기존 콘크리트 옹벽의 미관을 보완하기 위해 슈퍼그래픽을 도입하기도 함
- 목재를 재료로 제작한 옹벽을 축조하기도 함
- 경사면에 담쟁이덩굴 등으로 녹화하면, 친환경적 이미지를 조성할 수 있음



〈그림 25〉 목재를 활용한 옹벽



〈그림 26〉 슈퍼그래픽 처리

3. 하천경관

3.1 하천경관 기본방향

하천경관은 농어촌자연경관 가운데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농어촌 경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하천경관을 정비할 때에는 수역과 그 주변지역과 함께 통합적 계획이 요구되며, 수위변화의 정도를 포함한 계획이 필요하다.

-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여 환경성, 친수성 및 경관적 쾌적성을 제공한다.
- 안전상의 이유로 일부분 펜스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생 울타리를 도입하거나, 목재 등의 자연 소재를 이용한다.
- 수변은 수역에서 육역으로 에코톤이므로 수변 비오톱을 계획할 때에는 연속적인 변화 구조로 하고, 식재설계 시에 이를 고려한다.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을 설치할 경우 주변 하천경관과 조화되도록 디자인과 색채 계획이 요구된다.

하천의 생태적·경관적 기능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유지·관리의 방법, 주체, 비용부담 등을 명백히 한다.

□ 마을의 역사와 함께 한 자연형 하천은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를 입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유리관리 한다.

- 마을의 커뮤니티 장소로서 친수공간을 제공한다.
- 자연의 섭리, 특히 하천(물)을 따라 형성된 마을구조를 유지 관리한다.

Ⅱ 농어촌하천의 유형

- 입지적 특성에 따라 마을 내부를 통과하는 내부관통형, 마을 외곽을 둘러 흐르는 외곽우회형, 마을과 떨어져 있어 바깥으로 흐르는 이격형으로 구분
- 하천 바닥의 형성재료와 경사를 포함한 하상상태에 따라 하천을 구분할 수 있으며 토양, 콘크리트, 자갈·호박돌, 모래, 바위 등으로 구분
- 인공적으로 조성된 제방의 형태에 따라 하천유형을 구분할 수 있으며, 주로 흙, 돌망태, 호안블럭, 호박돌, 바위, 콘크리트 등을 이용하며, 수직형과 경사형으로 구분
- 하도를 자연그대로 유지한 하천과 인공적으로 하도를 개보수한 형태의 하천으로 구분
 - 인공하천은 대부분 홍수시 유량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여 개보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처럼 홍수기와 갈수기의 유량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갈수기에 하상이 노출되어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염문제와 이용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는바(안수한, 1995), 인공하천 계획 시 경관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3.2 하천경관 매뉴얼

〈표 14〉 하천경관 매뉴얼

구분	매뉴얼
자연형 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마을의 전통적인 커뮤니티 공간 확보 • 동물의 이동통로를 제공, 물과 수림대를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형성 • 주변과 어울리는 소박한 경관을 창출 • 하천지역에 맞는 식생을 식재
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류의 이동특성상 하천 중앙부보다는 주변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어도의 형태는 어류가 쉽게 도달하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조성 • 어도형식의 폭, 길이, 경사 등 규모 결정은 하천의 유량, 이용하는 어류의 습성을 고려하여 선택
수변데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수부나 연못, 습지 등 유속이 느린 하천에 설치 • 목적에 따라 기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하천유량의 고수위를 반드시 고려하여 설치 • 내수성이 강한 방부 목은 자연스러운 수변경관을 연출
물놀이장·도섭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장과 도섭지는 주변의 농어촌경관을 감상하고 휴식을 제공할 수 있게 조성 • 하천의 중상류인 계곡과 하류부에 물 보를 쌓아 자연스럽게 조성 • 자연석 물 보는 주변의 강자갈 등과 자연재료를 활용하여 조성
친환경낙시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내 주요 하천 및 저수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생태계를 파괴하고 환경오염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 • 낙시터 좌대는 자연재료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낙시터 이용객들에게 낙시도구 대여료를 징수하여 주민 스스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조류관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조류가 많이 서식하여 이용자가 자연을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에 설치 • 움직이지 않고 조류 관찰이 용이하도록, 식생을 이용한 은폐된 관찰시설을 조성
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계곡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최단거리로 설치하되, 자연환경과 조화를 고려 • 마을의 주요 랜드마크적 요소로서 조형미를 고려하여 설치 • 자연친화적 재료인 통나무, 석재 등으로 조성

3.3 부문별 계획 및 예시

1) 자연형 하천

- 하폭, 유속, 수심이 다양한 자연형 하천을 통하여 생태계의 풍부한 특성을 형성
- 동물의 이동통로를 제공, 물과 수립대를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형성
- 주변과 어울리는 소박한 경관을 창출
- 하천지역에 맞는 식생을 식재
- 마을 역사와 함께 자연섭리로 형성된 자연형 하천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 하천과 하천 변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보존으로 자연환경을 보호·유지하고, 증진하는데 기여
- 인간의 역사적·문화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친수 공간 조성

가. 배 치

- 자연형 하천은 마을과의 관계에 따라 내부관통형, 외곽우회형, 이격형 등으로 구분됨

나. 규모 및 형태

하천의 고유 특성을 보전하도록 함

- 하천지형이 갖고 있는 하도와 하안, 하천 구조물 등을 그대로 보전, 자연스러움 유지
- 청정함, 평온함, 풍부함, 신선함 등 하천의 표정을 살릴 수 있도록 함
하천의 풍부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연출
- 사계절 변하는 하천과 하천에 비취는 저녁노을, 산림, 하늘 등의 아름다운 경관을 느낄 수 있도록 연출

마을 주민들의 활동이 있는 친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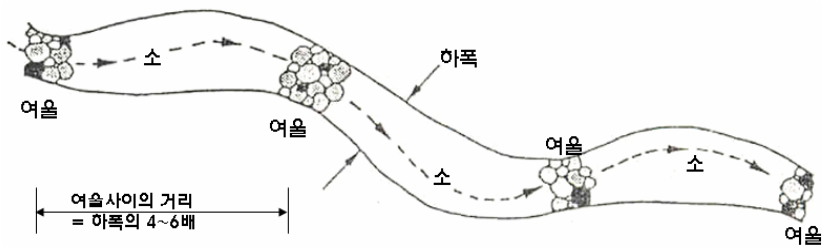
- 캠프, 자연감상, 물놀이, 낚시, 산책, 이벤트, 레저 등 친수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조성

하천과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살리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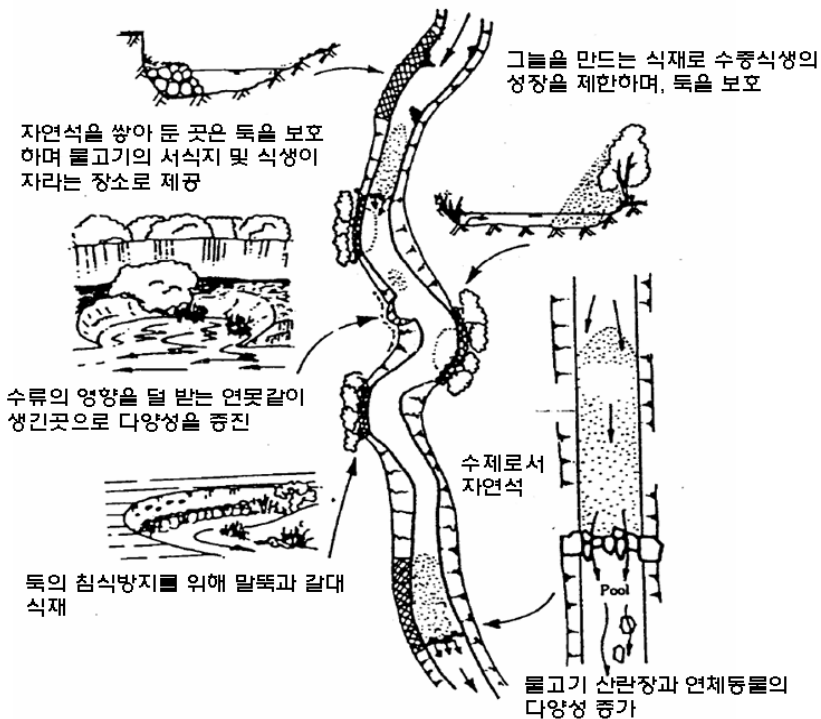
- 하천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고, 하천이 흐르는 곳의 지역성을 수변경관에 반영
- 하천 변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농어촌경관과 어울리도록 재료·색채를 고려하여 조성
- 부득이한 경우에는 녹화를 통해 눈에 띄지 않도록 정비

① 하도(河道, 하천이 흐르는 길, 수로)

- 가능한 한 본래 모습에 가깝게 원래의 하도를 현재의 하도로 재생되도록 굴곡을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 있음
- 옛 지천의 물줄기는 메우지 말고, 현 하천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함
- 수질이 좋은 경우는 기존 하천으로 인해 오염여부를 판단하여 연결
- 부분적으로 하상깊이를 깊게 하여 여울과 소를 자연스럽게 조성
- 여울의 기능을 충분히 유지하도록 여울간의 거리를 하폭의 4~6배로 계획



<그림 27> 여울과 소의 평면형태



<그림 28> 야생동물서식지 보호를 위한 하천의 하도 복구방법

② 하천단면(河川斷面)

- 하천단면은 기존 홍수위의 유량과 평균수위 때의 유량을 계산하여 단면크기를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유입되는 지하수의 유량도 고려하여 하천단면을 설계해야 함
- 최저수위 20cm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천단면을 결정하여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반면에 홍수 시에는 범람하지 않아야 함(한국수자원공사, 2003)

③ 호안(湖岸, 물가장자리, 하안)과 하상경사(河床傾斜, 하천바닥의 비탈면)

- 호안을 개선하기 위하여 쉼나무가지법, 버드나무가지법, 갈대군락하안, 다공질공법, 환경사 식생, 생나무가지 층층문기, 야자섬유를 문기, 식생 돌망태, 식생사석, 식생통나무틀, 생나무꺼꽂이, 사석호안 등 매우 다양한 공법을 활용
- 호안공법은 대상 하천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하여 적용
- 호안으로의 이용객 접근을 배려하여 수변의 편안함과 정취를 도모
- 친수호안은 계단호안과 환경사호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변접근계단 설치 시 하안부에 수위조건을 고려하여 규모와 높이를 결정
- 하상경사는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곡류안쪽으로는 급하게 하고, 바깥쪽으로 완만하게 하여 침식방지를 우선 고려



〈그림 29〉 자연하천의 모습으로 복원한 자연호안



〈그림 30〉 돌과 넓은 초지로 복원한 친수호안

다. 재 료

- 하천단면은 지역의 지형에 적합하도록 하고, 하상의 구상재료와 호안재료가 서로 조화되도록 계획
- 가급적 자연상태를 유지하며, 호안조성 시 사용되는 재료로는 자연재료(목재, 호박돌 등)를 우선으로 함
- 계단호안의 경우 이용자의 미끄러짐과 넘어짐 방지를 위하여 표면이 돌출되어 있는 자갈을 시멘트와 혼합하여 설치하면 효과적임



〈그림 31〉 목재를 이용한 호안 휴게시설



〈그림 32〉 자연석을 이용한 계단호안

라. 식 재

- 하천의 식재는 하천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생육에 적합한 유수, 기층토양, 광선, 영양물질 공급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유량, 유속조절을 통한 홍수조절기능과 제방침식방지, 토양유기물손실방지 및 수질 개선 등의 생태적 기능을 담당
- 제방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수종으로 오리나무와 같이 뿌리가 침수에 강하고 깊게 내려 토양층을 지지할 수 있는 수종을 식재
- 초본류로는 달뿌리풀, 부들, 갈대 등을 식재
- 물과 녹음이 있는 자연공간을 조성하여 녹음 및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수종으로 갯버들, 버드나무류가 적합

마. 부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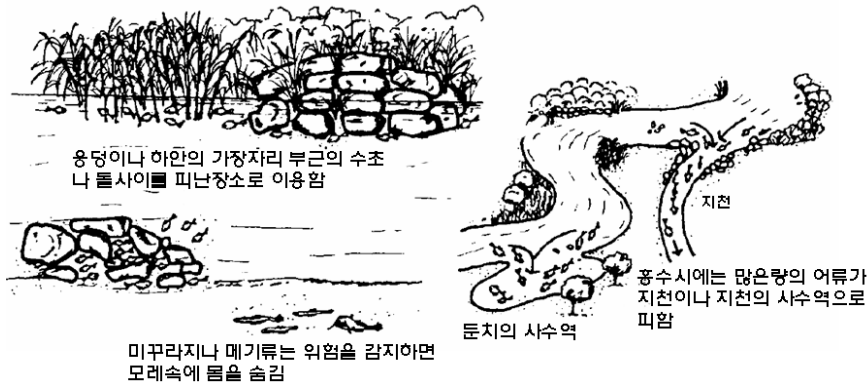
- 하천과 관련된 부대시설은 이하 하천관련 시설계획을 참조

바. 기타 참고사항

- 시멘트 및 콘크리트로 직강화한 농어촌하천에 어류, 조류, 기타 하천생물의 서식처 및 생존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음

Ⅰ 하천 동물 서식처 조성

- 어류는 먹이, 은신처, 물 등 서식환경을 조성
 - 하천의 기본적인 어류서식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공질호안, 수중어초, 기타 수체를 활용하여 서식처를 조성
 - 어류가 서식하는 강은 사행이고, 여울과 못이 있으며, 강변에는 풀이나 수목이 생육하고 있어 적당한 그늘이 있는 곳이 어류의 먹이, 산란, 휴식장소가 됨
 - 냇강의 하류에 서식하는 잉어, 붕어 등의 산란에는 수초가 있는 맑은 물이 필요
 - 주 하천과 냇강이 만나고, 사수역이 있는 하천이 어류의 산란에 유리함
 - 갈대는 홍수시 침수되며, 어류의 피난장소가 됨



어류의 은신처

- 조류는 하천주변에 서식하면서 하천의 모래밭을 번식, 먹이의 획득 및 휴식 장소로 이용함
 - 물총새와 같이 부리로 깊은 둥지구멍을 파는 종류는 흙웅덩이나 콘크리트로 덮이지 않은 하천제방이 필요
 - 갈대나 수풀에 둥지를 마련하는 조류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넓은 공간이 필요
 - 조류의 먹이획득 및 휴식을 위해 수초가 자랄 수 있도록 하며, 버드나무나 갈대밭은 번식 공간으로 이용

【계속】

- 기타 하천생물은 수중동물과 수변동물로 구분이 됨
 - 수중동물은 수중에서 생활하는 곤충류와 수저 또는 저층부에서 생활하는 편형동물, 환형동물, 갑각류, 절지동물 등이 있음
 - 수변동물은 거미류, 양서류, 곤충류, 포유류 등이 있으며, 특히 양서류는 수중이나 수변에서 산란하고 수중에서 변태함
 - 하천 수서동물은 여울이나 못 기타 요소를 이용하여 서식하며 어류, 기타동물의 먹이가 됨
 - 수서동물 중 특히 수생곤충이 중요하며 이들이 서식하기 위해서는 여울과 소가 있고, 수온, 수질, 하상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함
 - 개똥벌레나 물방개류는 하천변 수층에서 산란하며, 수중에서 성장한 유충은 강변을 기어 올라가 흙속에서 번데기로 지내므로 하천변에 흙과 식물이 있어야 서식할 수 있음
 - 나비류의 유충 서식처는 특정 초화류가 정해져있으며, 하천변 식생에 따라 서식 및 분포가 결정됨

【출처 : 환경친화적설계(2003) 한국수자원공사】

2) 어 도

- 어류의 이동특성상 하천 중앙부보다는 주변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어도의 형태는 어류가 쉽게 도달하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조성
- 어도의 폭, 길이, 경사 등의 형식 결정은 하천의 유량, 이용하는 어류의 습성을 고려하여 선택

가. 배 치

- 어도의 위치는 어도의 규모, 어도로 물고기를 모으는 효과, 물고기를 모으는 설비, 홍수 시 수해에 미칠 가능성, 유지관리, 경관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일반적으로 어류의 이동특성은 하천 중앙부보다 주변부를 선호하므로 어도는 하천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규모 및 형태






어도의 형태는 어류가 쉽게 도달하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조성

- 어도를 필요로 하는 어류가 자연스럽게 입구에 도달해서 어도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어도에 들어간 어류는 쉽게 그 출구를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어도의 출구에서 나온 어류는 어도주변에서 본래의 방향에서 벗어나 위험한 상태로 빠지지 않아야 함

어도형식은 폭, 길이, 경사 등을 고려하고, 규모는 하천의 유량, 이용하는 어류의 습성을 고려하여 선택

- 폭은 유량과 어도를 이용하는 어류의 종류와 크기에 의해 결정
- 길이는 설치하려는 저수공간의 높이와 경사에 따라 결정
- 어도의 경사는 1/10이하가 적당(한국수자원공사, 2005)
- 일반적으로 중소하천에서는 계단식형태의 어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나, 대상어종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어도가 있음

〈표 15〉 어도의 유형 및 특징

구분	유형	특징	대상어종
폴타입식 어도 (Pool)	계단식 (Fish lad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격벽을 월류하는 흐름에 의해 각 풀이 연결된 형태 	갈겨니, 피라미, 송어, 산천어 꼬리, 살치 강준치, 황어, 누치, 참마자등 물살을 이용하여 뛰어오르는 어종
	잠공식 (潛孔式, Orif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격벽에 설치된 잠공을 통한 흐름에 의해 각 풀이 연결된 형태 	미꾸리, 장어, 송사리, 모래무지, 통가리, 가물치
수로형 어도 (Stream)	호박돌붙임 경사면식 (傾斜面式)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사가 횡단방향으로 변화하는 비탈면 위를 물이 흐르는 형태로 흐름의 가속을 억제하고, 수심을 깊게 함 휴식장소를 위하여 호박돌을 유선상으로 심음 	피라미, 장어, 모래무지, 돌마자 등 강한물살에 잘 견디는 어종
	도류벽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흐름에 따른 경사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 수로 내에 도류벽을 설치 	장어, 우레 등 구부러진 형상을 좋아하고 기어오르는 어종
	인공하도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적으로 완만한 흐름의 하도를 설치 	전어종(자연 하천의 유로 특성을 이용 하여 자연스럽게 이동 하는 어종)



〈그림 33〉 콘크리트로 만든 일반적인 계단식 어도



〈그림 34〉 자연석 블록을 이용한 계단식 어도



〈그림 35〉 인공블록 이용한 어도



〈그림 36〉 하천경계에 머무를 공간을 제공한 어도

다. 재 료

- 대부분 인공적인 콘크리트 및 시멘트로 제작
- 자연석 블록이나 자연석 돌쌓기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하천경관을 연출할 수 있음

라. 식 재

- 어류의 움직임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식재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부대시설

- 기존의 보나 낙차공의 일부구간에 함께 설치

바. 기타 참고사항

- 보와 댐은 수산업법과 수자원보호령 등에서 어도설치를 의무화
- 기 설치된 어도를 차단할 경우에는 처벌규정도 있으므로 주의

3) 수변데크

- 저수부나 연못, 습지 등 유속이 느린 하천에 설치
- 목적에 따라 기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하천의 고수위를 반드시 고려하여 설치
- 내수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부 스테인을 칠한 목재로 데크를 조성하면 자연스런 수변 경관을 연출

가. 배 치

저수부나 연못, 습지 등 유속이 느린 하천에 설치

- 비교적 수심이 얇거나, 정적인 연못, 습지 등에 설치하고 유속이 빠르고, 강우 시에 유량이 늘어나 침수될 위험이 있는 곳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하천변을 따라 길게 배치하거나, 필요한 일부구간의 수중횡단 목적으로 간이 다리 역할을 수행

나. 규모 및 형태

예상 이용자의 수와 기능에 따라 규모와 형태를 결정하며, 하천의 고수위를 반드시 고려하여 설치

- 산책로, 무대, 전망대, 생태관찰시설 등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형태와 폭 조정
- 하천유량의 고수위보다 다소 높게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함



〈그림 37〉 산책로와 쉼터로 이용하는 수변 데크



〈그림 38〉 수변경관 전망공간으로 이용되는 수중 데크

다. 재 료

원목의 자연스러움을 연출하되, 발수 스테인이나 페인트를 칠한 내수성 목재를 이용

- 원목의 자연스러움을 주는 통나무나, 일반목재를 재료로 계획하는 것이 주변경관과 조화되지만, 발수 스테인이나 페인트에 의한 내수성 강화가 필요함
- 레드우드, 전나무, 삼나무 등과 같이 천연적으로 내수성이 강한 수종을 활용할 수 있으나, 비교적 가격이 비싼 편임
- 병충해와 습기에 강한 약품처리 방부 목은 자재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어 비교적 많이 이용되고 있음

자연석주춧돌을 세워 데크 기둥의 침하를 방지

- 데크 기둥을 세울 때에는 대체로 콘크리트를 이용하나, 가능하면 자연석을 이용하여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

라. 식 재

- 난간부문에 초화류를 이용한 벽걸이형 화단을 설치하여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거나, 난간에 장식물을 부착하여 이용자에게 흥미 유발



<그림 39> 벽걸이형 화단



<그림 40> 장식물을 부착한 데크 난간

마. 부대시설

- 목재와 밧줄을 혼합하거나, 소리철과 같은 테마난간을 설치하여 미관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



<그림 41> 목재 난간을 설치한 데크 (파주 헤이리)



<그림 42> 소리철 난간을 설치한 데크 (파주 헤이리)

바. 기타 참고사항

- 목재 데크는 습기와 햇빛에 항상 노출된 야외에 설치되므로 부피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음
- 자외선에 의한 노출표면 갈라짐 등이 일어나므로, 정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수임

4) 물놀이장 · 도섭지

- 물놀이장과 도섭지는 주변의 농어촌경관을 감상하고 휴식을 제공할 수 있게 조성
- 하천의 중상류 계곡과 하류부에 물 보를 쌓아 자연스럽게 조성
- 자연석 물 보는 주변의 강자갈 등과 자연재료를 활용하여 조성

가. 배 치

① 물놀이장

-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고, 안전상의 위험이나 장애요인이 없는 곳을 선정하여 배치
- 하천의 중상류 계곡이나 하류부에 물의 흐름이 빠르지 않고, 어른 키를 중심으로 깊지 않은 곳에 설치
- 다양한 어류와 수생식물 등을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조성하여 자연학습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함
- 하천의 일부구간을 지정하여 물놀이장을 조성함으로써, 이용객에 의한 수질오염을 줄이고, 하천생태계를 보전

② 도섭지

-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연계한 친수시설이 필요하거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에 조성
- 소규모 자연하천과 달리 강우 시에는 배수로로 이용되며, 농어촌 마을 내 녹지와 수공간을 연결시키는 기능도 담당

나. 규모 및 형태

① 물놀이장

- 하천의 상류부인 계곡에서는 단을 두고, 층별로 깊이 변화를 주어 넓은 Pool로 사용
- 넓은 하천의 하류 부는 자연석으로 생태보막이를 쌓아 경계를 만들어 조성하고, 폭이 매우 넓은 하천인 경우에는 한쪽 하안에 원형으로 자연석보를 쌓아 활용



〈그림 43〉 물놀이장



〈그림 44〉 층계형 물놀이장

② 도섭지

- 농어촌경관과 조화되도록 기존의 실개울, 하천과 유사하게 조성하여 자연스러움을 연출
- 어린이의 물놀이에 따른 안전성을 고려해 물의 깊이는 20~30cm 이내로 설치 (한국조경학회, 2002)
- 주변의 연못, 실개울, 하천 등과 수로로 연결시켜 물이 충분히 유입되고,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
- 도섭지의 이용률을 높이고, 이용객의 흥미유발을 위해 방수처리가 된 물 놀이터, 놀이 벽 등을 배치할 수 있음



〈그림 45〉 실개울형태로 조성한 도섭지 (경기 용인 삼성아파트)



〈그림 46〉 도섭지에 조성한 물놀이터 (서울숲 공원)

다. 재 료

- 물놀이장은 하천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강자갈로 생태보막이를 쌓아서 조성
- 크기가 큰 자연석으로 생태보막이를 설치할 경우에는 징검다리로 조성
- 생태보막이는 유량이 많거나, 유속이 빠를 때는 자연스럽게 흘러나가 하천 수위 조절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유의
- 도섭지 바닥은 안전하고 청소가 용이한 둥근자갈로 조성

라. 식 재

- 용버들, 수양버들과 같이 물가에 생육이 좋은 수목을 식재, 녹음이 있는 쉼터로 이용
- 주변의 오염원으로부터 격리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 완충녹지대를 설치
- 하천 호안에는 부들, 창포, 달뿌리풀 등 습생식물을 식재하고, 자연형 하천 형태 유지
- 도섭지는 수질정화에 적합한 천일사초, 방동자리, 보리수련, 자라풀 등을 경계부에 식재

마. 부대시설

- 물놀이장은 수변계단, 수중 관찰데크 등 다양한 친수 부대시설을 설치해 이용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편익을 제공
-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휴게공간도 설치
- 민물낚시체험을 할 수 있는 연안좌대를 설치하여 복합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계획내용은 ‘친환경낚시터’를 참조

바. 기타 참고사항

- 물놀이장은 물놀이기구 대여료를 징수하여, 주민스스로 물놀이장 주변 및 하천변 쓰레기 수거 등 관리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 하천이나 도섭지의 경우 지형을 활용한 돌 낙차공, 벽천 등 시설로 수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음

5) 친환경낚시터

- 마을 내 주요 하천 및 저수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생태계를 파괴하고 환경오염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
- 낚시터 좌대는 목재와 같이 자연재료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 낚시터 이용객들에게 낚시도구 대여료 등을 징수하여 주민 스스로 운영관리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

가. 배 치

- 대부분 마을 내 주요하천 및 저수지를 활용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낚시터 조성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도록 함
- 휴경 논을 활용하여 양어장 형태의 낚시터 조성이 가능하나, 토지전용 및 낚시터 허가부문에 대한 법적기준을 고려해야 함

나. 규모 및 형태

- 하천의 얕은 부분에 낚시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저차가 있는 사면에 자연석을 쌓고, 접근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확보
- 저수지 내부에 띄울 수 있는 좌대낚시터 및 연안변 낚시터를 조성할 경우에는 낚시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

다. 재 료

- 낚시데크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천생태를 파괴하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소재인 목재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함



〈그림 47〉 낚시를 위한 목재 수변벤치(좌)와 연안변 낚시데크(우)

라. 식 재

- 『생태하천』 과 『생태연못』 의 내용을 참고하여 식재

마. 부대시설

- 입구부에 자원해설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자연생태학습 장소로도 이용
- 자원해설안내판에는 낚시 체험장 위치안내, 주요어종 및 수변식물에 대한 사진과 서식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바. 기타 참고사항

- 낚시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낚시체험도구 대여료의 일부를 낚시체험장 운영관리비로 활용
- 개별단위의 무분별한 이용은 주민들의 감시단 활동을 통해 사전에 방지 · 권고함
- 쾌적하고, 깨끗하게 유지 · 관리하여 깨끗한 마을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
- 낚시와 관련된 법제로 「내수면 어업법」,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 및 「낚시터 운영 관리규정」 등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시설기준을 참고하여야 함
- 마을 내에 위치한 저수지를 활용할 경우, 관련법제와 기준에 따라 낚시터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수질보호구역 및 자원환경 보전지구에 해당되는 지역은 낚시 및 낚시터 허용이 불가함으로 유의해야 함

6) 조류관찰대

- 다양한 조류가 많이 서식하여 이용자가 자연을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에 설치
- 움직이지 않고 조류 관찰이 용이하도록 식생을 이용한 은폐된 관찰시설 조성

가. 배 치

- 다양한 조류가 많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 내에 배치
- 동시에 인간의 접근과 격리된 설치함으로써, 이용자에 의해 서식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 조류탐방을 위한 공간은 이용객을 위한 장소와 조류 활동 장소를 격리
- 경계심이 강한 조류를 위하여 80m이상의 거리를 확보(한국수자원공사, 2003)

나. 규모 및 형태

- 이용자와 조류 서식지의 규모에 따라 관찰이 용이하도록 은폐된 관찰시설 조성
- 이용객들로 인해 관찰하려는 조류가 놀라서 날아가지 않으려면, 성인키의 1.5~2배 높이로 조류관찰시설을 조성해야 함
- 조류관찰, 사진촬영 및 망원경 관찰이 가능하도록 창문을 설치

다. 재 료

- 조류서식처에서 쉽게 수집할 수 있는 목재, 짚 및 갈대 등 자연재료로 제작하여 조류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설치



〈그림 48〉 목재로 만든 간이 조류관찰시설
(우면산 생태공원)



〈그림 49〉 짚으로 만든 간이 조류관찰시설
(서천 금강하구)

라. 식 재

- 관찰시설을 은폐하고, 조류를 유인하기 위한 주 먹이자원이 될 수 있는 유실수를 식재하고, 둥지를 틀 수 있도록 넓은 수림대를 조성

마. 부대시설

- 해설안내판과 관찰망원경을 함께 배치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도모

바. 기타 참고사항

- 자연학습 관찰로의 일부구간에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자연학습 관찰 프로그램으로 운영

7) 다리

- 하천, 계곡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최단거리로 설치하되,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
- 마을의 주요 랜드마크적 요소로서 조형미를 고려하여 설치
- 자연친화적 재료인 통나무, 호박돌 등으로 조성
- 마을의 전통적인 징검다리, 섯다리 등은 지속적으로 유리·관리가 필요함

가. 배 치

- 하천이나 일시적 홍수가 일어나기 쉬운 곳에 마을 주민이나, 방문객의 안전한 이동 동선 확보를 위해 설치하되, 최단거리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규모 및 형태

- 마을의 주요 랜드마크적 요소와 커뮤니티 장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형태와 규모로 설치
- 하천 폭에 따라서 다리의 규모를 결정하고, 차량이 통과할 경우에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조성

다. 재 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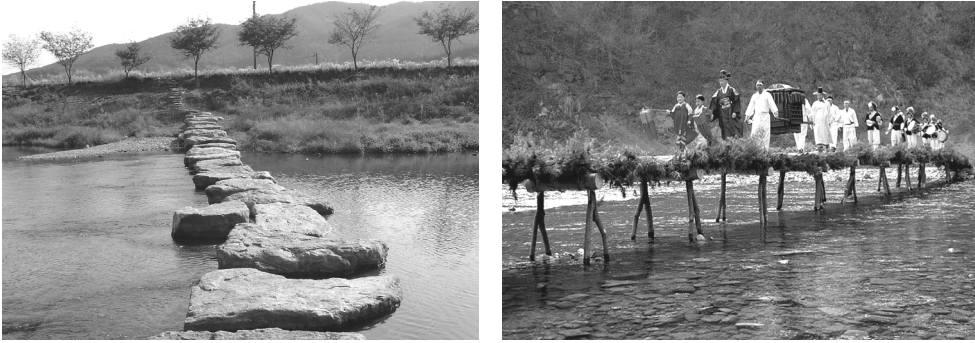
- 가능한 통나무와 자연석 등 자연재료를 사용해 농어촌마을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함
- 폭이 넓은 하천에는 차량통행을 위하여 자연석 석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량이 적은 소하천, 계곡 및 연못 등에는 통나무와 같은 목재다리, 징검다리, 섯다리 등을 설치하여 자연스러우면서도 전통적인 느낌을 전달시킬 수 있음



〈그림 50〉 난간이 없는 아치형 자연석 다리



〈그림 51〉 난간이 있는 자연석 다리



〈그림 52〉 자연석으로 만든 징검다리(좌)와 섞다리(우)

라. 식재

- 보행자 전용다리는 난간에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거나, 일정간격으로 초화류 및 수목 플랜터를 두어 녹음을 제공할 수 있음



〈그림 53〉 다리난간을 활용한 그늘시렁

마. 부대시설

- 난간은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
- 다리난간과 부대시설은 주변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복잡하거나 너무 높지 않게 설치
- 보행자 전용다리는 유모차나 장애인, 노인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완만하게 설치

IV. 생활경관

1. 주거경관

1.1 기본방향

농어촌 생활경관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중의 하나인 주택에 대해서는 기능적인 측면 이외에, 규모, 배치, 지붕, 출입구, 개구부, 담장 등의 개별 요소에 대한 계획적 고려가 중요하다.

주거공간은 마을회관, 저장·가공시설과 같은 공공시설 등을 포함하며, 자연환경 및 농업생산 환경과 가장 효과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각 주거공간의 배치 및 구성은 통일성을 지녀야 한다.

주택의 담장, 지붕, 벽체 등의 외장색채, 재질 등은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유도한다.

- 주택건축에 통일감을 부여하고 그 지역만의 고유한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농어촌 어메니티자원화 될 수 있도록 한다.
- 주택의 지붕형태는 다른 경관요소와 자연스러운 연결이 가능하도록 경사지붕을 유도한다. 다만 기후 등 지역적 여건에 의하여 경사지붕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사지붕을 기본형태로 일부 변형하거나 다른 형태의 지붕을 고려할 수 있다.
- 경사지붕형태의 허용범위를 설정, 통일적·규칙적이면서 변화하는 경관을 창출 한다.
- 경사지붕 설치 시 자연적 소재의 선택과 색채계획을 통한 색채선정 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산간부 농어촌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주택 등 인공시설물을 산의 정상부 보다 계곡부에 입지하도록 한다.
 - 주택 등 인공시설물 설치 시 원지형을 최대한 보존하여 기존의 산림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 기와집, 초가집, 너와집, 우데기집 등 전통농어촌주택은 가급적 보존한다.
-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일지라도, 우리전통문화 경관자원으로서 유지·보존을 권장한다.
 - 전통농어촌주택의 부속시설로서 전통 담, 창고, 우물 등도 유지·보존한다.
 - 개보수시 현재의 평면, 입면, 난방방식, 재료, 문양, 그리고 생활방식에 이르기 까지 기록을 남겨둔다.
 - 전통 농어촌주거 및 부속시설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모색 한다.

1.2 주거경관 매뉴얼

〈표 16〉 주거경관 매뉴얼

구분		매뉴얼	
건축물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공간별 특성 및 기능에 따라 외부공간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위치 • 전통주거의 개념을 도입, 거주자의 휴식, 작업 및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한 마당과 마루공간 구성 • 해당 건축선을 유지하여 주거군 내의 차별한 주거환경 형성 • 주택내 각 실은 가족 구성, 방위, 공간별 특성 및 기능에 따라 외부공간과의 연계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의 경우에는 배후지형의 높이에 따라 적절한 형식의 옹벽을 설치 • 자연지형과 인공지형이 접하게 되면 외관상 서로 조화되기가 어려우나 주위의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조성 • 도로와 접하지 않는 주거 배면의 옹벽은 높이고, 접한 부분의 옹벽은 낮추며, 택지의 고저차를 이용한 매립형 주택과 단차형 주택의 기법을 적용함하여 대지의 고저차를 주택내부에서 해결하도록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옹벽자체에 식재를 하는 경우와 옹벽의 높이를 억제한 후 경사면의 상부에 식재하는 방법이 있으며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옹벽을 경사면으로 설치하여 시각적 압박감을 경감시키고, 또한 경사면에 식재하여 양호한 경관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민의 선호사항에 따라 공동주택개념의 2층의 타운하우스 주거형식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단독주택형식을 혼합배치하여 다양한 주거단지 경관유도 • 각 주호 간 주민의 프라이버시의 유지와 동시에 커뮤니티의 강화를 위한 경관적 차원의 계획적 접근이 필요함. 	
	평면구성 및 형태	거실 (마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용도 생활공간인 마루를 각 실과 마당 그리고 출입구와 연계하여 계획. • 활엽수를 식재하여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절약형 주거공간 형성. • 마루의 재료는 외부환경에 내구성이 있으며, 열전도율이 낮은 목재종을 사용하도록 함. • 마당과 45cm 높이 차를 두어 자연통풍을 유도하여 쾌적한 공간형성.
		창문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광의 능동적인 유입과 자연환경의 적극적인 수용을 위한 충분한 면적 확보. • 개구부 형태 구성 시 장방형의 일정한 단위를 적용하여 일관성 있고 차별한 주거환경 연출 • 금속재 사용 억제, 자연재료인 목재사용을 권장함.
		외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단열을 통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재료 사용. • 외벽색은 색채계획의 색채팔레트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 • 외벽재료는 주변의 자연과 잘 어울리는 자연재와 지역에서 구입 용이한 재료를 적극 사용.
		지붕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형태는 주변 자연지형과 조화되는 박공 지붕형태로 계획 • 물매는 년간 강수량 등의 자연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일반지역보다 높게 계획 • 지붕 색채는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하며, 원색에 가까운 고채도의 색채사용은 금함 • 청색계통의 지붕색상은 주택의 배경색인자연색과 조화되기 어려우므로 배색을 금함 • 재료가 경량 판넬, 합석, 슬레이트인 경우 아스팔트 싱글이나 유사재료로 마감하여 통일성 부여 • 평지붕은 개보수시에 경사지붕으로 형태를 변경하여 주변마을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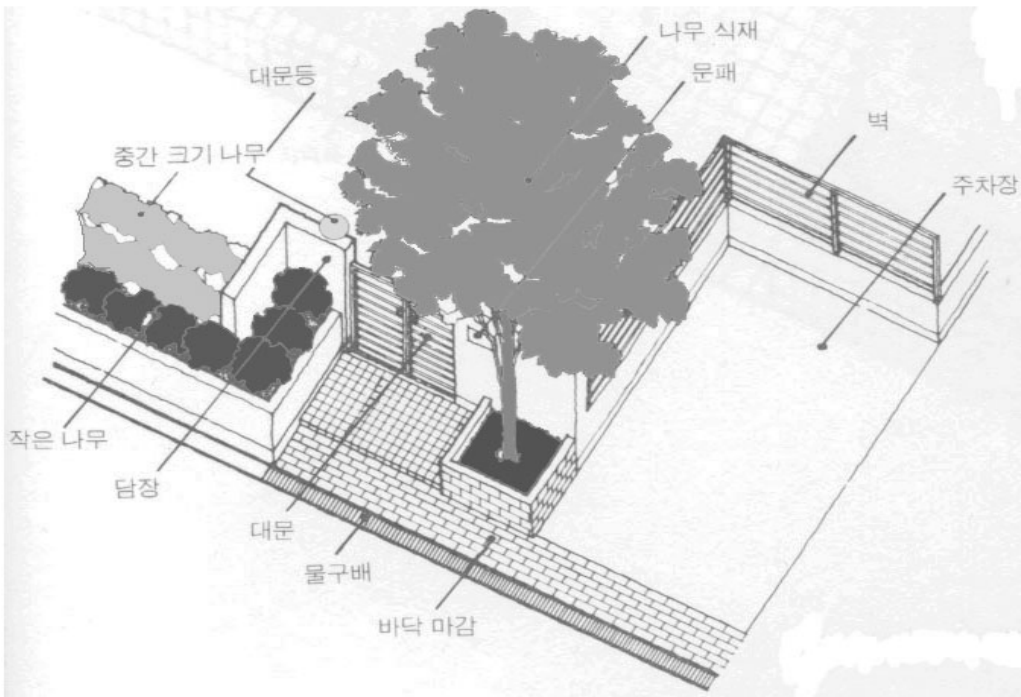
구분		매뉴얼
전통농가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와집을 비롯하여 초가집, 너와집, 우데기집 등 구조와 재료 면에서 보존상태가 양호한 시설은 유지 보수 • 전통주택 구조와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지붕재료나 부속시설의 재료와 형태가 변경된 시설은 가급적 원형상태로 복원을 권장 • 전통시설물로서 보존상태가 양호한 전통 창고, 담, 대문, 우물 등도 유지 보존 권장 • 원형 보존 및 복원에 따른 방안은 지자체나 정부를 비롯하여 다각도로 모색 • 개보수시 현재의 구조, 평면, 입면, 난방방식, 재료, 문양, 그리고 생활방식에 이르기까지 기록을 남길 것
외부공간	조경 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디, 마사토, 자연석 등의 친환경적 재료를 사용하며, 시멘트 포장 등은 사용하지 않도록 함
	경계부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공간의 독자성 부여를 위하여 거주자 기호에 따라 출입부의 개별 식재와 색채계획 • 외부에서 욕실을 거쳐 거실로 진입할 수 있는 보조 출입구 계획 • 주택내부 : 출입간의 방문자 인식이 용이하도록 시각적 관찰이 가능한 개구부 계획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시성있는 재료 권장, 높이 1.2m이하로 설치하여 거주자의 심리적인 안락감과 친밀감을 부여 • 생 울타리 권장, 인공재료 사용 시 주택외관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색채를 사용할 것

1.3 부문별 계획 및 예시

1) 건축물 배치

가. 단독주택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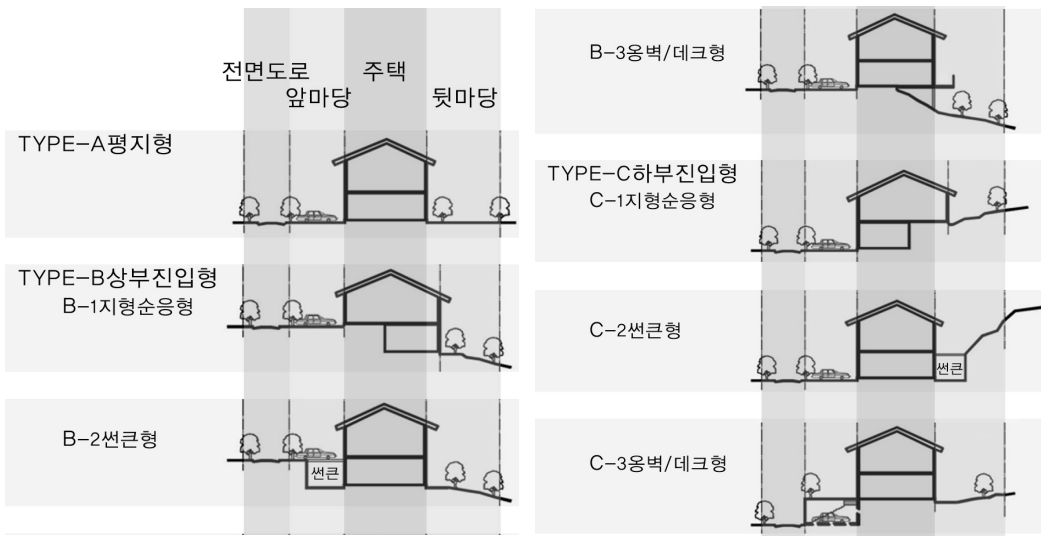
- 기존주택의 경우 현재의 토지현황을 유지하되, 신축대지의 경우 660㎡을 기준으로 산정
- 각 공간별 특성 및 기능에 따라 외부공간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위치
- 전통주거의 개념을 도입, 거주자의 휴식, 작업 및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한 마당과 마루공간 구성
- 해당 건축선을 유지하여 주거군 내의 차분한 주거환경 형성
- 주택내 각 실의 배치는 가족 구성, 방위, 공간별 특성 및 기능에 따라 외부공간과의 연계 고려



〈그림 54〉 단독주택 배치 예시

나. 경사지 주택배치

- 경사지의 경우에는 배후지형의 높이에 따라 적절한 형식의 옹벽을 설치
- 자연지형과 인공지형이 접하게 되면 외관상 서로 조화되기가 어려우나 주위의 자연 경관을 고려하여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조성
- 도로와 접하지 않는 주거 배면의 옹벽은 높이고 도로에 접한 부분의 옹벽은 낮추며, 택지의 고저차를 이용한 매립형 주택과 단차형 주택의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대지의 고저차를 되도록이면 주택내부에서 해결하도록 조성



지형에 따른 다양한 배치방식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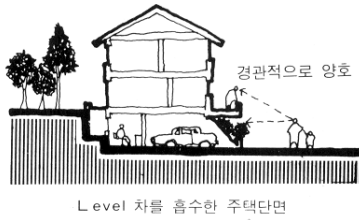


사 례 예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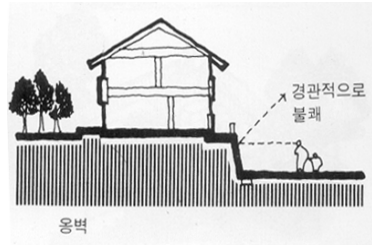
<그림 55> 지형에 따른 주택 배치 및 예시

다. 옹벽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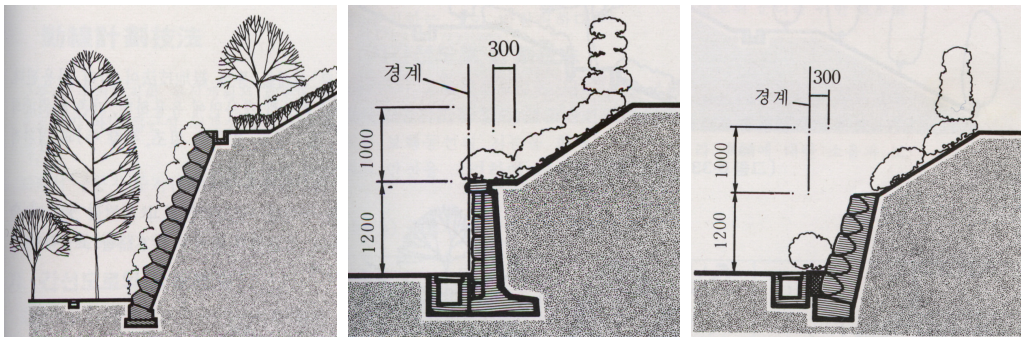
- 옹벽자체에 식재를 하는 경우와 옹벽의 높이를 억제한 후 경사면의 상부에 식재하는 방법이 있으며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옹벽을 경사면으로 설치하여 시각적 압박감을 경감시키고, 또한 경사면에 식재하여 양호한 경관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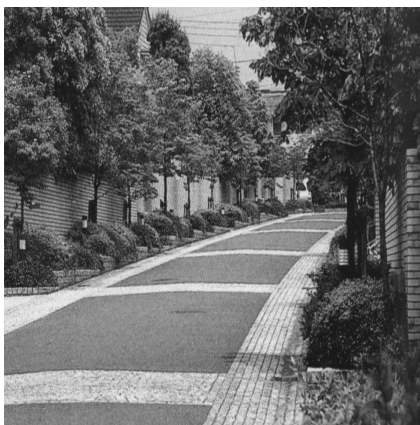
옹벽 및 식재에 의한 양호한 경관형성



옹벽에 의한 불쾌한 경관형성



옹벽 식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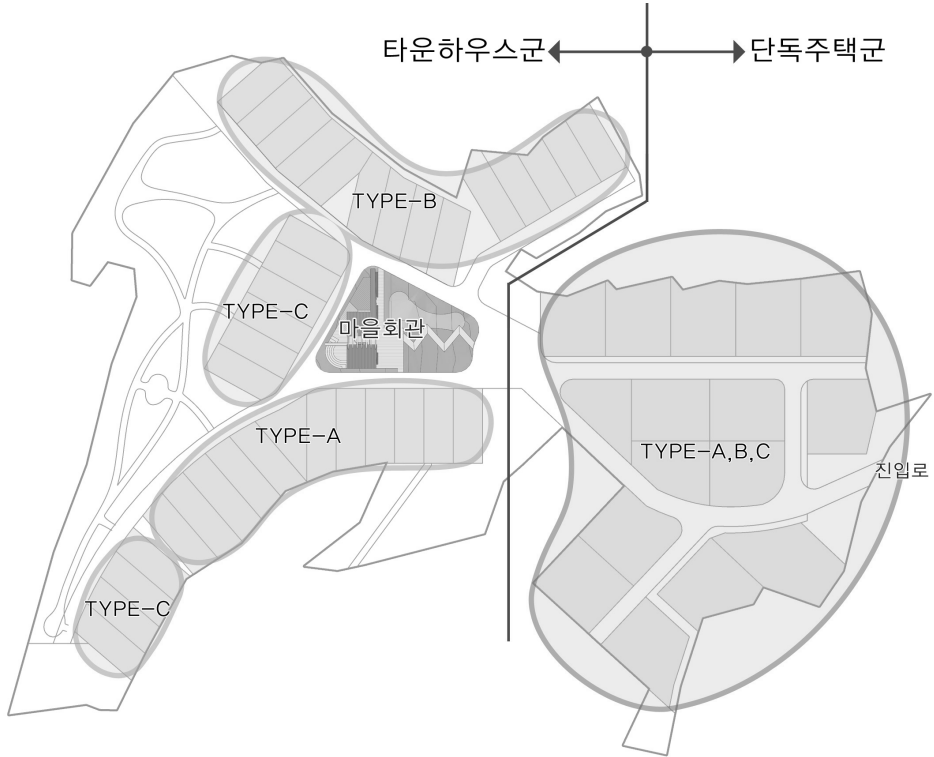


사 례 예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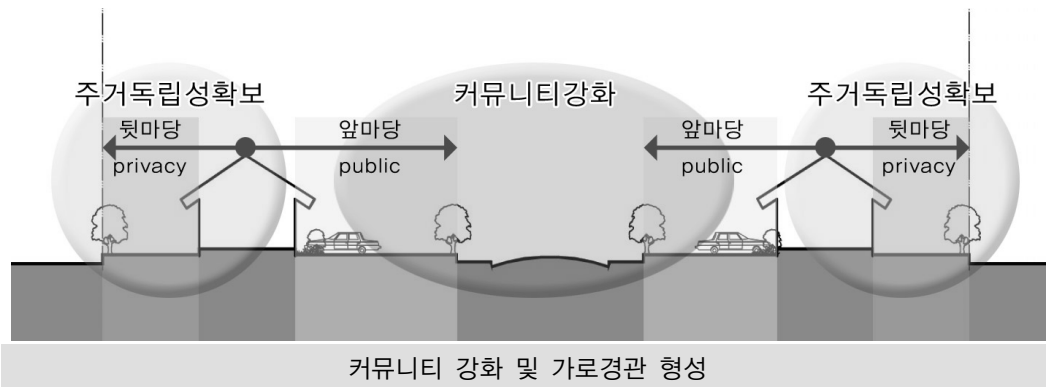
<그림 56> 지형에 따른 옹벽 설치 및 예시

라. 주택단지 배치

- 입주민의 선호사항에 따라 공동주택개념으로 2층타입의 타운하우스 주거형식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단독주택형식을 혼합배치하여 다양한 주거단지 경관유도
- 각 주호 간 주민의 프라이버시 유지와 동시에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경관적 차원의 계획적 접근이 필요함.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의 혼합배치 예



커뮤니티 강화 및 가로경관 형성

<그림 57> 주택단지 배치 및 예시

2) 건축물 평면구성 및 형태

가. 마루

- 다용도 생활공간인 마루를 각 실과 마당 그리고 출입구와 연계하여 계획
- 마루의 재료는 외부환경에 내구성이 있으며, 열전도율이 낮은 목재널을 사용하도록 함
- 마당과 45cm 높이 차를 두어 자연통풍을 유도하여 쾌적한 공간형성

나. 창문형태

- 자연광의 능동적인 유입과 자연환경의 적극적인 수용을 위한 충분한 면적확보
- 개구부 형태 구성 시 장방형의 일정한 단위를 적용하여 일관성 있고 차분한 주거환경 연출
- 금속재 사용 억제, 자연재료인 목재사용을 권장함

다. 외 벽

- 자연광의 능동적인 유입과 자연환경의 적극적인 수용을 위한 충분한 면적확보
- 금속재 사용 억제, 자연재료인 목재사용을 권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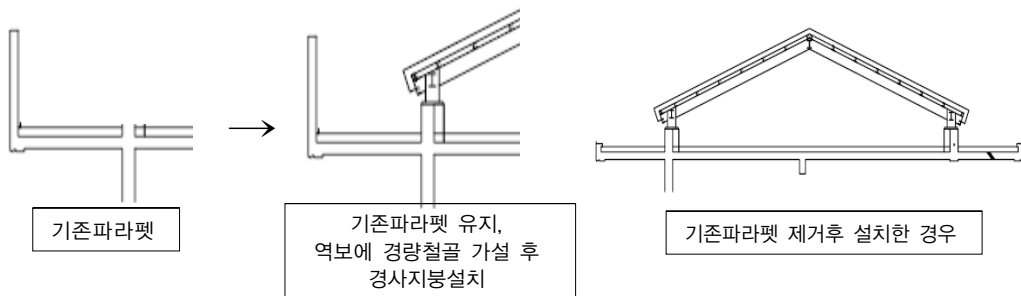
사례예시



- 100㎡ 일반형은 순수하게 주민들의 주거공간만을 위한 계획안으로 제시됨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944호, '09.11.5)를 바탕으로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제시함

라. 지붕형태

- 지붕형태는 주변 자연지형과 조화되는 박공 지붕형태로 계획
- 물매는 연간 강수량 등의 자연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일반지역보다 높게 계획
- 지붕 색채는 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원색에 가까운 고채도의 색채사용은 지양
- 청색계통의 지붕색상은 주택의 배경색인 자연색채와 조화되기 어려우므로 금함
- 재료가 경량 판넬, 함석, 슬레이트인 경우 아스팔트 싱글이나 유사재료로 마감하여 통일성 부여
- 평지붕은 개보수시에 경사지붕으로 형태를 변경하여 주변마을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평슬라브 / 눈썹지붕형 주택 정비방법



사 례 예 시

〈그림 59〉 지붕 계획 및 예시

3) 전통농가주택

가. 유지보수

- 기와집을 비롯하여 초가, 너와, 우데기 집 등이 구조와 재료 면에서 원형에 가깝게 보존상태가 양호한 경우, 지속적으로 유지보존
- 전통주택의 부속시설로서 창고, 담, 대문, 우물 등도 구조와 재료 면에서 원형에 가깝게 보존상태가 양호한 경우, 지속적으로 유지보존



〈그림 60〉 보존상태가 좋은 전통 기와집과 전통 담

나. 보존 · 복원

- 전통주택의 구조와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지붕재료나 부속시설의 재료와 형태가 변경된 시설은 가급적 원형상태로 복원을 권장
- 흙담, 돌담, 전통우물, 대문 등도 일부 훼손, 전통의 것과 차이 부분은 원형 복원을 권장, 보존 · 복원에 따른 경제적 지원은 지자체 ·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모색



복원 전




복원 후

〈그림 61〉 원색의 행랑채 지붕을 전통기와지붕으로 복원한 사례

다. 전통의 계승

- 주생활방식의 변화에 맞추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통주택 평면이나 난방방식, 재료, 구조, 문양, 색채 등을 개보수해야만 하는 경우, 우리 전통농촌 생활문화에 대한 자세한 역사적 사실을 사진과 함께 기록하여 둘 것
- 전통주택의 부속시설들을 개보수할 경우에도 우리 전통 농어촌 생활문화에 대한 자세한 역사적 사실을 사진과 함께 기록하여 둘 것

〈표 17〉 전통지붕 관리

구 분	관 리
규 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식 토기, 초가, 너와, 전판암 등과 같은 전통재료를 사용하여 전통적 방법으로 축조
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관련 공무원 자문과 지도를 받아 복원하도록 함. • 이질적 재료를 사용하였던 부속채 등의 지붕은 원래의 전통적 재료로 복원함.
유 지 보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공무원과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권장함. • 마을 내 주택과 층고, 처마높이, 형태를 맞추어 지붕을 조성하여 주변 산림과 어우러진 자연스카이라인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함. • 지붕의 형태는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 등 전통적 양식을 원칙으로 하여 전통적 이미지를 유지하도록 함. <div style="text-align: center;">  <p>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고유의 건축양식이 있는 경우 지붕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을 지역 고유양식에 맞추도록 함. • 지붕 및 부속물의 보수 시, 환경친화적 전통적 소재 및 자연도료 등을 이용하고, 전통적 양식에 따라 보수하도록 함. • 주택 보수 및 부속건물 건축 시, 전통지붕과 조화될 수 있도록 주조색은 저채도색 사용. • 향토수종을 마당에 조경수로 식재하여 전통지붕과 어우러져 고전미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함. • 물받이관이나 통풍관에는 철망을 설치해 새, 박쥐 등이 빠져죽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금 지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에 있어 현대적 재료는 가능한 사용을 금함. 특히, 외관으로 드러나는 사용 금지

4) 외부공간

가. 마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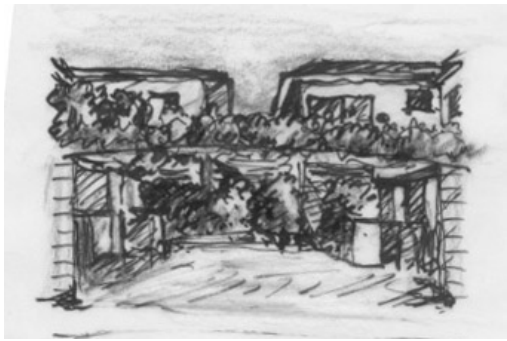
- 잔디, 마사토, 자연석 등의 친환경적 재료를 사용하며, 시멘트 포장 등은 사용하지 않도록 함.

나. 출입구

- 주택의 독자성 부여를 위하여 거주자 기호에 따라 출입구의 개별 식재와 색채계획
- 외부에서 욕실을 거쳐 거실로 진입할 수 있는 보조 출입구 계획
- 주택내부: 출입구의 방문자 인식이 용이하도록 시각적 관찰이 가능한 개구부 계획



녹화된 출입구



만경류 식재 출입구



사례예시-1



사례예시-2

〈그림 62〉 출입구 계획 및 예시

다. 담 장

- 투시성 있는 재료 권장
- 높이 1.2m이하로 설치하여 이웃 간의 커뮤니티 향상과 거주자의 심리적인 안락감 부여
- 생 울타리 권장
- 인공재료 사용 시 주택외관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색채를 사용할 것



담장이 없는 주택



낮은 울타리가 있는 주택



사례예시-1



사례예시-2



사례예시-3



사례예시-4

〈그림 63〉 담장 및 외벽 계획 및 예시

〈표 18〉 전통담 관리

구분	관 리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 흙, 관목류 등 자연의 전통재료를 사용하여 전통적 방법으로 축조된 담으로 지역경관에 어울리는 관례적 높이와 폭으로 조성함. - 높이 : 일반적으로 사람의 키 높이를 넘지 않도록 함(150cm 내외). - 두께 : 일반적으로 두자 정도로 함(60cm 내외). • 마을 주요 안길에 위치한 돌담은 높이와 두께, 양식을 통일하여 조성함.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관련 공무원 자문과 지도를 받아 복원하도록 함. • 전통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 복원하도록 함. - 돌담은 지역에서 채취되는 석재를 이용함. - 산울타리는 당해 지역이나 마을에서 생육하는 수종을 식재함. • 전통담의 지붕, 대문 등 부속구조물도 전통양식을 고려하여 복원하도록 함.
유지 ·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 재료를 사용하여 원형대로 보수하고, 부속물도 원상태대로 유지·관리함. • 전통미를 나타내는 토담, 돌담, 산울타리, 판벽담 등 각 담의 전통미 유지 가능하게 보수 • 자연재료의 담장에는 박, 수세미, 담쟁이, 송악, 능소화 등 넝쿨식물을 식재할 수 있음. • 장마 후에는 점검 및 유지·보수하도록 함. • 산울타리는 년 3회 정도 정기적으로 전정하고, 통행자에게 지장이 없도록 관리함.
금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에서 빠져나온 돌, 기와 등의 조각들은 없애지 않도록 함. • 담의 상부에 가시철사, 깡 유리 등 부속물 부착 금함. • 전통담에는 시멘트를 바르지 않도록 함. • 산울타리는 제초제나 살충제 살포를 금함.



〈그림 64〉 블록 담을 전통 담으로 교체한 사례

5) 민박농가

- 운영자인 주인과 동일 가옥 내에서 민박이 이루어지는 생활혼재형과 별도의 공간을 갖는 생활분리형의 완전독립형으로 구분하여 시설여건에 따라 운영형태를 선택이 가능
- 민박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수, 연령, 성별, 취미, 목적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적합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

가. 배 치

- 운영자인 주인과 동일 가옥 내에서 민박이 이루어지는 생활혼재형과 동일가옥 이지만 민박 이용자들은 별도의 공간을 갖는 완전독립형으로 구분하여 조성이 가능
- 생활혼재형 민박시설은 가족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민박 이용객과 함께 생활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음
- 운영자의 주거와 독립된 별채형식으로 배치하면, 이용객들은 편의를 도모할 수 있어서 농가민박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음

나. 규모 및 형태

민박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수와 연령, 성별, 취미, 목적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적합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

- 농업과 전통문화 체험을 목적으로 한 방문객, 단순히 휴양을 목적으로 한 방문객, 농산물 구입을 목적으로 한 방문객 등으로 다양함

외관과 내부공간 디자인도 획일적인 것보다는 자연과 조화되면서 다양한 전원적 경관이 형성되도록 하며, 외관은 같더라도 내부를 서양식과 한옥식으로 구분 조성할 수 있음

- 지역에 따라서는 지붕의 형태와 색, 벽의 재료와 색, 생울타리 수종, 간판 등 일정한 항목에 관하여 협의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조성할 수 있음
- 양옥형, 한옥형, 산장형 및 별장형 등 다양한 건축양식이나 형태 중에서 주변 환경에 위화감을 주지 않게 계획

방문객이 내외부에서 농어촌다운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

- 신규로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내부인테리어도 자연소재로 마감하고 짙신, 싸리공예, 나무공예품, 삼태기 등의 농가소품을 배치, 농가분위기와 어울릴 수 있도록 함

- 외부공간은 쟁기, 호미 등 각종 농기구를 비롯한 맷돌, 가마니 등 옛 조상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여러 민속품을 이용하여 방문객이 관람 또는 체험할 수 있도록 함
- 화장실, 공동세면장은 깨끗한 내·외장을 갖추도록 하고, 잔디정원, 바베큐시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숙박 열쇠, 열쇠고리, 방이름표 및 액자 등을 목재로 제작 · 장식함으로써 보다 방문객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함

다. 재 료

- 마을회관 · 경로당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므로 관련부문을 참조

라. 식 재

- 마을회관 · 경로당과 동일한 식재패턴으로 조성되므로 관련부문을 참조

마. 부대시설

- 소화기를 비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함

바. 기타 참고사항

- 농어촌민박의 유형을 검토하는 것은 단순히 민박의 종류를 분류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시설조건과 지역여건을 바탕으로 어떤 유형의 민박고객을 유치할 것인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어떤 시설을 갖출 것인지 등 농어촌민박사업의 성격을 결정짓게 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이해가 필요
-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방문을 즐기는 성향의 인성을 가지고, 손님에게 대접할 수 있는 몇 가지 음식솜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민박운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유리
- 농어촌민박 운영 시 필요한 점검리스트를 작성하여 벽면, 문, 창, 가구, 용품을 비롯하여 외부공간인 정원 등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관리하도록 함

6) 마을공동숙박 · 마을펜션

- 경관적으로 양호하고 마을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하고, 마을주민의 주 생활공간에서 다소 떨어져 있으면서, 주요도로변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도모

- 가능한 단층으로 하고, 내부를 복층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공간구성으로 조성
- 여러 개의 객실로 조성할 경우에는 각각의 공간이 독립될 수 있도록 계획

가. 배 치

- 경관적으로 양호하고 마을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언덕 위나, 마을주민의 주거지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곳으로 주민들의 사생활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
- 이용객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마을주민 스스로 유지관리 및 운영이 용이하도록 주요도로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

나. 규모 및 형태

단체 및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의 규모를 다양하게 배치

- 가능한 단층으로 하되, 내부를 복층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공간구성으로 조성
- 건물 외장 재료에 따라 전통기와형, 초가형, 스틸하우스, 목재판넬형, 통나무형, 벽돌형 등으로 다양하게 조성이 가능하나, 각각의 재료특성에 따라 시공비용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함
- 바닥은 전통온돌방식의 황토로 마감하고, 방의 일부는 구들을 놓아서 군불체험이나 찜질방과 같은 연계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농어촌의 정취를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음
- 거실에서 외부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창호를 설계하고, 자연채광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함
- 내부는 방, 화장실, 싱크대, 거실 등 기본시설을 제공하고,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는 가구와 관련서비스 기구를 배치
- 여러 그룹이 함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출입구를 따로 두고, 샤워시설과 화장실 등은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서, 이용객들이 서로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함



〈그림 65〉 목재, 황토, 기와지붕을 활용



〈그림 66〉 콘크리트로 건조하고 외벽은 황토



〈그림 67〉 복층형태의 방



〈그림 68〉 단체이용객들을 위한 방

다. 재 료

- 마을회관 · 경로당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므로 관련부문 참조

라. 식 재

- 마을회관 · 경로당과 동일한 식재패턴으로 조성되므로 관련부문 참조

마. 부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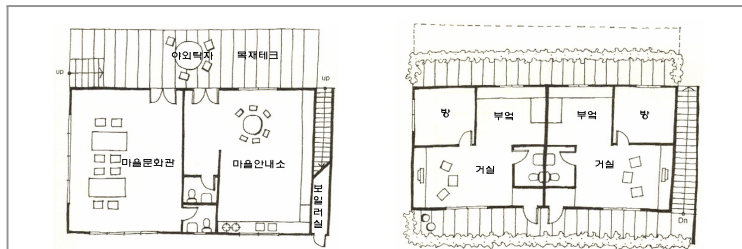
- 방문자센터와 마찬가지로 외부공간에 휴게시설을 배치하고, 잔디를 식재하여 이용객의 야외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바. 기타 참고사항

- 마을공동숙박 이용객의 예약, 안내 등 전담 관리인을 두어 운영관리를 배려하도록 함
- 단체 이용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조성

II 2층 타입의 통나무마을공동숙박(펜션) 조성 사례

- 1층은 마을안내소 및 마을문화관으로 약 100m²으로 계획하여 조성, 2층은 가족 단위의 콘도형 숙박시설로 50m² 규모로 2개의 객실로써 주방, 거실, 현관, 화장실, 방 1개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소규모 숙박시설로 조성
- 건물의 형태와 재료는 경사형 지붕으로 아스팔트 싱글 재료를 사용하고, 건물벽면의 주재료는 황토벽돌과 황토를 사용하여 소박한 분위기를 연출



〈그림 69〉 구병리 마을 마을공동숙박(펜션) 1층(좌)과 2층(우) 구성도면

【출처: 구병리 아름마을가꾸기 개발계획(2002)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가로경관

2.1 기본방향

지역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장승, 비석 등 사인과 조각을 배치하여 마을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지역을 상징하는 특정 야생동물이나 패턴 등을 가로 시설물, 옹벽 등의 디자인 요소로 적용할 수 있다.

가로수와 가로시설물의 규모 및 배치는 주변 농업생산 환경에 그들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보도확보, 공개공지 확보 등을 통하여 보행공간을 확충하고, 도로선형 변화를 유도하여 다양한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경관도로 선형은 자연지형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경관변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경관도로의 가드레일은 보행자 및 자동차 탑승자의 시선을 고려, 조망을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보도 및 산책로는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가능한 비포장 또는 투수성 포장을 도입한다.

도로의 특성 및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로시설물을 배치한다.

철도 및 신교통수단 도입 시,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다.

- 신교통수단을 위한 고가차로는 그 자체의 형태미 및 주변 농어촌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형태, 의장, 색채 등을 계획한다.
- 당해 교통시설 연변의 경관관리와 교통시설 내부에서 바깥을 보는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2 가로경관 매뉴얼

〈표 19〉 가로경관 매뉴얼

구 분		매 뉴 얼
차 량 가 로	진입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내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입하는 기능적 요소를 고려 • 차량중심의 농어촌진입도로보다는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성을 우선 고려 • 마을의 첫인상을 주는 공이므로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식재
	내부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자연스러운 도로를 보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며, 농기계와 차량 등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충분한 보행공간 확보 • 주거지, 담장 등이 조성하는 경관을 감상하고, 보행자의 눈높이에 맞는 지역 내 토종 초화류 및 관목류 식재
	자전거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도로의 노폭은 양방향으로 통과할 경우에는 1.1m이상으로 하며, 자전거의 속도(10~30km/hr)에 따라 길이 결정 • 포장은 자연스러운 강화마사토를 사용하고, 배수가 불량한 곳은 투수콘을 활용 • 기존도로와 연계하여 설치 시 수림대를 활용하여 확장
보 행 가 로	산책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솔길, 하천변 독방길, 농로 등을 활용하여 산책코스로 개발 • 기존 흙 포장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도로경계 및 주변부에는 초화류를 식재하고, 산책로 주변에 편익을 도모하는 휴게시설 설치
	테마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책로, 등산로를 포함하여 마을내부도로(안길), 농로 등을 활용하여 자연 및 역사 체험 활동을 위한 코스 개발 • 거리는 1~2km, 30분~2시간내외로 순환형 코스로 개발 • 기존 휴포장을 사용하고, 계단설치 시 통나무, 자연석 등으로 자연스러움을 연출
	등산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임도 및 등산로를 정비 및 개설하여 등산코스를 개발 • 경사로에 계단 설치 시 목재를 활용하여 자연스러움 연출 • 정상부 및 조망경관이 좋은 위치에 전망대 및 휴게시설 설치 • 자연관찰로, 역사탐방로 등의 테마로나 산림욕장 등과 연계 배치 가능
가 로 시 설 물	가로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조명 설치은 자제 • 마을 고유의 디자인 개념으로 계획하여 설치 • 가급적 목재, 석재 등의 자연재료로 제작
	경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는 친환경적인 목재와 자연석 등을 활용하여 농어촌경관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 • 경계기능을 유지하면서, 초화류와 함께 식재하여 경계부의 장식적인 효과 유도
	담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구조물 기능을 수행하고, 실용적이어야 함 • 무엇보다도 농어촌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심미성이 있는 계획이 요구됨 • 가능한 농어촌다움을 유지하고, 그 지역의 자연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3 부문별 계획 및 예시

1) 진입도로

- 마을내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입하는 기능적 요소를 고려
- 차량중심의 농어촌진입도로 보다는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성을 우선 고려
- 마을의 첫인상을 주는 곳이므로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상징물 및 식재 계획 필요

가. 배 치

- 자연지형조건을 최대한 보존한 상태에서 선형 도로로 조성할 것을 권장
- 2차선 이상의 도로인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행 공간 확보

나. 규모 및 형태

- 기존 지형을 살려 직선보다는 약간의 굴곡이 있는 자연스러운 형태를 유지
- 보행자와 차량이 동시에 이용하는 보차 공존도로인 경우, 일반 도로 폭보다는 넓게 확보하여야 함

다. 재 료

- 2차선이상 국도·지방도인 경우 기존의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을 유지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농어촌의 전형적인 흙길을 연상시킬 수 있으면서 투수성 포장 재료인 강화 마사토, 강화황토, 투수콘크리트 등을 사용

라. 식 재

마을 입구성을 강조할 수 있는 가로수를 식재

- 기존 자연지형을 활용하고, 계절별로 다양한 변화감을 줄 수 있도록 가로수 열식 및 관목과 초화류를 식재
- 도로변 자투리공간에 녹지대를 조성하여, 녹음을 제공
- 마을 내부도로까지 수종과 식재패턴을 통일하여 공간의 연계 강화



〈그림 70〉 가로수 식재(전남 순천 봉산리)



〈그림 71〉 초화류 식재(전남 순천 봉산리)

- 통과형의 마을내부도로인 경우에는 도로주변에 수목의 높이와 수종을 다양하게 하여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는데 기여

마. 부대시설

- 보행자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공간을 분리하는 보차도 설치 시, 경계부에 자연석을 활용한 경계석이나 식수대를 조성
- 배수관리 시설, 가로등을 설치하여 차량과 보행자에게 편의 제공
- 진입부에 안내표지판과 마을상징물(장승 · 솟대 · 벽수 등)을 설치, 마을의 입구성 강조
- 마을심터를 설치하여 버스정류장과 함께 마을주민을 비롯한 인근마을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
- 폭이 넓거나, 장애물 또는 구조물이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이동을 방해할 경우, 생물 이동통로 설치
- 과속주행을 억제할 수 있도록 요철·둔덕과 같은 안전시설을 도입



〈그림 72〉 중앙식수대와 도로변식재(일본)



〈그림 73〉 마을입구부 돌탑(전남순천 봉산리)

바. 기타 참고사항

-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가로수식재사업, 꽃길 가꾸기 사업,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면, 식재비를 비롯한 관리운영비용을 절감하는데 유용
- 꽃길조성 시 농촌기술센터, 지자체의 꽃씨은행(Seed Bank), 꽃씨 관련단체에서 무상 배포하는 꽃씨를 활용 가능
- 가로수 및 꽃길을 특색있게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마을만의 명소로써 마을을 널리 알리고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

Ⅱ ‘가로수’를 활용한 관광명소

1) 담양군 금성면 원울리 (15번 국도)

- 1972년 전국 가로수조성사업 당시 최초로 1,500그루의 메타세콰리아를 식재, 1974년 당시 내무부로부터 최우수 시범가로수 길로 지정
- 2002년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본부와 산림청의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아름다운 거리 숲 부문’ 대상으로 선정
- 총길이 8.5 km 이며, 가로수의 높이는 10~25m, 지름 50~80cm에 이르며, 가로수길 달리기대회, 한 여름밤의 가로수 음악회 등이 개최되고 있으며, 각종 CF와 영화의 배경지로도 널리 알려짐
- 주변에는 자운영, 청보리를 식재하여 계절별로 운치가 있어 관광명소로 부각

2) 울진군 목백일홍 꽃길(88번 국도)

- 1988년부터 울진군이 200리 꽃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주요도로변에 목백일홍 9,200여 주를 식재하여 관리



메타세콰리아 가로수길 (담양군)



목백일홍(배롱나무) 꽃길(울진군)

【출처: 담양군청, 울진군청 홈페이지】

2) 내부도로

- 기존의 자연스러운 도로를 보존함과 동시에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며, 농기계와 차량 등으로부터 보행자가 보호되도록 충분한 보행공간 확보
- 주거지, 담장 등이 조성하는 경관을 감상하고, 보행자의 눈높이에 맞는 지역 내 키가 작은 초화류 및 관목류 식재

가. 배 치

- 마을 주민과 방문객들이 동시에 이용하는 도로면서 마을 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안전과 흥미를 고려
- 마을 내 주요경관과 시설을 감상하는 곳을 테마로 연결하기 위해 포장과 재료를 통일

나. 규모 및 형태

- 자연스러운 기존 내부도로를 최대한 보존 유지
- 보행자가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농기계와 차량 등이 통행할 경우에는 여유를 두어 폭을 확보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 도모

다. 재 료

- 기존의 흙 포장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바닥 면의 배수가 불량하여 포장을 할 경우에는 보행 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투수콘, 쇠석, 자연석자갈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자연미를 살릴 수 있는 계획



〈그림 74〉 흙 포장(경북 안동 하회마을)



〈그림 75〉 쇠석 포장(전남순천 낙안읍성마을)

라. 식재

- 보행유도 및 공간간의 연결기능을 부각시키면서, 경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 주거지부에는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돌담과 흙담을 쌓아서, 농어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함
- 화살나무, 수수꽃다리, 개나리 등은 시각과 후각적으로 흥미를 제공하여 지루하지 않고 보행할 수 있도록 함



〈그림 76〉 담장변 식재



〈그림 77〉 자연석 돌담 복원

마. 부대시설

- 배수관리시설, 가로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에게 편의를 도모
- 경계석을 설치할 경우에는 통나무 또는 자연석 재료를 권장함

바. 기타 참고사항

- 현재 농어촌마을 내부도로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사업을 시작으로 도로정비 및 확포장 사업 시에 값이 싸고 내구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어 콘크리트, 아스팔트 재료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이는 농어촌의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있음
- 따라서, 주변 담장재료와 마을전체 분위기에 어울릴 수 있으면서, 친환경적인 재료로 포장하는 것을 권장함

3) 자전거도로

- 자전거 도로의 노폭은 양방향으로 통과할 경우에는 1.1m이상으로 하며, 자전거의 속도(10~30km/hr)에 따라 길이 결정
- 포장은 자연스러운 강화마사토를 사용하고, 배수가 불량한 곳은 투수콘을 활용
- 기존도로와 연계하여 설치 시 수림대를 활용하여 확장

가. 배 치

- 가능한 자연지형에 자전거 타기 적합한 장소를 이용하되, 배수가 잘되고, 노면의 기복 차이가 크지 않은 곳을 택하여 배치
- 기존도로와 병행하거나, 보행자도로도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
- 폭이 넓은 기존도로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포장을 달리하거나, 노면표시와 녹지를 활용하여 공간을 구분



〈그림 78〉 자연지형을 활용한 자전거도로



〈그림 79〉 식수대로 구분한 자전거도로

나. 규모 및 형태

- 자전거의 속도는 10~30km/hr이며, 이에 따라 길이를 선정하고, 순환형으로 배치함으로써 이용객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고려
- 양방향일 경우에는 1.1m로 하고 한 방향으로 달리는 경우에 바람직한 최소 폭은 약 60cm정도이며, 2대 이상 통과할 경우에는 전체 150cm정도가 적당(최기호, 1997)
- 자전거 도로가 단독으로 설치될 경우 안전을 위하여 최소곡선반경은 자전거의 설계 속도에 따라 10m이상으로 함(한국조경학회, 2002)
- 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와 평면교차 할 경우 교차 각은 45°이상으로 하고, 교차점으로부터 자전거도로 각 양측의 10m이상 구간은 시야의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함

다. 재 료

- 포장은 가능한 흙 포장을 그대로 유지하여 자연경관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고, 배수가 불량한 곳에는 마사토나 투수콘으로 포장
- 기존 진입도로나 내부도로의 재료와 통일시키며, 포장의 색을 달리하여 구분이 가능하나,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

라. 식 재

- 자전거도로의 경계부에 녹음을 주되, 자전거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하고가 높은 수종을 열식
- 비슷한 수형이나 전정에 강하면서 가지와 잎이 치밀한 수종을 선정
- 수목식재 시 주거지부, 산, 하천이나 호수, 저수지 등의 주요경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식재간격의 여유를 줌
- 완충녹지대 설치 시, 도로와 자전거도로 경계부에 관목류를 밀식 (주요수종: 히어리, 무궁화, 조록싸리 등)

마. 부대시설

- 자전거도로 구간에 쉼터를 두어 이용객들에게 휴식할 수 있는 서비스공간을 함께 조성
-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 하고, 자전거표지판을 설치
-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 불편이 없도록 함

바. 기타 참고사항

- 자전거도로 설치 시에는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제의 검토가 필요 함

■ 자전거도로 설치와 관련된 법제와 내용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규칙
 - 자전거도로의 유형, 설치방법, 자전거도로이용방법, 벌칙 등
- 농어촌도로정비법(농어촌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조
 - 자전거의 정의, 설치, 폭
- 도로법의 (도로구조시설에 관한규정) 제2조, 제11조
 - 자전거도로의 정의, 설치 및 폭
- 도시계획법(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1조
 -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 설치기준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조
 - 자전거도로의 정의, 통행방법

■ 산악자전거로 계획기준

- 용어의 정의
 - 산악자전거는 산악자전거(MTB)를 활용하여 자전거타기 경기 및 레포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산림내의 도로
 - 지형 그대로를 이용하거나, 인위적 구조물을 설치하여 산악자전거(MTB)를 탈수 있게끔 만든 비포장도로임
- 세부기준
 - 농어촌마을에서는 기존 임도 및 등산로를 정비 및 개설한 순환형코스를 개발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훼손은 줄이고, 자연을 즐기도록 함
 - 기존 등산로와 달리 인위적으로 산악자전거를 위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음
 - 입구 주변에 코스구분, 도로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표지판을 설치
 - 전문가용, 아마추어용 코스를 구분하여 배치하여 순환형 코스로 조성하며, 중간지점에 쉼터 배치
 - 부속 시설물의 재료는 자연경관과 어울리도록 목재를 사용
 - 쉼터 주변에 지역특정 수종을 식재하여 마을 이미지를 제고

4) 산책로

- 오솔길, 하천변 독방길, 농로 등을 활용하여 산책코스로 개발하고, 기존 휴포장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도로 경계 및 주변부에는 초화류를 식재하고, 산책로 주변에 휴게시설 설치

가. 배 치

- 마을안길에서 다소 벗어나 있고, 주변이 조용한 길을 산책로로 선정
- 마을 주변 산에 위치한 오솔길, 하천이나 호수, 저수지 주변을 따라 위치한 독방길, 경작지의 농로길 등을 활용하고, 휴식과 심신단련을 위하여 보행자만 접근하는 길을 활용

나. 규모 및 형태

- 노선형식은 주요자원, 시설, 주요조망지점을 연결하여 순환형으로 배치
- 자연스러운 지형조건을 살리고, 다양한 시설 및 식재계획에 의해서 활용으로 흥미를 유발하여 지루하지 않도록 함
- 확포장보다는 도로 주변 수목이나 잡풀, 장애물을 제거하는 수준으로 정비

다. 재 료

- 바닥은 가능한 자연그대로의 휴포장을 이용
- 배수가 용이하지 않거나, 모래바람을 일으키는 등 부득이하게 포장할 경우는 미끄럽지 않은 투수콘, 쇠석, 자연석 자갈 등의 재료로 평탄하게 정비
- 숲이나 습지에 자연생태를 보전하고, 하부 식생 보전을 위해 목재 데크 접근로 설치
- 도로면에 일정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하고, 경사면에는 목재 계단을 설치
- 주변 지역에서 표면 배수된 빗물이 산책로로 흘러내려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며, 지형여건상 이러한 우려가 있는 곳은 표면 배수시설을 설치



〈그림 80〉 기존 휴포장을 활용하고 주변정비



〈그림 81〉 목재데크를 활용하여 조성

라. 식재

- 기존 수림대와 조화되어 자연스러움을 연출함으로써 편안하게 산책하면서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식재
- 인위적으로 식재를 할 경우에 해당되는 식재수종으로는 소나무, 진달래, 산철쭉 등이 대체로 어울리나, 지역특성과 생육환경을 고려하여 토종수종의 교목이나 관목류를 선택하여 식재
- 자연석 사이사이에 잔디, 꽃 잔디 등의 지피식물을 식재하여, 디딤돌 타입의 산책로 연출
- 사계절 아름답도록 계절별 꽃의 개화시기를 고려하여 식재



〈그림 82〉 자연석 디딤돌과 꽃잔디 식재



〈그림 83〉 휴포장과 주변의 초화류단지 식재

마. 부대시설

- 이용자의 위치와 산책로 코스안내를 위한 안내표지판을 설치
- 가로등 · 안내판시설 등의 부대시설은 장애인들도 이용과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주요지점 이외에 필요이상으로 많이 설치하지 않도록 유의

바. 기타 참고사항

- 야생화단지, 허브단지로 군식하거나, 포장패턴과 재료를 달리한 건강지압보도나 황토볼길 등의 테마 산책길은 이용자의 흥미 유발과 건강을 도모하여 이용률을 높이는데 기여
- 프로그램을 도입한 자연관찰로, 역사탐방로로 보다 적극적인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음
- 산책로 주변을 중심으로 식재화단 및 수목을 관리하고, 포장의 훼손을 점검함으로써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

Ⅰ 농어촌에서의 산책로

- “농어촌을 방문하는 도시민들의 활동은
(1) 산책이나 산보를 하면서 경관을 감상하고,
(2) 아이들의 체험이나 교육을 위한 농업, 자연, 전통체험 등을 하고
(3) 식사를 하고,
(4) 숙박을 하며,
(5) 돌아갈 때 무엇인가를 사 가지고 간다”고 단순화할 수 있음

【출처: 그린투어리즘과 주민참여(2002)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생활과학지 23(2), 90】

5) 테마로

- 산책로, 등산로를 포함하여 마을내부도로(안길), 농로 등을 활용하여, 자연 및 역사의 체험 활동을 위한 코스 개발
- 거리는 1~2km, 30분~2시간내외로 순환형 코스로 개발
- 기존 흙 포장을 사용하고, 계단설치 시 통나무, 자연석 등으로 자연스러움 연출

가. 배 치

① 자연관찰로

- 식생이 풍부한 기존 등산로나 숲길을 활용, 순환형 코스로 개발
- 높은 이용성이 잠재되어 있는 장소를 활용하며, 생태해설가가 참여하는 자연관찰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
- 관찰로 곳곳에 휴게시설과 전망대를 배치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 도모

② 역사탐방로

- 마을역사 및 유적을 순환하면서 탐방할 수 있는 코스로 개발
- 탐방로 주변 흥미로운 대상을 유효하게 연결하여 효율적인 탐방활동 도모
- 곳곳에 역사탐방자료가 수록된 안내판과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입구부분에 탐방객 안내소를 배치하여 이용편의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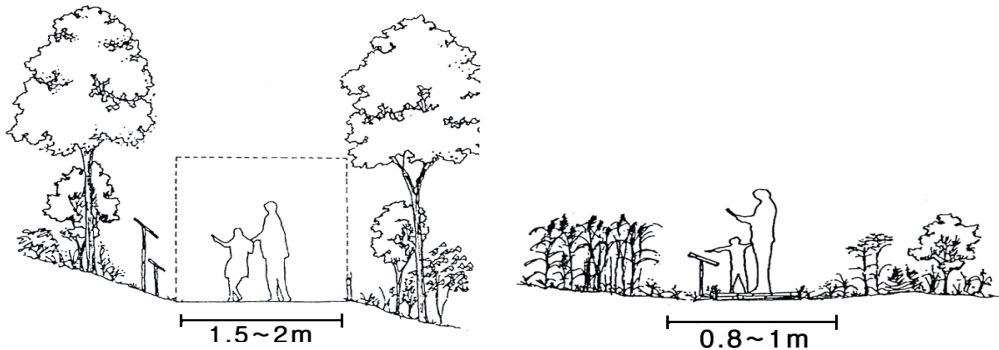
③ 건강지압로

- 진입도로변이나 산책로, 등산로 등의 보도 일부구간에 설치
- 건강효과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수록한 안내표지판 설치

나. 규모 및 형태

① 자연관찰로

- 거리는 1~2km, 30분~2시간 정도로 탐방함에 있어 지루함을 덜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곳곳에 자연관찰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 주 관찰로 적정 폭은 1.5m~2.0m, 소형 관찰로 적정 폭은 0.8~1.0



〈그림 84〉 주관찰로와 소형 관찰로



〈그림 85〉 숲속 자연관찰로



〈그림 86〉 습지 자연관찰로

② 역사탐방로

- 거리는 자연 관찰로와 마찬가지로 탐방 소요시간을 30분~2시간 정도로 계획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1시간을 넘지 않도록 계획하여 학습효과를 높임

③ 건강지압로

- 비 고정된 황토볼 및 자갈이나, 고정된 자갈 등 다양한 타입으로 포장하여 시각적 흥미와 재미를 유발

다. 재 료

- 기존 마사토, 강화마사토 등 흙 질감의 노면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난간은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목재로 조성
- 경사로나 계단은 자연석, 통나무로 제작하여 설치
- 건강지압로는 바닥 면에 고정되어 있는 지압보도나 이동이 가능한 황토볼 등으로 포장
- 안내 판은 목재로 제작하여 자연스러움 연출



〈그림 87〉 목재데크 계단



〈그림 88〉 자연석 돌계단

라. 식 재

- 대상지 주변에 자생하면서 마을테마와 부합하는 마을전통수종 및 상징수종을 식재
- 도로주변에 초화류와 수목을 식재하여 녹음을 조성

마. 부대시설

- 안내판, 휴게시설, 탐방안내소, 집합 및 교육장소 등 부대시설 설치

바. 기타 참고사항

- 탐방로 및 관찰로의 운영관리를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 노후되어 보완이 필요한 시설이나 도로의 포장상태 등은 정기적인 점검 실시
- 탐방로 및 관찰로에 자연 및 역사해설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자연해설가 양성교육기관

- 두밀리 자연학교(<http://www.sonamoo.or.kr/>)
 - 교육연수기간: 2박3일간(5월~9월,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정동산골마을) 솔방울학교, 학기제학교, 주말학교, 계절학교로 다양함
 - 참여가능인원: 제한 없음(인터넷 예약제)
 - 교육내용 및 특성: 자연으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우고 실천'하는 생활중심의 자연교육을 구현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교육목표
- 홀로세 생태학교(겨울방학)(<http://www.holoce.net>)
 - 교육연수기간: 여름방학, 겨울방학, 1박2일형, 당일형의 4가지 형태의 생태학교를 운영
 - 참여가능인원: 제한 없음(인터넷 예약제)
 - 교육내용 및 특성: 자연의 질서를 무시한 인간의 잘못임을 깨닫고 현재의 생태학적 위기를 알리며, 자연과 생명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교육

6) 등산로

- 기존 임도 및 등산로를 정비 및 개설하여 등산코스를 개발
- 경사로에 계단 설치 시 목재를 활용하여 자연스러움 연출
- 정상부 및 조망경관이 좋은 위치에 전망대 및 휴게시설 설치
- 자연관찰로, 역사탐방로 등의 테마로와 산림욕장 등과 연계 배치 가능

가. 배 치

- 기존 임도 및 등산로를 정비 및 개설하여 등산코스를 개발함으로써 산림 및 주변 자연환경의 피해를 줄이고, 마을 뒷산이나 인근의 산과 연결하여 재정비 또는 신규조성

나. 규모 및 형태

- 노선형식은 주요전망지점을 연결하여 순환형의 코스로 조성
- 등산로의 길이는 무제한으로 조성할 수 있으나, 시간적으로는 반나절 정도 소요되는 코스, 하루가 걸리는 코스 등으로 12시간이상을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어린이나 노약자가 가벼운 등산체험을 하는 경우에는 1~2시간 정도 소요되는 코스가 바람직하며, 자연관찰로나 역사탐방로 등 테마로와 연계하면 활성화에 도움
- 최소 폭은 1.0~1.5m 정도로 성인 2명이 동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유지 (류선무, 1997)
- 원칙적으로 현 지형에 맞추어 자연상태 그대로를 활용하되, 경사가 급한 곳에는 목재계단을 설치

다. 재 료

- 현 지형상태로 설치하되, 필요하다면 정지작업
-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친환경재료로 조성



〈그림 89〉 자연스러운 흙포장 등산로



〈그림 90〉 경사면의 목재형 계단

라. 식 재

- 기존 수림대를 활용하고, 인위적인 식재를 가급적 피하도록 함
- 편안하게 산행하면서 주변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녹음을 제공
- 주변의 잔가지와 장애물 제거

마. 부대시설

- 부대시설로 의자를 배치하여 휴게공간 조성
- 등산로 코스 안내판, 방향표지판, 자연해설안내판 및 식물표찰 등을 설치하여 등산로 이용자들에게 정보제공

바. 기타 참고사항

- 강우로 인한 지형침식, 불필요한 등산로의 셋길 개설은 자연을 훼손시키고, 결과적으로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근본요인이 됨
- 따라서, 무분별하게 개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등산로를 정비하여 이용
- 이용객에 의한 토양답압을 피할 수 있는 포장 선정
- 주변식생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등산로 코스 조성

7) 가로등

-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조명시설은 자제
- 마을 고유의 디자인개념으로 계획하고, 가급적 목재, 석재 등 자연재료로 제작

가. 배 치

- 가로등은 빛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많으므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조명 시설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규모 및 형태

- 지역별 가로등의 조도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Lx 이상으로 설치함(영동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 가로등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때에는 지상 4m~5m, 가로등 전용주에 설치할 때는 지상 4m~5m, 건물 및 기타 구조물에 설치할 때는 지상 3m~5m 높이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영동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그림 91〉 꽃으로 장식한 가로등



〈그림 92〉 장승형태의 정원등

다. 재 료

- 기본적으로 내구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경제성 등이 있는 재료를 사용
- 일반적으로 가로등은 알루미늄, 스텐레스, 철재 등을 사용하나, 가능한 농어촌의 환경과 조화되는 목재, 석재 등의 같은 자연재료로 계획
- 해안지역과 같이 주변 환경이 특수한 지역은 수분, 염분, 바람 등으로부터 풍화되지 않는 재료로 계획

라. 식 재

- 가로등 하단부위에 초화류, 관목 등을 식재하고, 기둥부분은 담쟁이 등의 넝쿨식물을 지피식재 함으로써 농어촌 경관과 조화되게 연출

마. 부대시설

- 농어촌마을의 가로등은 일반적으로 기둥형 또는 전주부착형으로 많이 설치하고 있으며, 기둥형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마을안내표지판 등과 함께 통합하여 설치함으로써 도로시설물의 수량을 최소화할 수 있음

바. 기타 참고사항

- 각 자치단체별로 가로등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가로등 설치와 관련된 법제를 검토하여 조성

8) 경계석 · 블라드

- 재료는 친환경적인 목재와 자연석 등을 사용하여 농어촌경관과 조화를 고려
- 경계기능을 유지하면서, 초화류와 함께 식재하여 경계부의 장식적인 효과 유도

가. 배 치

- 차도경계석은 차도와 보도사이에 설치하여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작은 옹벽의 역할을 담당
- 녹지 경계석은 녹지공간의 보호와 녹지 공간 내에 적정 폭의 원로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

나. 규모 및 형태

- 경계석은 포장재와 색채 및 질감이 조화되어야 하고, 미끄럼 방지도 고려하여야 함
- 보행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차도 면에서 최소 10cm 높이로 경계석이 돌출되어야 함 (한국조경학회, 1999)
-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위험이 큰 곳에는 경계석의 높이를 다소 높게 설치하여 차량이 경계석을 통과할 때에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함

다. 재 료

- 경계석은 콘크리트나 화강암, 벽돌 등을 주로 사용하는 편이나, 농어촌마을의 지역 특성상 자연미를 강조하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차도와 보도사이의 경계석은 차량충돌 시, 충격에 잘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화강암, 현무암, 반암 등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되, 표면의 색채나 결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도록 선별하여 사용
- 화단이나 원로 등의 녹지경계석은 주변 분위기에 어울릴 수 있는 벽돌, 자연석, 목재 등으로 자연스러운 곡선부이 형성되도록 계획
- 자연석 경계석은 지름이 20~30cm 정도의 호박돌을 주로 사용하며, 지반이 단단하지 않은 곳에는 콘크리트로 기초를 다진 후 설치
- 목재 경계석은 자연친화적이며, 가공과 취급이 용이하여 어떤 장소의 경계부에도 쉽게 설치할 수 있으나, 내구성에서 석재보다 떨어지는 단점이 있음



〈그림 93〉 자연석을 이용한 경계석



〈그림 94〉 목재를 이용한 녹지경계목

라. 식재

- 경계석을 자연석, 구멍이 뚫린 벽돌 또는 목재를 이용할 경우, 잔디나 꽃 잔디 등을 식재하거나, 낮은 관목류를 경계부에 식재
- 경계석 주변은 지속적인 잡초나 수형관리가 필요

마. 부대시설

- 차도와 보도사이의 일부구간에 차량이 침범하지 않도록 볼라드를 설치하여 경계를 강조하고, 장식효과를 줄 수 있으며, 벤치로도 활용

바. 기타 참고사항

- 장애우나 노인의 보행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일부 구간 경계석이 기본 높이보다 낮추어 시공되어야 함

9) 담장

- 다양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구조물 기능을 수행하고, 실용적이어야 함
- 무엇보다도 농어촌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심미성있는 계획이 요구됨
- 가능한 농어촌다움을 유지하고, 그 지역의 자연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 배치

- 주변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격리된 공간의 조성, 외부로부터의 소음차단, 시선의 차폐, 통행 유도 또는 통제하기 위해서 적절한 위치와 높이로 조성

나. 규모 및 형태

- 주변 공간과의 교류, 개방과 폐쇄 등 다양한 기능을 위해 높이를 조절하여 담장을 설치(한국조경학회,1999)

〈표 20〉 높이에 따른 담장효과

높이	효과
2.0m이상	• 침입방지, 완전차폐 및 적극적인 프라이버시 확보
0.6m~1.0m	• 물리적 출입통제, 조망확보
0.4m	• 경계 표시, 단순한 경계, 경관적 요소

- 반투시형은 공간을 격리시키면서도 흥미 있는 공간을 줄 수 있음. 즉, 벽이나 담장에 개구부를 두어 경관의 일부만을 보이게 하면 보행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경관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음
- 주거공간과 주요시설 주변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장식적으로 사용이 가능



〈그림 95〉 반투시형 전통담장



〈그림 96〉 장식용+반투시형 목재담장

다. 재 료

- 기존 담장이나 주위 특성에 맞고, 그 지역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 선택
- 습기, 결빙, 서리 등의 지역 기후조건에 맞는 재료를 선택
- 공간의 분리를 목적으로 한 생 울타리의 경우, 지엽이 치밀한 상록 수형이 적절함

〈표 21〉 담장의 재료별 기능 및 특징

(○: 좋음, ×: 좋지 않음, △: 보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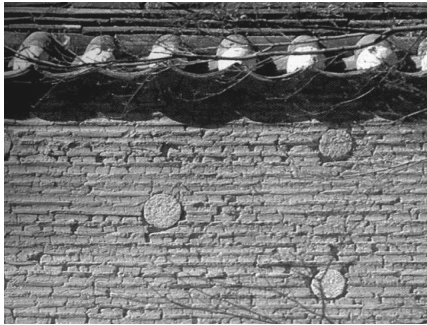
재료	기능					내구성	농촌성
	통제성	쾌적성	방음성	방풍성	영역성		
생 울타리	○	○	×	○	○	△	○
목재(대나무, 소나무각재, 통나무 등)	○	○	○	○	○	×	△
자연석(막돌, 강돌, 산석 등)	○	○	○	○	○	△	○
흙담(흙+와편, 흙+자연석 등)	○	△	×	○	○	△	○



〈그림 97〉 목재(대나무)



〈그림 98〉 자연석(강돌)



〈그림 99〉 흙담(흙+와편)



〈그림 100〉 흙담(흙+자연석)

라. 식재

- 경계부는 흙이나 돌담장 대신에 생 울타리를 조성할 수 있음
- 한쪽 면이 막힌 담장의 경우에는 냉쿨식물을 식재하여 자연스러움을 연출하고, 벽면의 온도를 낮춰 미기후조절에도 효과적임

마. 부대시설

- 기존 벽이나 담장을 장식벽, 조형벽으로 정비하여 심미적 기능을 강화하고, 벤치나 테이블 등 휴게시설과 함께 배치하여 활용이 가능

바. 기타 참고사항

- 기존 콘크리트 및 시멘트 블록 담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담쟁이 등과 같은 냉쿨식물 식재, 수목 등으로 차폐
- 마을 고유의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는 슈퍼그래픽(벽 아트) 기법을 활용한 장식이 가능함
- 슈퍼그래픽은 전통자원 및 자연자원 등을 모티브로 오래된 벽이나, 옹벽 등에 조성



〈그림 101〉 슈퍼그래픽 기법을 이용한 담장 정비사례

3. 건축경관

3.1 건축경관 기본방향

자연스카이라인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과 인공 스카이라인이 서로 조화되도록 건축물 및 시설물의 고도를 계획한다.

자연스카이라인에서 중점 보전대상을 추출하고, 개발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보전한다.

- 중점보전대상인 자연스카이라인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규모와 위치를 적정하게 유도할 수 있다.
- 경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옥외광고물 및 색채, 야간조명, 식재 등에 관한 계획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생태적 건축기법 등을 활용하여 일반적인 도시형 건물과 차별되도록 하고, 주변환경과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토지이용계획과 연계되도록 스카이라인, 건축의 외장색채, 재질, 벽면선 후퇴 등 기본적인 매뉴얼을 제시한다.

주택에 의하여 형성되는 스카이라인이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유도한다.

상업시설은 지역성을 살린 건축방식을 적용하여 다른 건축물과 조화되도록 하고, 일반 주택과 구분될 수 있는 랜드마크적 요소를 도입한다.

폐가와 폐교 등과 같이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있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 기존의 랜드마크를 강화하는 동시에, 조망 점 주변의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 높이를 규제하고, 그 형태, 규모의 제한을 통하여 아름다운 조망을 유도한다.
- 주거지역이 원경에서 이질적인 요소로 판단될 경우, 적정한 수립대를 조성하여 차폐할 수 있다.
- 건축물간의 조화와 시민의 공유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송전탑 등의 혐오시설 및 경관위해 시설은 지역경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녹화를 통한 차폐에 의해서 지역경관을 개선할 수 있다.

3.2 건축경관 매뉴얼

〈표 22〉 건축경관 매뉴얼

구 분	매 뉴 얼
마을회관 · 경로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중심부에 위치하여 접근성을 확보하고, 연계시설물과 인접하여 효율적인 시설유지 · 관리 • 경로당을 독립적으로 배치하기보다는 마을회관과 함께 이용하는 것을 권장 • 내 · 외부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설 이용에 있어 활성화를 도모
건강증진실 · 찜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공공시설 일부공간을 활용하거나 따로 조성 • 찜질방은 전통 구들방 타입이나 숯가마 타입으로 조성 • 찜질이나 목욕탕은 자연재료인 황토를 사용하여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방문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마을회관과 같은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활용하거나, 중심시설이 위치한 공간에 함께 조성 • 필요로 하는 공간과 적절한 도입시설을 선택적으로 배치 • 실내교육, 세미나, 회의, 안내홍보센터, 식당, 공동화장실 등의 기능부터 농특산물 판매장, 농어촌체험시설등과 연계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 시설로 조성
농특산물판매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과 인접한 도로변이나 마을중심부에 위치한 마을회관, 방문자센터의 일부공간을 할애하여 조성할 수 있음 • 상설로 조성할 경우와 간이 형태로 조성할 경우로 구분하여 적정규모로 조성
전시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박물관의 동선은 주출입구에서부터 전체공간을 순환하면서 관람하거나, 입구와 출구를 달리하여 통과하면서 관람하는 동선계획이 있음 • 기본적으로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과 연계하며, 홍보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성

3.3 부문별 계획 및 예시

1) 마을회관 · 경로당




- 마을중심부에 위치하여 접근성을 확보하고, 연계시설물과 인접하여 효율적으로 시설 유지관리 도모
- 경로당을 독립적으로 배치하기보다는 마을회관과 함께 이용하는 것을 권장
- 내·외부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설 이용에 있어 활성화를 도모

가. 배 치

마을 중심부에 위치하여 접근성을 확보하고, 연계시설과의 효율적인 시설이용 및 관리에 유의하도록 배치

- 마을회관은 자연입지적 조건에 따라 임의적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마을중심에 위치하고, 생활편익시설이나 농업관련시설 등과 연계하여 함께 배치 하는 경우가 많음(조순재 외, 1996)

〈표 23〉 마을회관의 배치유형

배치A형	배치B형	배치C형
		
<p>마을회관, 생활편익시설, 농업관련시설이 집중배치된 형태</p>	<p>마을회관과 생활편익시설은 마을중심공간에 농업관련시설은 경작지 가까이에 배치된 형태</p>	<p>마을주변의 자연입지적 조건에 따라 임의로 배치된 형태</p>

- 마을회관은 가급적 마을 중심공간에 배치하되 주거지와 인접하여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 이용률 증대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함
-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생활편익시설과 농작업 공동시설은 각각의 시설과 서로 연계 공간을 확보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이용 및 관리에 기여하도록 함

경로당을 독립적으로 배치하는 것보다는 마을회관과 함께 조성하여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인층과의 유대관계를 확보

- 경로당은 농어촌노인의 전용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나, 마을회관과 함께 위치하도록 하거나, 마을회관 일부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노인들과의 유대관계를 확보
- 오락휴식시설, 회의실, 농산물창고, 체력단련시설, 정보화시설, 공동숙박시설 등 주민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조성 가능

나. 규모 및 형태

마을의 중심 공공장소로서 마을 전체 이미지를 나타내는 랜드마크적 형태로 계획

□ 마을규모와 주민들의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기능과 규모 결정

- 공간확보로 인한 불필요한 토지이용을 줄이고, 최소 20호 마을에서 도입이 가능하며 최대 50호 이상의 마을에서는 필수적으로 배치(조순재 외, 1996)

□ 단층형태의 건물에서 필요에 따라 증축을 유도하되, 부지가 협소하고 필요공간이 많을 경우에는 복층형태의 건물로 조성

- 협소한 부지에 마을회관을 신축한 경우, 평상시에는 여러 개의 방으로 사용하고, 회의 및 모임 시에는 넓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탈착이 용이한 미닫이문을 설치
- 천정고를 높게 확보하여 공간을 넓어 보이도록 조성
- 부득이하게 복층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한 경우에는 건물높이가 주변 건물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되므로, 건물형태와 색채가 주변의 마을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그림 102〉 천정고를 높여 넓어 보이는 단층형태의 마을회관




〈그림 103〉 기와지붕형태의 마을회관

□ 내·외부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되, 건물 내외장은 주변경관과 조화를 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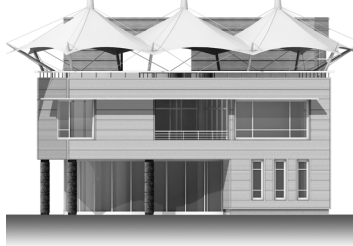
- 황토방 형태의 온돌식 바닥 구조로 하고, 목재 문을 설치하여 따뜻하고 온화한 분위기로 조성함을 권장
- 내부공간은 모임공간, 휴식, 취사시설, 내부화장실 등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로 조성하고, 기본적으로 TV, 냉장고, 수납공간 및 옷장 등 내부집기시설을 구비
- 건물 외부는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 마감하고, 특히 지붕은 슬라브형태보다 모임 지붕이나 맞배지붕 등의 경사지붕으로 조성하여 보다 친근하고 정감 있는 건물 형태를 유지하도록 함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고창선동권역 마을회관

■ 계 획

- 마을회관은 옥내공간 뿐만 아니라 옥외공간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계획
- 옥내에는 간단한 운동시설이나 찜질방 등 농어촌인구의 고령화를 고려하여 시설계획 수립
- 특히 농한기의 마을회관 이용을 증대시키고, 이로 인한 마을내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

- 외부공간은 벤치, 파고라, 정자, 공동기구창고, 외부공동화장실 등을 배치하고, 마을 심터 및 마을마당 형태과도 연계가 가능하도록 조성



<그림 104> 경사지붕의 설치



<그림 105> 통나무를 활용한 외벽

다. 재 료

- 형태와 목적에 따라 재료사용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주변마을 경관과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유의
- 내부는 친환경적이면서 옛 시골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황토나 전통한지로 마감
- 외부는 가능한 통나무형태의 목재나 황토, 기와, 짚 등 자연재료가 적합
- 무엇보다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단열효과가 우수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재료를 선정함으로써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하는 것이 중요

라. 식 재

- 마당의 경계에는 초화류를 식재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이미지를 심어주는데 기여

마. 부대시설

- 난방시스템은 심야전기, 태양열, 기름 및 가스보일러 등 다양한 설비가 가능함
- 특히, 심야전기나 태양열 난방시스템은 유지비나 편의성에 있어서 기름, 가스보일러에 비해 월등히 좋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초기투자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음
- 외부공간의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 마을공동쉼터 기능인 휴게시설, 놀이시설 및 운동시설 등을 도입해 주민복지와 편의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으며, 이하 세부 계획의 내용은 『마을공동쉼터』를 참고하여 조성

바. 기타 참고사항

-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인근지역주민 및 방문객과의 교류를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부가적으로 도입
- 주민 건강증진 및 건물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증진실, 찜질방 및 목욕탕 등을 함께 배치할 수 있음
- 난방시설, 화장실, 휴게공간들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부 방문객을 위한 민박형태의 숙박시설로 지원이 가능
- 노인층의 여가활용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과 환경보전실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음
- 이들 시설은 이용객 수와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시설규모, 도입여부를 결정

□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신·증축사업은 주민복지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대부분 지방재정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

- 마을회관 및 경로당은 각종 정부부처 사업의 신·증축 및 리모델링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로 지정되어 있음
- 경로당의 경우, 2005년 현재 노인복지시설로써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들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개소/월, 44천원)와 난방비(년/250천원)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

“마을회관민박”이라 명명하고 외부 방문객들의 숙박시설을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기존 마을회관의 성격과 기능이 변화되고 있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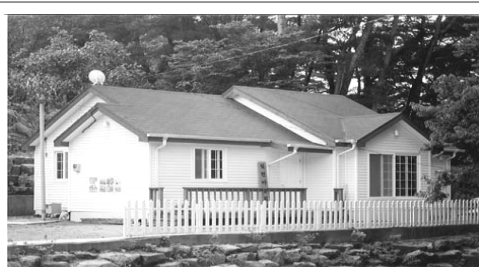
- 기초공사 처리, 지붕 및 벽체의 골조품질, 외벽의 단열 및 마감재처리, 지붕과 천장 단열, 단열재 사용, 천장과 내부벽체 방음처리, 방문 및 현관문 처리, 정화조 설치, 오·하수배관 및 맨홀설치 위치선정, 상수도배관재 선택, 난방종류 선택(심야전기, 태양열온수기, 보일러 등), 난방재료 선택, 전기, 전화, TV 및 각종 가구 설치 등 체크

■ 마을회관 개보수 및 정비사례

- 농어촌경관과 어울리는 재료를 활용하는 동시에, 주민들을 위한 황토방 및 찜질방을 외부에 설치하거나, 펜션형으로 내외부의 개보수 및 개축을 실시하고 있음
- 강원도 화천군 용호리의 마을회관은 전통민가의 이미지를 살려 건조하였으나, 각각의 기초재료는 현대공법으로 건조하고, 외벽을 목재와 황토로 미관처리 하였음.
- 특히 문과 창은 2중문으로 단열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전통무늬창살형태로 장식하고 유리를 덧씌워 설치하고, 뒷마루를 두어 쉴 수 있는 공간을 뒀
- 전북 무주군 두길리의 마을회관은 산촌마을과 리조트, 스키장 등의 레포츠산업과 관련된 지역 이미지와 연계하여 펜션형으로 축조하였으며, 내부도 작은방과 큰방의 2개로 구분하여 민박을 운영하고 있음



〈그림 106〉 전통형 마을회관(강원 화천 용호리)



〈그림 107〉 펜션형 마을회관(전북 무주 두길리)

【출처: 화천군청, 무주군청 홈페이지】

2) 건강증진실 · 찜질방

-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공공시설 일부공간을 활용하거나 따로 조성
- 찜질방은 전통 구들방 타입이나 숯가마 타입으로 조성
- 찜질방이나 목욕탕은 일반적으로 자연재료인 황토를 사용하여 조성

가. 배 치

-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의 일부공간을 활용하거나, 따로 조성

나. 규모 및 형태

- 찜질방은 전통 구들방 형태나 숯가마 타입으로 조성 가능
- 전통 황토방 형태의 찜질방은 소나무, 참나무 등의 목재를 이용하여 방을 달구고, 발생하는 수증기와 연기가 나가도록 굴뚝을 설치
- 참숯가마 찜질방은 참나무를 숯으로 만들면서 발생하는 뜨거운 열기를 이용한 설비
- 지속적으로 난방을 유지해야하므로, 화재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



〈그림 108〉 황토찜질방의 외부



〈그림 109〉 황토찜질방의 내부

다. 재 료

- 찜질방과 목욕탕은 일반적으로 자연재료를 이용하고, 바닥은 황토를 깔되 심야 전기나 보일러 등을 이용하면 관리가 용이함

라. 식 재

-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일반적인 식재와 동일

마. 부대시설

- 화장실, 목욕탕이나 간이 샤워실을 두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바. 기타 참고사항

- 쭉, 오미자 등 마을지역특산 약초 등을 이용한 자연향기체험, 다도체험 등의 시설로 활용
- 사전예약제에 의한 숙박을 겸한 찜질방으로 운영하여 이용 활성화 도모

3) 방문자센터

- 기존의 마을회관과 같은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활용하거나, 중심시설이 위치한 공간에 함께 조성
- 필요로 하는 공간과 도입시설을 선택적으로 배치
- 실내교육, 세미나, 회의, 안내홍보센터, 식당, 공동화장실 등의 기능부터, 농특산물 판매장, 농어촌 체험시설등과 연계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 시설로 조성

가. 배 치

- 기존의 마을회관을 정비하여 활용하거나, 새롭게 조성하는 공공시설로써 마을의 중심공간에 위치하도록 조성

나. 규모 및 형태

- 필요로 하는 공간과 도입시설을 선택적으로 배치하고, 그에 따라 규모를 결정
- 주요 기능으로는 실내교육, 세미나, 회의, 안내홍보센터, 식당, 공동화장실, 기타 관련기구창고 등의 공간으로 구성
- 안내홍보센터는 홀(Hall)형식의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잠깐 휴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전화, 컴퓨터, 팩스 등을 비치하여 안내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공간 계획
- 홀(hall) 내부에는 마을사진, 체험관련 사진, 마을의 주요자원 등을 소개하는 게시판을 배치함으로써 마을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함
- 회의실은 마을회관을 대신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외부에서 세미나와 회의개 최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임대할 수 있음
- 식당은 마을에서 생산되는 제철 농산물로 요리한 한 계절 한 식단 정도의 음식을 제공



〈그림 110〉 안내홍보센터(일본)



〈그림 111〉 농특산물의 판매(일본)

다. 재 료

- 마을회관 · 경로당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므로 관련부문을 참조

라. 식 재

- 마을회관 · 경로당과 동일한 식재패턴으로 조성되므로 관련부문을 참조

마. 부대시설

- 마을식당을 운영할 경우에는 간이 농특산물 판매센터 등을 함께 배치하여, 마을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방문객들이 사갈 수 있도록 조성
- 외부활동은 멀리 이동하기보다는 방문자센터의 외부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이용객들의 만족을 증진
- 인접한 경작지와 외부공간에서 공예체험, 자연체험, 음식체험, 농산물가공체험 등의 다양한 도농교류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함께 활용



〈그림 112〉 방문자센터의 외부공간을 활용한 음식만들기(떡매치기) 체험



〈그림 113〉 메밀꽃밭을 조성한 농경지와 연계한 자연체험

바. 기타 참고사항

- 마을공동체와 각종 농어촌관광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1인 또는 적절한 수의 시설관리인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담당케 하는 것이 효율적임
- 안내센터 담당자는 고객들의 체험문의, 신청, 예약을 받아 참여농가와 연계해주는 역할을 담당
- 식당이나 기타부대시설의 관리는 마을전체 여러 조직이 업무분장을 통해 운영관리의 효율과 주민 참여율을 높이는데 기여

방문자센터의 계획사례

- 자연문화촌(<http://www.m-kajika.jp>)
- 위치 : 일본 교토부 키타쿠와다군 미야마초
- 조성배경 : 1988년부터 도시와 농촌교류시설을 미야마초에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며, 지역내 대표 종합 방문자센터로 활용
- 각종 계절별 체험프로그램운영, 숙박동, 목욕탕, 레스토랑, 숙박연수센터 야마비코당(堂), 카야부키민가, 창작체험실습관, 문화홀, 캠프장, 오토캠프장, 다목적운동장, 테니스코트, 야구장, 장미원, 관광사과과수원 등의 다양한 시설이 종합적으로 배치



〈그림 114〉 자연문화촌(일본 교토 미야마초)

【출처 : 일본 미야마초】

4) 농특산품판매장

- 마을과 인접한 도로변이나 마을중심부에 위치한 마을회관, 방문자센터의 일부 공간을 할애해 조성할 수 있음
- 상설로 조성할 경우와 간이 형태로 조성할 경우로 구분하여 적정규모로 조성

가. 배 치

- 마을과 인접한 도로변, 마을중심부에 위치한 마을회관, 방문자센터 내·외부 등에 조성
- 도로변이나 주차장시설을 일시적으로 활용한 간이형태 배치도 가능

나. 규모 및 형태

- 상설로 조성할 경우에는 작은 규모에서부터 지역시장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큰 규모의 판매장 등으로 다양하게 조성
- 마을특성과 판매 특산물의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규모로 조성
- 간이형태의 농특산물 판매장은 가능한 작은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 좋으며, 건조되거나 1~2차 가공된 농특산물을 배치함으로써 냉장보관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함



〈그림 115〉 상설형식의 농특산물 판매장
(일본 아치요쵸)



〈그림 116〉 간이 농특산물 판매장
(일본 나라현)

다. 재 료

- 마을회관 · 경로당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므로 관련부문을 참조

라. 식 재

- 마을회관 · 경로당과 동일한 식재패턴으로 조성되므로 관련부문을 참조

마. 부대시설

- 상설일 경우에는 자전거 및 자동차 주차시설과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함께 배치

바. 기타 참고사항

- 마을 농특산물 판매소를 운영 · 관리는 마을주민 가운데 희망자에게 전담 관리하도록 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책임감을 부여
- 마을 가공공장에서 생산되는 가공 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마을방문객들에게 직접 시음, 시식할 수 있게 하여 마을상품을 홍보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 특히, 마을이나 지역을 상징하는 로고나 캐릭터, 그리고 패키지를 개발하여 상품에 대한 신뢰와 판매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농특산물은 항상 신선하도록 목재 및 플라스틱, 종이 등의 규격화된 상자를 이용해 진열하고, 판매자 또는 농산물 생산자의 연락처와 주소 등을 기입한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믿고 사갈 수 있는 환경 조성
- 더불어 친환경이나 유기농 농특산품임을 인증할 수 있는 지역단위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농특산물의 신뢰성을 확보

Ⅱ 활성화된 농특산물 판매장의 사례

- 일본 나라현의 아스카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
 - 명칭 : 꿈의 판매소
 - 위치 : 일본 나라현 키타즈 아스카역 앞
 - 각종 농산물과 궤화 등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판매
 - 소비자들 또한 타지역이나 대형쇼핑센터보다 저렴한 이곳의 농특산물을 구입하는데 만족하고 있음



〈그림 117〉 지역 방문객과 생산자가 이용한 판매소



〈그림 118〉 깔끔하게 정리된 농특산물의 진열



〈그림 119〉 자율적인 판매가격의 부착

【출처 : 일본 나라현】

5) 전시박물관

- 전시박물관의 동선은 주출입구에서부터 전체공간을 순환하면서 관람하거나, 입구와 출구를 달리하여 통과하면서 관람하는 동선계획이 있음
- 기본적으로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과 연계하며, 홍보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조성

가. 배치

- 마을의 폐 가옥을 정비하거나 공공부지의 자투리공간에 배치하고, 방문자센터 등 마을관광관련 중심시설과 인접하여 상호 시설이 연계되도록 배치

나. 규모 및 형태

- 기본적으로 서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고, 전시장의 출구부분에는 간이 농특산물 판매대를 배치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증진 유도
- 박물관의 전시물은 짚신, 향아리, 가방 등 다양한 짚공예품, 각종 생활도구와 공예품, 마을만의 고유 먹거리 모형, 향기체험, 천연염색 체험 등 마을별로 테마화하여 전시
- 조명은 스포트 라이트조명을 사용하여 전시품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하며, 전시품이 교체될 경우 조명기구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도록 덕트레일로 설치



〈그림 120〉 공예품 전시박물관의 외형
(경북 울진 온정리)



〈그림 121〉 내부벽면에 배치한
각종 공예품(일 본)

다. 재료

- 방문객센터, 마을공동숙박 등의 재료와 동일하므로 관련부문 참고

라. 식 재

- 방문객센터, 마을공동숙박 등의 재료와 동일하므로 관련부문 참고

마. 부대시설

- 체험활동과 연계할 경우에는 화장실과 간단히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 등을 배치

바. 기타 참고사항

- 체험프로그램운동을 함께 운영하기 위하여 구들방형태로 조성하거나, 탁자와 의자를 배치한 작업실로 함께 조성이 가능



〈그림 122〉 일반 방형태의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경북 울진 온정리)



〈그림 123〉 탁자와 의자를 배치한 체험작업시설
(일본 미야마초)

4. 외부공간경관

4.1 기본방향

농어촌마을을 구성하는 각종 외부공간 경관요소에 대한 세부 경관계획을 수립 한다.
마을공동쉼터, 마을마당 및 담장 등 농어촌마을의 외부공간 구성요소별 보전·정비 방안을 제시한다.

구성요소별 규모, 형태, 재질 및 색채 등의 계획안을 제시할 수 있다.

4.2 외부공간경관 매뉴얼

〈표 24〉 외부공간경관 매뉴얼

구분	매뉴얼
마을 공동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시설이나 마을녹지주변에 위치한 마을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조성 • 마을별 특성과 주민이 선호하는 여가활동에 맞는 적정규모와 도입시설 결정 • 복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공간의 다양한 배치를 유도하고, 각각의 공간별로 도입될 시설은 연령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
마을공동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진입로주변의 자투리공간을 활용하고, 마을마당, 농작물건조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10대당 40~50㎡ 정도의 공간이 필요 • 포장은 친환경적인 재료인 잔디블럭이나 투수성과 자연미를 강조하는 재료사용을 원칙으로 함
버스정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의 바깥길(간선도로) 또는 어귀길(진입도로) 등에 위치하여,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 지역성을 대표하고 마을 고유 특성을 반영하여 특색있는 테마시설로 조성
공동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별로 이용정원을 예상하여 가능한 남녀분류형태의 쾌적한 화장실을 조성하고, 필요한 내부시설을 갖추도록 함 • 물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으면서, 분뇨가 자연 발효되어 유기농산물 재배 시에 거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한 친환경화장실로 조성
정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중심부나 마을공동쉼터가 포함되어 있는 정자가 대부분 • 정자의 형태로는 사각정, 육각정, 팔각정, 혼합형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마을특성에 맞도록 조성 • 식재가 외부 경관 조망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
파 고 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과 연계하여 그늘을 조성하거나, 정원내의 원로나 자투리 공간 등의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설치 • 목재로 만든 파고라 위에 등나무, 능소화, 으름덩굴, 장미, 철, 조롱박, 수세미, 나팔꽃 등의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여 그늘을 제공
벤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대화, 휴식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휴게시설로서 등의자와 평의자의 형태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음 • 인간에게 알맞은 규격으로 설치하여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함 • 많은 수량의 벤치를 설치하여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
야외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외탁자는 저습지, 먼지가 일어나기 쉬운 곳은 피하고 붕괴 및 기타 위험요소가 없는 장소에 배치 • 탁자와 의자 사이는 간격을 적절히 띄워서 몸이 들어가기 쉽도록 하고, 앉았을 때 발을 편안히 놓을 수 있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요구됨

4.3 부문별 계획 및 예시

1) 마을공동쉼터 · 마을마당

- 마을공동시설이나 마을녹지주변에 위치한 마을공공 부지를 활용하여 조성
- 마을별 특성과 주민이 선호하는 여가활동에 맞는 적정규모와 도입시설 결정
- 복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공간의 다양한 배치를 유도하고, 각각의 공간별로 도입될 시설은 연령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

가. 배 치

마을공동시설이나 마을녹지주변에 위치한 마을의 공공 부지를 활용하여 마을의 중심 커뮤니티공간이면서 상징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

- 가능한 마을회관, 유치원, 노인정 등 공동시설에 인접하여 조성하거나, 전통적으로 마을중심지 역할을 해온 정자나무, 마을 숲 등에 확보된 공지를 활용하여 녹음을 제공
- 가능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주민들의 이용률과 커뮤니티를 높일 수 있도록 함

나. 규모 및 형태

마을별 특성과 주민이 선호하는 여가활동에 맞는 적정규모와 도입시설 결정
(이춘석 외, 1997)

- 마을별로 중심공간역할을 수행한 정자나무나 마을 숲이 있는 공간의 특성에 따라 도입시설유형, 시설규모, 식재의 보완유무사항 등을 정하도록 함
- 하나의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 활동 욕구를 충족하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민이 주로 선호하는 여가활동에는 각종 친목교류, 휴식을 위한 휴게공간, 간단한 체력단련시설이 도입되는 운동공간,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 기타 부대시설공간 등이 있으며, 각각의 마을주민의 여가활동 및 패턴을 분석하여 필요한 공간을 구성하고 시설도입을 선정

복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배치를 유도하고, 공간별로 도입될 시설은 연령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

- 마을별로 부지형태가 다양하나, 장방형과 정방형으로 가정하고 이에 따른 공간구성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농림부, 1995)
- 전체공간을 각각의 기능에 맞도록 구분하고, 공간배치는 좌우, 상하로 변경하여 구성할 수 있음
- 각각의 공간을 이용하면서 상호 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포장재를 달리하거나, 낮은 관목류를 식재하여 경계부분을 강조

〈표 25〉 규모와 부지형태에 따른 마을공동쉼터 공간구성 사례

구분		도입가능 시설물			
규모	부지 형태	놀이공간	운동공간	휴게공간	복합형
20호 규모	정방형	놀이 휴게	운동 휴게	휴게	휴게 놀이
	장방형	놀이 휴게	운동 휴게	휴게	휴게 놀이
50호 및 100호 규모	정방형	운동 휴게	놀이 휴게	운동 휴게	휴게 놀이
	장방형	운동 놀이 휴게			

- 일부공간은 각종 마을행사와 농번기에 농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도입을 하기보다는 넓은 공간의 마당형태로 조성 가능



〈그림 124〉 정자 목 아래 휴게공간의 조성



〈그림 125〉 전통놀이 체험을 위한 마을마당을 배치한 마을공동쉼터

- 일반적으로 각각의 공간 즉, 놀이공간, 운동공간, 휴게공간, 부대시설공간에 도입되는 시설들은 다음과 같으며,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을 선정하여 배치하도록 함 (농림부, 1995)

〈표 26〉 연령에 따른 마을공동센터의 공간별 도입가능 시설물

구분	도입가능 시설물			
	유아/어린이	청소년	장년	노년
놀이공간	유아조합놀이대, 시이소오, 조합놀이시설, 흔들다리, 경사판오르기, 회전무대	회전자전거, 러닝로울러, 민속그네	민속널뛰기	웃놀이
운동공간	-	농구대, 네트포스트, 철봉, 링메달리기, 수평레더, 평행봉, 어긋나기수평대, 균형대, 널쿨넘기, 타고넘기, 나무타기, 뛰어내리기	팔굽혀펴기, 다리굽히기, 윗몸일으키기, 몸체말아올리기, 리울리기	게이트볼장
휴게공간	정자, 파고라, 평상, 벤치			
부대시설공간	음수대, 휴지통, 가로등			

다. 재 료

- 도입되는 시설물의 소재는 목재와 같은 자연적인 소재를 활용하며, 방부처리된 것을 사용토록 하여 내구성을 고려함
- 기존의 정자나무나 마을 숲의 수종을 이용하고, 공간적으로 수세가 약화되고 사라진 곳은 지역특성에 맞는 교목을 선정하여 식재

라. 식 재

- 각 공간을 구분하고, 녹음제공을 위해 교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고, 특히 공동화장실과 연계된 곳은 다른 공간과 분리될 수 있도록 차폐식재를 하도록 함

마. 부대시설

- 음수대, 휴지통 및 가로등 등 편익시설을 배치하되, 음수대는 전통형태의 물확으로 조성하고, 휴지통과 가로등은 가능한 전체 시설과 동일한 재질로 구성하여 설치

바. 기타 참고사항

- 비교적 규모가 넓은 경우에는 마을마당의 기능을 부각시키고자, 야외 활동을 위하여 잔디를 식재하거나, 각종 레크레이션 및 운동시설을 포함하는 다목적운동장 등으로 겸용이 가능
- 층계형태의 야외공연장을 배치하여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그림 126〉 잔디마당형태의 야외공간
(충남 홍성 문당리)



〈그림 127〉 야외공연장

2) 마을공동 주차장

- 마을진입로주변의 자투리공간을 활용하고, 마을마당, 농작물건조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10대당 40~50㎡ 정도의 공간이 필요
- 포장은 친환경적인 재료인 잔디블럭이나 투수성과 자연미를 강조하는 재료를 권장

가. 배 치

- 오픈스페이스 공간으로 평상시에는 운동 및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마을마당, 농작물건조 등 다목적공간으로 활용 가능
- 친환경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마을의 입구부분 및 시설과 인접하여 배치
- 시각적 또는 소음으로 생태계나 쾌적한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조성
- 현지 여건 및 방문객 수를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조성
- 식생 및 생태적 보존가치가 없고, 양호한 경관조망 및 자원보호에 장애가 없는 곳에 조성
- 일반이용자들뿐만 아니라, 장애자들의 주차동선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

나. 규모 및 형태

- 주차장의 규모는 도시계획, 공원시설 등에 나타나 있는 일반규모와 형태기준에 준하여 설치
- 주차면적은 차도를 포함하여 10대당 40~50㎡ 정도로 계획
- 주차유형은 30°, 45°, 60°, 90°의 주차각도와 주차대수, 이에 따른 이용 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배치하되, 토지형태에 따라 유형을 선정

〈표 27〉 주차 유형별 특성

주차 각도	주차 대수	장단점	비고
30°	12	주차장출입이 용이하며 많은 면적이 필요	주차대수는 주차장의 장변을 30.48m를 기준하여 산정한 것임
45°	16	주차장출입이 용이하고, 비교적 많은 주차가 가능	
60°	20	일반적으로 사용	
90°	24	주차가 어려우나 중앙통로를 2차선으로 이용가능	

- 차도 폭은 왕복일 때는 5.5m이상, 일방일 때는 3.5m이상으로 배치
- 자동차 경사로 설치 시에는 경사도가 17%이하로 하여야 함
- 주차장은 대규모 면적보다는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더 중요하며, 1.5~2.5% 정도의 배수 구배를 두어 강우 시에 대비(최기호, 1997)

다. 재 료

- 가능한 투수성이 좋으면서 농어촌마을에 어울릴만한 친환경적인 잔디블럭이나 쇠석 등을 사용
- 잔디블록을 쓸 경우 주차의 빈도수가 적어 답압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야 하고, 배수가 잘되는 곳이 적당



〈그림 128〉 잔디블럭을 활용한 주차장(좌)과 쇠석을 활용한 주차장(우)

라. 식재

- 낮 시간의 높은 일조량으로 차량온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녹음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주차장 경계부에 일정간격으로 교목을 식재
- 기존 주차장(대면적)은 일정 간격으로 분리대를 겸한 녹지대를 만들고, 자생수목을 군식

마. 부대시설

- 필요시 부대시설로 공동화장실, 음수대를 배치하고, 휴식공간과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놀이마당, 야영장, 농작물 건조공간 등으로도 겸용가능

바. 기타 참고사항

- 주차장 이외에 자전거 주차가 가능한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도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

3) 버스정류장

- 마을의 바깥길(간선도로) 또는 어귀길(진입도로) 등에 위치하여,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 지역성을 대표하고 마을 고유 특성을 반영하여 특색있는 테마시설로 조성

가. 배 치

- 마을의 버스 주정차공간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진행방향의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교차하지 않도록 배치

나. 규모 및 형태

- 버스의 정차공간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여유공간을 충분히 두도록 하여야 함
- 버스운전자 및 이용자에게 멀리에서도 눈에 잘 띄도록 하되, 마을에 따라 이용자의 수에 따라 적정 규모로 설치
- 비나 눈이 올 경우에는 피할 수 있도록 지붕을 씌우고,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늘을 제공하여 휴식할 수 있도록 내부에 벤치를 설치
- 측면에 창을 두어 통풍을 유도하고, 내부에서도 버스통행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함

다. 재 료

- 버스정류장의 재료는 목재와 같은 자연재료를 활용
- 지붕은 기와를 올리거나, 목재 판넬로 그늘을 제공
- 특수한 형태로 주물해야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 기타 합성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외벽의 색채와 재질을 고려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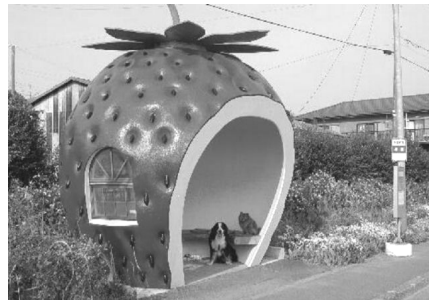
〈그림 129〉 기와지붕형 버스정류장



〈그림 130〉 일반목재형 버스정류장
(강원 인제)



〈그림 131〉 마을안내소 겸용 버스정류장(일본)



〈그림 132〉 테마형 버스정류장(일본)

라. 식 재

- 주변에 인접한 나대지에 초화류와 관목을 식재하고, 화단으로 장식하여 자연스러움을 연출

마. 부대시설

- 마을안내소 및 마을 안내표지판(마을종합안내판, 방향유도표지판 등)과 병행설치가 가능

바. 기타 참고사항

- 마을안내 및 홍보물, 버스시간표 등을 비치하여 이용객을 위한 편의 제공

4) 공동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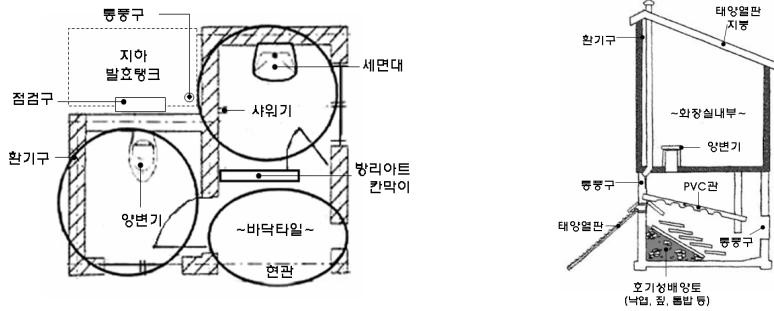
- 시설별로 이용정원을 예상하여 가능한 남녀분류형태의 쾌적한 화장실을 조성하고, 필요한 내부시설을 갖추도록 함
- 물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으면서, 분뇨가 자연발효되어 유기농산물 재배 시에 거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한 친환경화장실로 조성

가. 배 치

-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숙박, 방문자센터 및 다목적 체험장 등에 설치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건물 형태와 벽체 재료는 주거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형이 평탄하여 안전성, 기능성, 편리함을 최대한 확보한 장소에 설치

나. 규모 및 형태

- 시설별로 이용정원을 예상하여 가능한 남녀분류형태의 쾌적한 화장실을 조성
 - 외부에 설치하는 공동화장실의 경우 남자용은 대변기가 이용정원의 8~10명당 1개, 소변기는 약 10~12명당 1개 정도로 설치하고, 여자용은 약 7~10명당 1개 정도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문화체육부, 1993)
 - 이용률이 적은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남자와 여자용을 구분하지 않고 최소 10㎡ 규모의 화장실로 설치하거나 이동이 가능한 간이화장실을 배치(농촌자원개발 연구소, 2002)
 - 시설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세면장 및 샤워장 기능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
- 물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분뇨가 자연 발효되어 유기농산물 재배 시에 거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한 친환경화장실로 조성
 - 분뇨방식에 따라 다양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비교적 농어촌공간에 적합한 친환경화장실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함
 - 친환경화장실은 인체 배설물이 뜨거운 대지, 공기가 잘 통하는 곳, 햇볕이 내려 쬐는 곳에 그냥 두면 자연적으로 분해되어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특히 친환경화장실은 상수도나 하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물 절약, 수질오염 예방, 자연발효로 인한 분뇨처리 비용이 절감,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 다양한 효과를 제공
 - 태양열판을 지붕위에 부착하여 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한 겨울철 보온과 단열을 높여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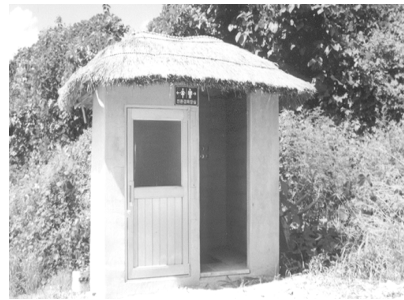
〈그림 133〉 친환경화장실 평면도(좌)와 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한 화장실의 원리(우)

□ 외부는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 자연스러움을 주고, 내부는 이용과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쾌적함을 유지하도록 함

- 외부는 화장실 위치가 주거지, 숲속이나 산림 등인지를 파악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료와 형태를 통일
- 내부는 기본적인 변기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샤워 및 세면시설을 배치하여 화장실 사용 후 손 씻기, 농작업이나 옥외활동 시 샤워, 간단한 세탁 등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
- 화장지걸이, 수납공간을 벽에 설치하고, 용변 시 바깥을 조망할 수 있는 유리창을 설치하여 자연채광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쾌적한 분위기의 화장실을 연출



〈그림 134〉 기와와 목재를 활용한 전통가옥형태의 화장실



〈그림 135〉 짚과 황토를 활용한 전통가옥형태의 화장실

다. 재 료

- 일반적으로 외벽은 친환경적인 재료인 목재, 황토 등을 활용하고,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벽돌이나 아이소판넬 이용이 가능함
- 주요 골격은 시멘트나 콘크리트로 건조하고, 내·외벽, 지붕 및 환기창문은 목재나 황토를 이용하여 마감함으로써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색채를 연출할 수 있음

- 지붕은 기와, 짚 등 전통자연재료나 박공지붕, 아스팔트 싱글을 이용
- 내부는 일반주택에 배치되는 화장실과 같이 고급내장재를 사용하여 기능성과 장식 효과를 높여줄 수 있으나, 비용과 유지관리에 유의하여 조성
- 바닥과 내부벽체는 타일 등 청소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가 적합

라. 식재

- 주출입구와 건물주변에 초화류와 관목류를 식재하거나, 주출입문에 벽걸이형 화분을 매달아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화장실로 조성

마. 부대시설

- 효율성이 좋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백열등 설치

바. 기타 참고사항

- 공동화장실은 무엇보다 이용자가 화장실 이용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유지관리 함으로써 화장실 사용문화를 개선하고, 농어촌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기여

5) 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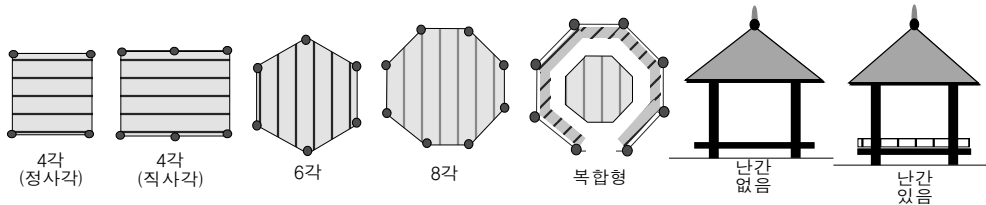
- 마을중심부나 마을공동쉼터가 포함되어 있는 정자가 대부분임
- 정자의 형태로는 사각정, 육각정, 팔각정, 혼합형 등으로 나뉘어질 수 있으며, 마을특성에 맞도록 조성
- 식재가 외부경관 조망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

가. 배치

- 정자는 마을중심부나 마을공동쉼터에 포함되거나, 정자 목과 함께 배치하면 이용활성화에 기여
- 입지에 따라서 평지에 있는 경우, 언덕위에 위치하여 주변경관을 볼 수 있는 경우, 하천이나 저수지 등과 인접하여 경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설치

나. 규모 및 형태

- 정자와 원두막은 기둥을 세워 꼭대기에 짚으로 이엉을 엮어 지붕을 만들고, 그 밑에 목재로 누대(樓臺)를 만든 형태이며, 일반적으로 마루형태의 바닥을 함께 설치하여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조성
- 정자는 형태에 따라 사각정, 육각정, 팔각정, 혼합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지붕은 박공형태의 모임지붕이나 기와를 올린 팔작지붕 등이 있음(농촌진흥청, 2005)
- 원두막 형태나 전통정자의 규모와 형태를 응용한 복합적인 형태로 다양하게 제작이 가능



〈그림 136〉 정자형태에 따른 패턴



〈그림 137〉 기와지붕과 목재를 활용한 육각형의 정자



〈그림 138〉 전통형의 재료를 사용한 복합형의 정자

다. 재료

- 일반적으로 전통정자의 경우에는 얼음이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목재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은 기와나 짚을 사용한 자연재료나 인공기와, 아스팔트 싱글을 사용

- 정자에 사용되는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함수율 30% 이하로 건조한 뒤에 방부처리하고, 처리된 목재는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에 함수율 24% 이하이어야 하며, 방부 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뒤에 사용(대한주택공사, 2005)
- 각재 및 판재, 통나무는 산림청의 제재규격 또는 KS F 1519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권장
- 전통기와를 지붕에 올린 것이나, 단청을 채색한 정자는 짚을 재료로 한 원두막이나 일반 목재와 아스팔트 싱글로 제작한 정자에 비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경향이 있음
- 마을쉼터에 설치할 경우에는 이용객들을 위한 접근로를 확보하고, 데크나 자연자갈로 포장해서 녹지공간과 구분

라. 석 재

- 정자 목 아래에 식재하여 녹음을 주고, 가능한 사방으로 조망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함

마. 부대시설

- 정자에 앉았을 경우, 등받이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난간을 설치할 수 있음

바. 기타 참고사항

- 정자를 설치하는 공간의 지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단을 설치하고, 기둥을 지지하는 곳에는 자연석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자는 시공업체별로 규격화된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운반이 용이한 편임

6) 파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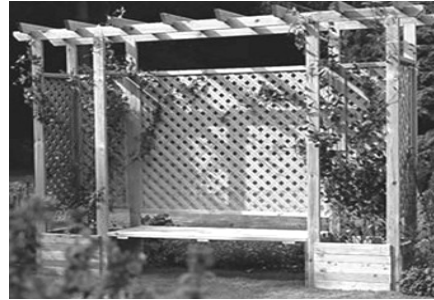
- 건물과 연계하여 그늘을 조성하거나, 정원내의 원로나 자투리 공간 등의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설치
- 목재로 만든 파고라 위에 등나무, 능소화, 으름덩굴, 장미, 칙, 조롱박, 수세미, 나팔꽃 등의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여 그늘을 제공

가. 배 치

- 파고라 설치장소는 건물에 붙어 건물의 일부로서 효과를 줄 수 있는 곳, 정원 내 원로의 일부 또는 정원의 한 구석으로서 조망이 좋고 한적한 곳에 배치

나. 규모 및 형태

- 파고라의 크기는 높이는 220~250cm, 세로는 180~250cm 도리 사이는 40~60cm로 함
- 도리돌출부위는 30cm, 기둥 굵기는 둥근 목의 경우는 10~15cm, 돌쌓기의 경우에는 20~40cm으로 함
- 기둥간격은 180~270cm, 등책 간격은 30~40cm로 함(문화체육부, 1993)



〈그림 139〉 의자와 야외탁자를 배치한 파고라 〈그림 140〉 벤치기능을 함께 도입한 파고라

다. 재 료

- 재료에 있어서 기둥은 소규모인 경우에는 각재, 철재, 파이프를 주로 이용하고, 대규모인 경우에는 석재, 벽돌 등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 내구성에 좋음
- 들보와 도리는 목재로 하여 방부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페인트를 칠하여 색채를 조절하기도 하고, 목재를 부탄램프 처리하여 자연미를 더하기도 함
- 바닥은 콘크리트 블록이나 벽돌을 깔아 미화하는 것이 좋고, 배수에 주의

라. 석 재

- 식물로는 등나무, 능소화, 으름덩굴, 장미, 철, 조롱박, 수세미, 나팔꽃, 단풍애기나팔꽃, 포도나무, 인동덩굴, 클레마티스 등을 올려 그늘을 제공하는 동시에 꽃과 식물을 감상하게 함

마. 기타 참고사항

- 쉼터는 옥외공간에서 악천후 시 대피소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휴식공간이 되므로 휴게 공간 내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파고라와 중복되지 않게 배치
- 반투명재료를 사용한 유니트 구조로서 시각적으로 주변공간을 밝게 하는 것이 좋음
- 쉼터의 높이는 파고라 높이에 준하며, 크기와 형태는 주변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음

7) 벤 치

- 주민의 대화, 휴식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휴게시설로서 등의자와 평의자의 형태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음
- 인간에게 알맞은 규격으로 설치하여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함
- 많은 수량의 벤치를 설치하여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

가. 배 치

- 설치장소는 나무그늘, 잔디밭, 화단근처 등의 휴게공간, 건물벽면의 전면 등으로서 다른 이용자의 움직임으로부터 독립된 곳이 좋음
- 농어촌공간에서는 주민의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마을 공동쉼터 등에 배치

나. 규모 및 형태

- 형태에 있어서 등의자와 평의자로 구분할 수 있음
 - 등의자 형태는 휴식을 위해 산책로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등을 기대 수 있는 것임
 - 평 의자는 등을 기대 수 없지만 다리를 지면에 편안히 디딜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함
- 벤치는 인간에게 알맞은 규격으로 설치하여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벤치의 수가 너무 많아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
 - 높이는 35~43cm, 너비는 38~45cm가 적당하며, 평판이라도 최소 30cm이상 되어야 하며, 길이는 한사람이 앉는 넓이는 60cm정도로 하여 정하여 조성함(최기호, 1997)
 - 필요로 하는 양을 적정하게 배치함으로써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벤치의 도입도 가능함
 - 평의자의 형태와 정자·원두막을 응용하여 그늘 막은 없으나, 휴식할 수 있는 시설로 평상을 설치할 수 있음



〈그림 141〉 목재로 만든 평상



〈그림 142〉 수목과 함께 조성한 평상

다. 재 료

- 목재는 사계절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겨울에 이용하기 좋은 반면 내구성이 약하고 방부처리가 요구됨
- 특히, 벤치의 다리부분은 썩기 쉬우므로 콘크리트로 만들고, 외형과 색상은 목재의 나무결 장식을 하여 주변시설과 어울리도록 설치
- 목재 이외에도 석재, 콘크리트, 철재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벤치를 설치할 수 있으나, 농어촌경관에는 비교적 어울리지 않는 색상이나 질감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들 재료들을 선택적으로 사용·보완하여 농어촌경관에 이질적이지 않도록 유의
- 석재는 목재 다음으로 자연 속에서 주변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어 어느 장소에서나 사용이 가능하지만, 가공이 어려운 단점이 있으므로, 소규모 정원이나 광장 요소요소에 설치하여 경관미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콘크리트는 관리가 용이하고, 내구성이 강하고, 자유형으로 제작할 수 있으므로 목재의 나무 결 형태로 장식하거나 색채를 칠하여 활용이 가능
- 철재는 튼튼하고 안정감이 있으나 녹이슬기 쉬우며, 제작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동식 의자의 구조로 적당하고, 등받이는 목재나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것이 중량을 낮추는데 기여

라. 식 재

- 교목류의 나무, 초화류의 화단이나 꽃 울타리 등과 함께 조성하여 아늑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
- 인동덩굴이나 담쟁이와 같은 덩굴식물을 올린 파고라 시설과 연계하여 녹음을 제공

마. 부대시설

- 휴지통, 재떨이 등 서비스 시설을 설치하거나, 뒤로 돌아가기 쉽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벤치의 간격을 90cm 정도 띄우는 것이 적당함

바. 기타 참고사항

- 장애인을 위한 벤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휠체어 치수와 같은 40~50cm의 높이로 설치하고, 폭은 30~40cm, 팔걸이는 벤치의 좌석에서 150cm 위에 설치하여 휠체어에서 벤치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
- 벤치 앞 150cm의 공간에는 방해물을 제거하여 휠체어 및 장애인의 이동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벤치 간격은 90cm이상을 확보

8) 야외탁자

- 야외탁자는 저습지, 먼지가 일어나기 쉬운 곳은 피하고 붕괴 및 기타 위험 요소가 없는 장소에 배치
- 탁자와 의자 사이는 간격을 적절히 띄워서 몸이 들어가기 쉽도록 하고, 앉았을 때 발을 편안히 놓을 수 있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요구됨

가. 배 치

- 야외탁자 설치위치는 마을마당이나 산책로, 정원내의 휴식공간, 자연체험장, 운동장, 캠프파이어장, 야영장 등 옥외활동을 하는 휴식공간에 설치
- 저습지, 먼지가 일기 쉬운 장소는 피하여 평탄지에 설치하고, 붕괴 및 기타 위험요소가 없는 장소를 택함

나. 규모 및 형태

- 탁자는 의자 사이 간격을 적절히 띄워서 몸이 들어가기 쉽도록 하고, 앉았을 때 발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둠
- 야외탁자의 표준규격은 중학생~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좌면 높이는 34~41cm정도
- 좌면의 폭은 26~36cm를 표준으로 하는 것이 적당함
- 야외탁자의 폭은 1인당 60cm를 표준으로 하고, 깊이는 64~80cm로 함
- 벤치와 야외탁자의 간격은 37~44cm를 표준으로 함(문화체육부, 1993)
- 야외탁자의 폭은 의자에 앉아서 탁자판 중앙부에 손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함

다. 재 료

- 야외탁자는 일반적으로 다그라스목재(미송), 원목, 방부목 등의 다양한 목재를 활용하여 제작하고, 일체형일 경우에는 접합시키기 위해 철근재료를 활용
- 기타 세부계획은 파고라, 정자 등의 재료와 동일하므로 관련부문을 참고하여 설치

라. 식 재

- 여름철에는 그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목을 식재

마. 부대시설

- 벤치 등을 설치하고, 세부계획은 관련부문 참조

바. 기타 참고사항

- 탁자가 놓이는 자리의 지표면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

5. 기타 시설물경관

5.1 기본방향

- 마을내부에 도입되는 시설물에 대한 세부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 안내시설, 가로시설물, 조형물 등 마을에 도입되는 시설물의 계획방안을 제시한다. 시설별 규모, 형태, 재질 및 색채 등의 계획안을 제시할 수 있다.

5.2 기타 시설물경관 매뉴얼

〈표 28〉 기타 시설물경관 매뉴얼

구 분	매 뉴 얼
안내표지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쉽게 이해될 수 있게 내용에 있어 간명해야 함 • 안내표지판의 유형에 따라 규격(높이와 적정크기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 • 마을만의 고유특색을 살려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 설치
숫대·장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승과 숫대의 배치방법과 제작은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본래의 전통적인 상징요소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부분 목재를 이용하고, 벽수와 같이 변용되어 석재를 활용하여 상징적으로 조성하기도 함

5.3 부문별 계획 및 예

1) 안내표지판

- 쉽게 이해될 수 있게 내용에 있어 간명해야 함
- 안내표지판의 유형에 따라 규격(높이와 적정크기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
- 마을만의 고유특색을 살려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 설치

가. 배 치

① 마을종합안내판

- 방문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으로, 마을의 입구부나 마을회관이 위치한 도로변에 설치
- 일정시간 머무르면서 안내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자동차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함

② 시설안내판

- 시설이 위치한 주요 건물의 정면부에 설치하거나, 입구부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눈에 띄도록 함

③ 자원해설판

- 해설하는 자원의 정면에 설치하거나 자원에 부착하되, 방문객의 눈높이에 맞도록 설치높이가 너무 높거나 낮지 않도록 유의

④ 방향유도표지판

-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궁금할 만한 위치를 고려,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배치
- 내용을 쉽게 빨리 읽을 수 있도록 높이와 방향을 결정
- 노선이 애매하여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지점, 갈림길, 조난예상지점 등에 설치

⑤ 마을 표지석·입간판

- 마을 표지석과 입간판은 진입도로부의 진행방향 오른쪽 측면에 설치하여 입구부임을 강조

나. 규모 및 형태

- 표준어의 단어를 사용하되 내용전달에 있어 문외한에게도 이해될 수 있도록 내용이 간략하고, 명료해야함
- 가능한 그림과 설명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으나 필요이상으로 많은 지면을 차지하여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
- 마을 내 자원의 분석 및 검토를 통해 고유한 마을요소를 도출하여 안내판의 전체적인 색채, 재료, 글씨체 등의 디자인에 반영

① 마을종합안내판

- 마을의 이름과 로고, 마을 주요시설의 위치, 마을의 여러 자원, 마을의 특성 등 마을의 전반적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도를 부착하여 제작



〈그림 143〉 마을종합안내판

② 시설안내판

- 주요시설 주변이나 앞에 시설명칭과 안내 글을 간단하게 적어서 안내해주는 역할을 담당



〈그림 144〉 시설안내판 사례(경기 이천 자채방아마을(좌) 경기 양평 세미원(우))

③ 자원 해설관

A. 경관 해설관

- 조망되는 자연경관을 방문객들에게 친숙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해설
- 도로변 조망경관장소, 자연관찰로 등 테마로, 시설주변에 설치
- 주요경관을 액자를 통해 보는듯한 효과를 주어 방문자들의 흥미 유발, 이용 횟수를 높이는데 기여

B. 환경/역사/동식물 해설관

- 자연관찰로, 역사탐방로 등 테마로를 이용하는 방문객의 흥미와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설판을 설치하여 주변 현황을 소개
- 해설판의 표지 규격 및 의장 등은 노선별로 통일하도록 함
- 테마로의 전시 및 홍보내용과 연계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과학적 현상이나 흥미로운 사실을 다양한 해설방법으로 설계
- 해설내용은 사진, 그림 등을 이용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그림 145〉 환경/역사/동식물 해설판 사례

C. 식물표찰

- 식물표찰은 교목의 경우 부착형으로 설치하고, 관목이나 지피식물은 지면에 세우는 직립형으로 설치
- 직립형의 식물표찰은 가능한 식물특징을 나타내는 그림을 포함해야 하며, 내용에는 꽃, 열매, 잎, 수피 등 형태, 생태적 특성을 정확하고 쉽게 설명하도록 함



〈그림 146〉 식물표찰 사례

④ 방향유도표지판

- 간단명료하고, 신속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마을로고 및 이름, 목적지의 이름과 거리, 화살표를 제외한 복잡한 그림이나 설명은 표기하지 않도록 유의



〈그림 147〉 방향유도표지판 사례

⑤ 마을 표지석 · 입간판

- 마을 표지석은 자연석을 활용하거나, 입간판은 마을상징로고나 캐릭터 등을 활용한 문주형태로 구성하여 독특한 마을의 입구를 돋보이도록 설치
- 마을 표지석과 입간판은 무엇보다 마을입구에 설치하므로 상징적인 요소를 부각시켜 멀리서도 눈에 띄고, 단순한 내용으로 시각적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함



〈그림 148〉 마을표지석 · 입간판 사례

⑥ 안내표지판 규격

- 안내표지판은 우선적으로 적정한 폭과 높이를 준수하고, 이용자의 눈높이와 성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해야 함
- 마을종합안내판의 크기는 최소 가로0.9×세로0.6m가 적당하고, 키가 작은 어린이도 한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방향유도표지판은 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의 높이가 최소 2.5m이상 되어야 하며, 시설해설판과 자원해설판은 바닥 면에서 표지판중심까지의 높이가 0.6m이상 되어야 한눈에 들어오고, 내용파악이 용이함
- 안내표지판의 설치 시에는 도로법 등 관련법제 및 규칙이 적용되므로 이를 검토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함

다. 재 료

- 지주대와 안내판의 테두리는 목재를 사용하여 자연스러움을 연출
- 장기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도면과 정보가 들어가는 부분은 실크스크린(철재)을 하여 제작할 수 있음
- 마을 표지석은 큰 바위나 자연석 등을 이용하여 설치

라. 식 재

- 마을중합안내판의 경우에는 안내판을 가리지 않도록 하단부에 키가 낮은 관목류와 초화류를 식재

마. 부대시설

- 안내표지판의 지주대 아래에 초화류를 식재하여 미관을 정비하도록 하고, 식재 시에는 안내표지판의 내용을 가리지 않도록 유의

바. 기타 참고 사항

- 안내표지판 설치 시 마을에 인접한 국도 및 지방도 주변에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법의 제한을 받으므로, 관련법제에 대한 검토가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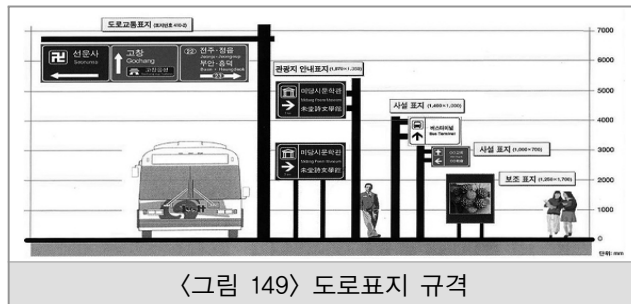
Ⅰ 도로법상의 표지판의 유형과 규격

- 도로법상의 표지판은 경계표지, 이정표지, 방향표지, 노선표지, 기타표지로 구분

〈표 29〉 도로법상의 표지판의 유형

구 분	내 용
경계표지	• 도·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읍 또는 면사이의 행정 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이정표지	•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방향표지	• 방향 또는 방면을 나타내는 표지
노선표지	• 주행노선 또는 분기노선을 나타내는 표지
기타표지	• 터널표지·양보차로표지·유도표지·시종점표지·돌아가는 길표지·매표소표지·오르막 차로표지·자동차전용도로예고표지·보행인표지·주차장표지·정류장표지·비상주차장 표지·하천표지·교량표지·휴게소표지·관광지표지·긴급신고표지 및 자동차전용도로표지·사설표지

- 도로법상의 표지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표지규칙」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크기와 색상 등을 맞추어 도로건설관리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함



〈그림 149〉 도로표지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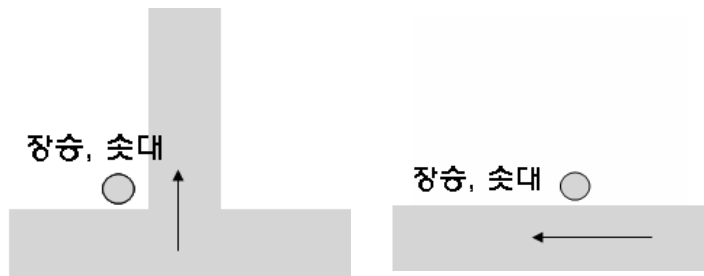
【출처: 도로표지규칙 제2조(도로표지의 구분)】

2) 솟대 · 장승

- 장승과 솟대의 배치방법과 제작은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본래의 전통적인 상징요소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부분 목재를 이용하고, 벽수와 같이 변용되어 석재를 활용하여 상징적으로 조성하기도 함

가. 배 치

- 장승의 기본 형태는 돌이나 나무에 인간 얼굴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하였으며, 그 몸체에 이름을 새기며, 보통 한 쌍으로 마을 입구에 설치
- 장승은 도로에 인접하여 설치하고, 솟대와 함께 위치하는 경우가 있음



〈그림 150〉 배치에 따른 장승의 공간패턴

나. 규모 및 형태

- 솟대의 새 모양은 간단히 양식화하여 Y형 나뭇가지로 만든 것이 있고, 나뭇가지를 머리와 목으로 여겨서 Y자형 나뭇가지나 넓적한 나무판에 연결하여 제작하기도 함
- 새들에 몇 가지 장식물을 덧붙여서 새의 성격을 구체화하기도 하는데, 즉 물새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부리에 갈대나 붕어 또는 잘게 자른 대살을 물리기도 하고, 날개를 사실적으로 표현
- 솟대의 새의 머리 방향은 일정하지는 않은 편임
- 장승은 장소에 따라 채색 · 형상 · 크기 등이 다르나 모양이 괴엄(魁嚴)한 점만은 일치하여 새김
- 장승은 보통 남녀로 쌍을 이루며, 남상(男像)은 머리에 관모를 쓰고 전면에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 '상원대장군(上元大將軍)'이라 새겨 있으며, 여상(女像)은 관이 없고 전면에 '지하대장군(地下大將軍)',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 '하원대장군(下元大將軍)' 등의 글이 새겨 있음

- 장승에 쓰는 장군 명에는 민속적인 신명(神名)이 등장하는데 동쪽에 있는 장승에는 동방청제 축귀장군(東方靑帝逐鬼將軍), 서쪽에는 서방백제 축귀장군(西方白帝逐鬼將軍), 남쪽에는 남방적제 축귀장군(南方赤帝逐鬼將軍), 북쪽에는 북방흑제 축귀장군(北方黑帝逐鬼將軍)이라고 써서 세워, 축귀하는 민간 신앙의 성격을 나타냄



〈그림 151〉 마을입구에 설치한 솟대



〈그림 152〉 마을입구에 설치한 장승

다. 재 료

- 일반적으로 목재로 제작하고, 일부에서는 돌하루방과 같이 석재를 활용하여 제작

라. 식 재

- 주변에 식재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마. 부대시설

- 솟대나 장승을 단독으로 설치하거나, 돌탑, 선돌, 흙더미나 성황당 등의 다양한 전통시설과 함께 배치됨

바. 기타 참고사항

- 상징적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목공예를 이용한 솟대, 장승 만들기 등의 농어촌관광체험활동으로 응용이 가능

6. 색채경관

6.1 생활경관의 색채

6.1.1 기본방향

- 생활경관의 색채는 자연경관 색채와 잘 조화되어야 한다.
 - 농어촌 생활경관의 배경이 되는 산지, 전·답, 강, 호수, 바다 등의 자연경관 색채는 차이가 있으므로, 입지유형을 구분하여 계획한다.
 - 동일 입지유형일지라도 자연경관 색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 특성을 분석하여 잘 조화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같은 해안가 마을 일지라도 동해와 서해의 자연환경은 다르며, 같은 산촌일지라도 지역기후 영향으로 수목 분포가 차이가 있으므로 확일적으로 계획되지 않아야 한다.
- 마을의 역사, 문화, 전통, 상징 등을 잘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 오랜 세월동안 전통적으로 보존되고 있는 문화적, 상징적 배색특성을 발굴하여, 적용함으로써 독창적인 색채경관 계획을 한다.
- 색채의 계획 및 관리는 농촌·어촌다운 색채경관 이미지를 우선 고려한다.
 - 농어촌 생활경관의 색채는 도시적 색채 이미지보다는 생산경관이나 자연경관과 잘 조화되도록 농촌·어촌답게 계획한다.
- 색채계획은 마을 경관의 주요 조망지점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 색채는 지각하는 지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마을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조망지점에서 주변색채와 어떻게 반응할 지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생활경관의 색채계획 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주조색(Master Color); 채색면적의 40~100%의 면적 비를 갖는 색으로서, 보조색 면적보다 큰 면적의 색을 주조색으로 한다.
 - 보조색(Sub Color); 채색면적의 10%이상의 면적을 갖는 색으로서, 주조색보다 좁은 면적의 색을 보조색으로 한다.
 - 강조색(Accent Color); 채색면적의 10%미만의 면적 비를 갖는 색으로서, 주조색 또는 보조색 중의 하나 둘과 명도 차와 채도 차를 합해서 4이상인 색을 강조색으로 한다. 이때 색상차이는 고려 하지 않으므로 같은 색상이라도 명도 차와 채도 차가 크면 강조색이 될 수 있고, 색상 차가 크더라도 명도 차와 채도 차가 작으면 강조색이 될 수 없다.

6.1.2 생활경관 색채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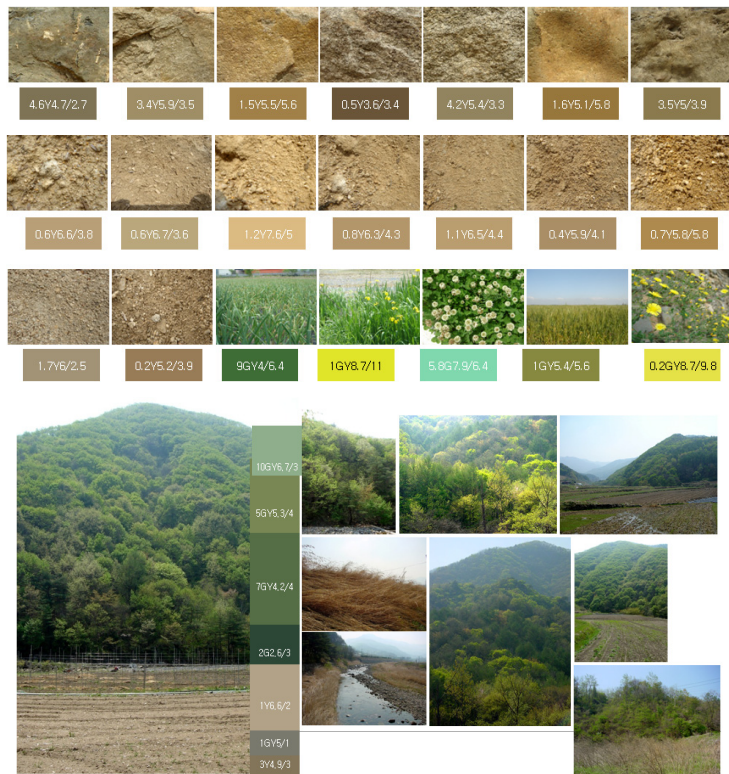
〈표 30〉 생활경관 색채 매뉴얼

구분	매뉴얼
주 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공간의 색채계획은 입지유형별 자연경관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계획 • 입지유형은 산지, 평야, 강변, 해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입지유형별 자연경관 색채와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함 • 동일 입지유형일지라도 동해안과 서해안의 색채경관은 차이가 있으며, 같은 평야에 입지하더라도 평지에 입지하는 마을과 작은 구릉을 배경으로 하는 마을의 색채경관은 구분되어야 함 • 마을의 전통적, 역사적, 문화적 경관특성을 반영하여 색채 계획 • 유형문화재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의 지역 색채 이미지를 계승함으로써, 마을의 독창적 색채경관 조성 • 농촌·어촌의 색채는 도시적 세련미보다는 농촌·어촌다운 색채계획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 • 마을을 조망하는 주요지점에서 어떤 색채경관을 조성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계획 • 농·어촌 주택의 형태와 재료 특성에 따라서, 지붕, 벽, 담, 대문 등을 구분하여 계획 • 벽체와 담, 대문은 빗물이나 낙숫물에 흙이 튀어오를 것을 고려하여 색채계획 • 주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의 질감을 고려하여 계획 • 기존주택의 색채정비는 현 시설의 재료가 갖고 있는 특성과 형태를 고려하여 계획 • 기존 주택의 색채정비 시, 지붕이 기와인 주택은 가급적 전통 기와 색채로 정비 • 보존가치가 있는 기와집, 너와집, 초가집, 굴피집 등의 색채정비는 주택의 원형 재료와 색채로 계획
가 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진입도로, 내부도로의 포장재료 색채는 고채도의 원색을 금함 • 산책로, 테마로, 등산로, 자전거도로 등의 포장 재료는 흙 포장으로 하되, 배수가 불량한 곳은 마사토, 쇠석 등 친환경재료를 사용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색채계획 • 가로에 설치되는 안내표지판, 마을상징물, 버스승강대 등은 가급적 석재나 목재를 사용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색채계획 • 가로에 설치되는 계단이나 난간은 목재를 사용하여 친환경 색채경관 연출
건 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회관, 경로당, 건강증진실, 찜질방, 농특산품 판매장 등의 색채는 주거공간 색채경관과 구분 • 이 시설들은 공적용도 시설물들이므로 마을의 주거시설과는 색상과 색조를 구분하되, 유사조화 범위 내에서 계획 • 주거시설보다 규모가 크므로 자연경관과 대비되지 않고, 유사 조화되도록 계획

6.1.3 부문별 계획 및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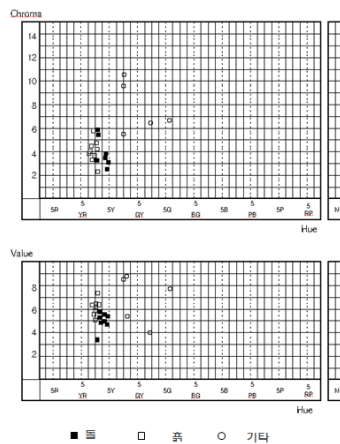
1) 색채계획 프로세스

가. 1단계 ; 자연 색채경관 조사 및 분석



〈그림 153〉 자연 색채경관 측색

- 마을의 흙, 돌, 식물, 하천 하늘 등의 자연색채를 측색하고 분석한다.
- 주요 조망지점에서 농업 경관과 자연경관을 측색하고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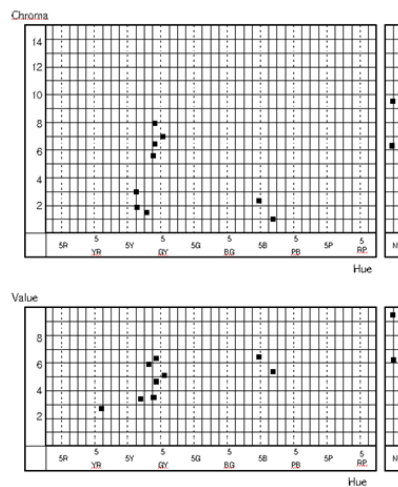
〈그림 154〉 자연경관 분포도 분석

나. 2단계 ; 역사·문화 색채경관 조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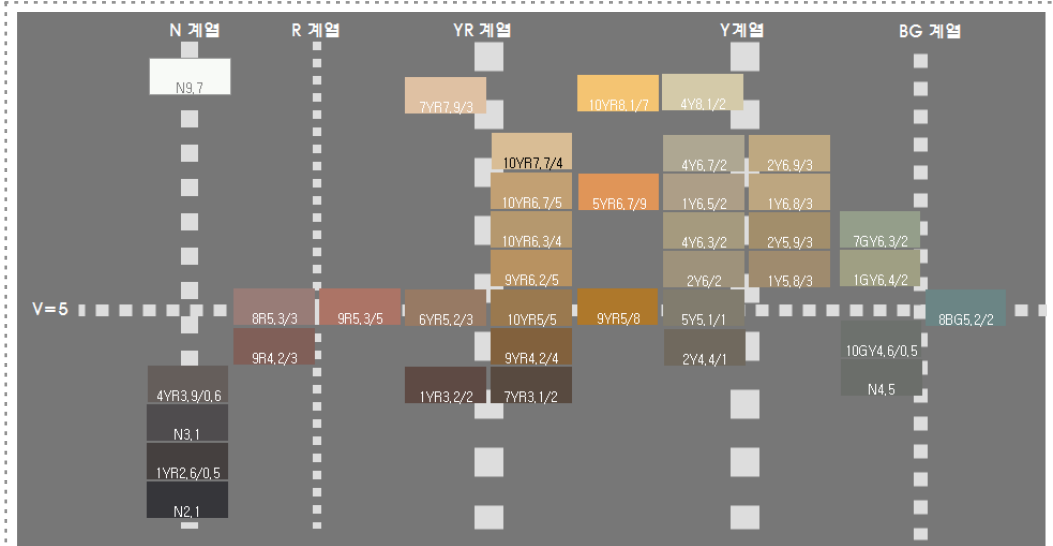
〈그림 155〉 역사문화 색채경관 측색

-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향토자원의 색채를 측색하고 분석한다.
- 지역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색채이미지를 도출하기 위한 단계이다.
- 다른 마을과 구분되는 독창적인 자연자원도 역사·문화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56〉 역사문화 색채경관 분포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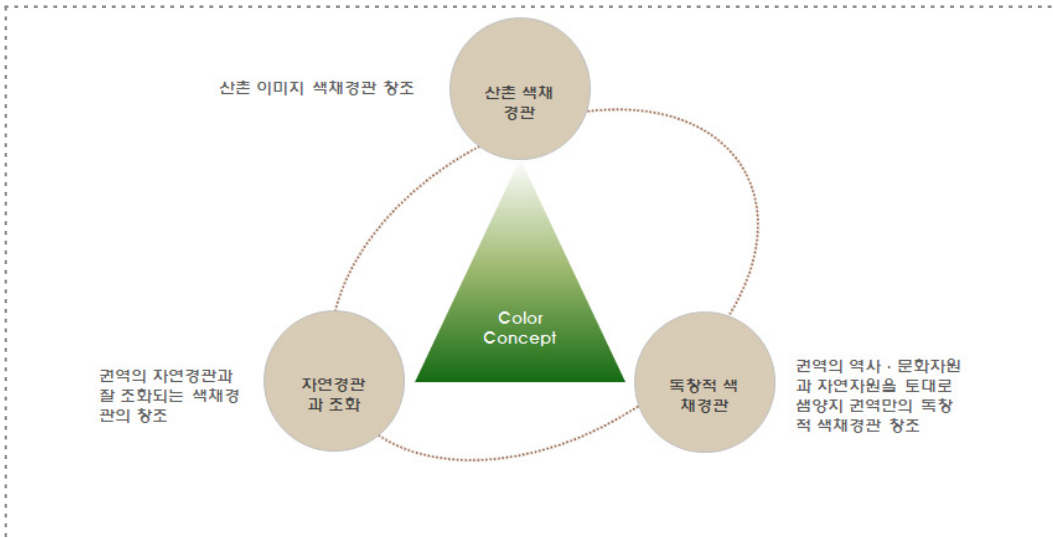
다. 3단계 ; 지역 색 분포도 분석



〈그림 157〉 지역 색 분포도 분석

- 1, 2단계에서 측색 · 분석한 자연환경색채와 역사 · 문화경관의 색표를 색상과 색조계열로 구분한다.
- 지역 색의 색상계열과 색조를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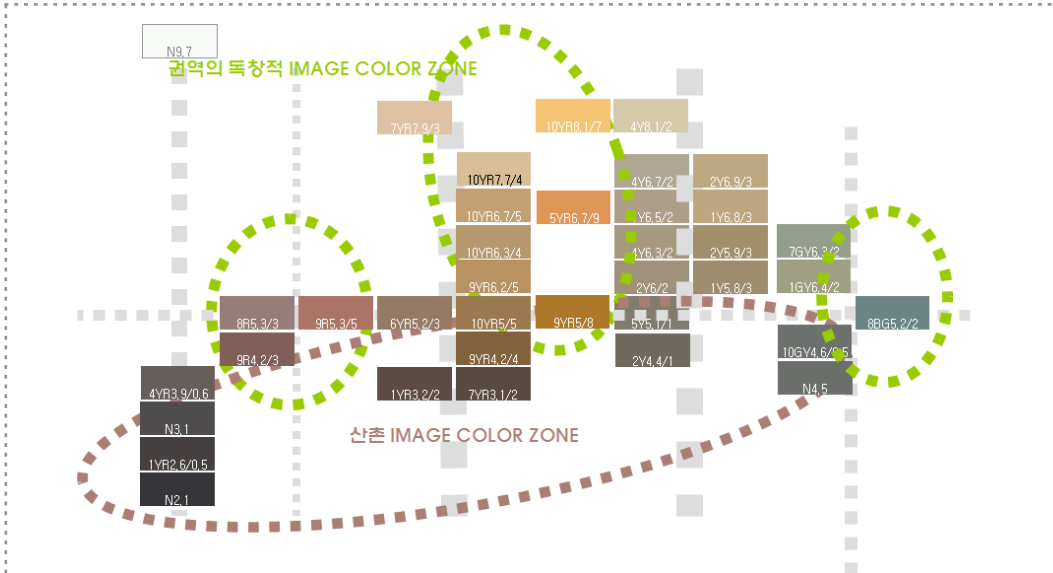
라. 4단계 ; Color Concept 설정



〈그림 158〉 Color Concept의 설정

- 마을의 입지특성, 자연자원, 인문자원 특성을 고려하여 Color Concept을 설정한다.
- 자연경관과의 조화, 농 · 어촌다운 색채경관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역의 독창적 전통과 역사,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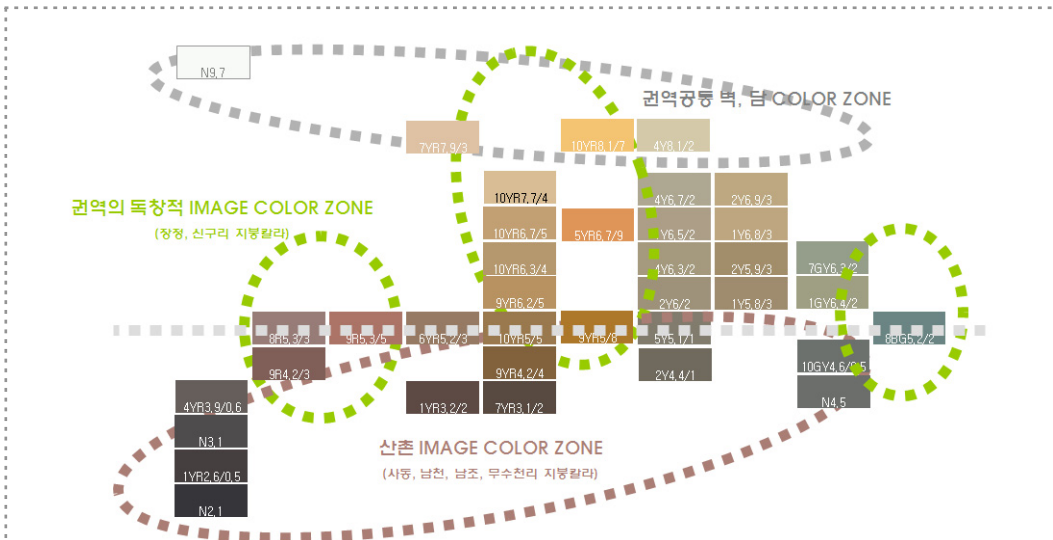
마. 5단계 ; Color Image 선정



〈그림 159〉 Color Image의 설정

- Color Concept을 달성하기 위해, 앞에서 분석한 지역 색의 색상계열 및 색조분석표에서 Color Image Zone을 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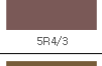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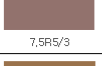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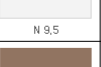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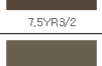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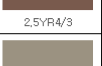
바. 6단계 ; Color Zoning



〈그림 160〉 Color Zo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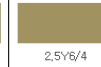



- 마을입지 특성에 따라, Color Zoning에 의해 소 권역을 구분한다.
- 시설물의 채색 부위(지붕, 벽, 담)의 주조색 계열과 색조를 Zoning한다.

사. 7단계 ; Color Pallet 작성

권역공통 시멘트기와, 담석기와	주조색						
	악센트 색						
1권역 (장정, 신구리)	주조색						
	악센트 색						
2권역 (사동, 남천, 남조, 무수천 리)	주조색						
	악센트 색						

〈그림 161〉 지붕의 Color Pallet 작성

- 지붕은 농어촌의 주거 색채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Color Pallet를 구분한다.
- 지붕재료에 따라 색채경관 이미지는 차이가 있으므로, 재료를 구분하여 Color Pallet를 구분한다.
- Pallet는 색조차이가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획일적인 색채계획이 되지 않도록 한다.
- 보조색은 창조적 색채경관 조성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디자이너의 자율적 선택에 맡긴다.

벽, 담	주조색						
	보조색						
대문							
간판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 간판의 강조색(전체면적의 30%이내)은 위의 팔레트 외에도, 취급상품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색상, 명도, 채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그림 162〉 벽, 담, 대문의 Color Pallet 작성

- 벽과 담의 주조색과 보조색 범위를 설정하여, 마을의 통일된 색채경관을 조성한다.
- 벽과 담의 강조색은 독창적인 색채경관 조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디자이너의 자율적 선택에 맡긴다.
- 색조차이를 둔 다양한 팔레트를 제시하여 획일적인 색채계획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주거 색채경관 정비사례

- 개발된 권장 Color Pallet에 따라 지붕과 벽의 색채를 정비한다.
- 지붕재료에 따라 색채경관 이미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하여 정비한다.

색채정비 전	색채정비 후
	
<p>색채정비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재료가 시멘트 기와지붕인 시설물은 전통기와 색채로 정비 - 시멘트 미장 벽은 지역 권장 색채팔레트에 따라 정비 	

색채정비 전	색채정비 후
	
<p>색채정비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재료가 골 슬레이트 또는 골 합석인 시설물은 권역 별 권장 색채팔레트에 따라 도장 - 미장 벽은 앞의 권장색채 팔레트에 따라 권역 구분 없이 채색 - 목재구조 벽의 목재와 회벽은 가급적 존치시킬 것을 권장함 	

〈그림 163〉 주거경관 색채정비 사례

3) 가로경관 계획 사례



〈그림 164〉 가로등 색채경관 사례

- 가로등의 형태, 재료, 색채는 지역 경관특성을 반영한다.
- 가로등의 색채는 자연경관과 유사 또는 동등 조화 범위에서 계획한다.





- 가로의 휨스, 블라드, 음수대 등의 형태, 재료, 색채는 지역경관특성을 반영한다.
- 가로 시설물 색채는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자연경관과 유사 또는 동등조화 되도록 한다.



〈그림 165〉 블라드, 휨스, 음수대의 색채경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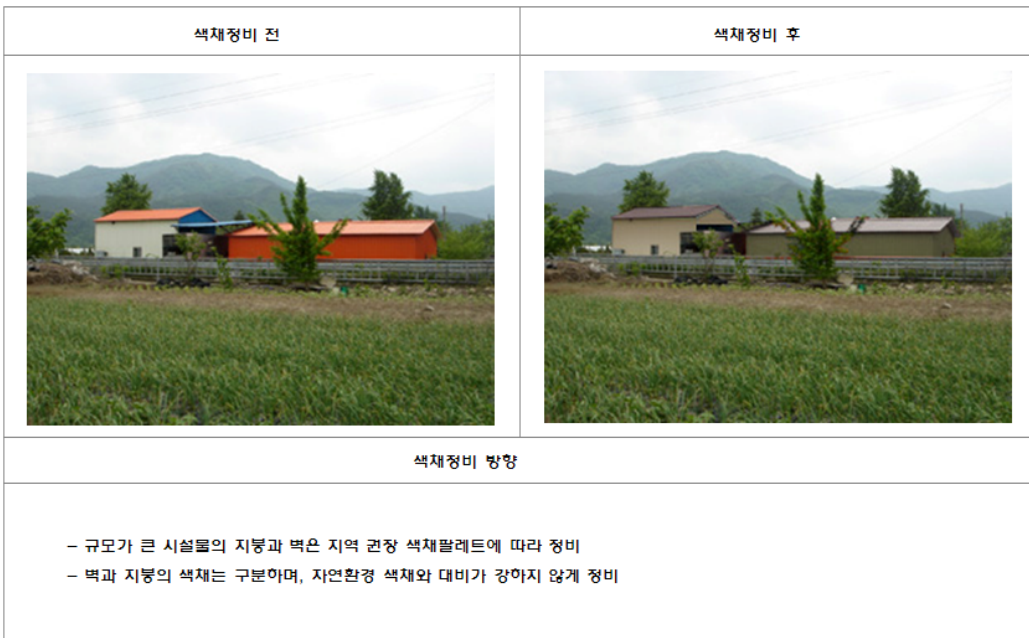
4) 건축경관 색채정비사례

- 개발된 권장 Color Pallet에 따라 마을회관, 경로당, 건강증진실, 찜질방, 농특산품 판매장 등의 시설물 색채를 정비한다.
- 마을 공적인 시설물이므로 주거시설과는 색상과 색조를 구분하되, 유사조화 범위 내에서 계획한다.
- 마감 재료에 따라 색채경관이미지는 차이가 있으므로, 정비할 시설물의 재료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정비한다.

색채정비 전	색채정비 후
	
<p>색채정비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장으로 마감한 평 슬라브 시설물의 벽은 권역구분 없이 배색 팔레트에 따라 채색 - 점토벽돌 벽은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요구됨 - 기와로 치장한 파라밋은 개발된 권역 별 권장 지붕 배색 팔레트에 따라 채색 	
색채정비 전	색채정비 후
	
<p>색채정비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재료가 골 슬레이트 또는 골 합석인 시설물은 권역 별 권장 색채팔레트에 따라 도장 - 점토벽돌 벽은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요구됨 	

〈그림 166〉 건축경관 색채정비 사례

- 주택보다 규모가 큰 창고, 축사, 우사 등의 색채계획은 자연경관과 대비되지 않는 무난한 배색이 바람직하다.
- 개발된 권장 Color Pallet에 따라 지붕과 벽의 색채를 정비한다.
- 지붕과 벽은 구분하여 계획하고 정비한다.
- 마감 재료에 따라 색채경관이미지는 차이가 있으므로, 정비할 시설물의 재료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정비한다.
- 벽체는 빗물이나 낙숫물이 튀어오를 것을 고려하여 명도와 채도를 조절한다.



〈그림 167〉 창고 색채정비 사례

6.2 역사 · 문화경관의 색채

6.2.1 기본방향

- 농어촌의 경관 측면은 물론, 우리나라의 역사 · 문화경관의 보존 측면에서 색채 계획 방안을 제시한다.
 -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유형문화재의 채색재료, 도안, 색채(색의 삼속성)는 원형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마을이나 지역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색채경관을 발굴하고, 보존한다.
 - 기와집, 너와집, 굴피집, 초가집 등 사라져가고 있는 한국적 역사 · 문화경관들은 색채와 재료, 형태적 측면에서 원형그대로 보존한다.
 - 마을의 역사와 환경특성을 반영하고, 마을을 상징하는 가치 있는 향토문화경관(저장고, 방앗간, 정자, 서낭당,...)을 발굴하여 보존한다.
 - 무형문화에서 나타난 색채경관을 발굴, 분석, 적용하여서 독창적인 마을 색채 경관 조성을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
- 역사 · 문화적 가치가 있는 마을이나, 지역의 시설물 색채는 역사 · 문화경관을 저해하지 않아야하다.
 -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마을의 시설물 색채계획은 전통적 배색이미지로 계획한다.
 - 문화재 인근 시설물의 색채는 유목성을 낮추어서 역사 · 문화 경관을 압도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문화재 인근시설물의 색채는 문화재와 유사한 배색이미지로 계획한다.

6.2.2 역사·문화경관 색채 매뉴얼

〈표 31〉 역사·문화경관 색채 매뉴얼

구 분	매 뉴 얼
역사·문화경관의 보존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물의 색채 정비는 채색재료, 도안, 색채(색의 삼속성) 모두 원형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계획 • 문화재는 아니지만, 가치가 있는 시설물의 색채정비도 가급적 원형그대로 보존하며, 유성페인트로 무분별하게 채색하지 않아야 함 • 기와지붕의 정비는 페인트를 통한 채색이 아닌, 기와자체를 교체
역사·문화경관의 개발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와집, 너와집, 굴피집, 초가집 등은 재료와 색채, 형태 등을 원형그대로 개발, 보존될 수 있도록 계획 • 마을이나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저장고, 방앗간, 정자, 서낭당 등 향토역사문화재들도 색채와 재료, 형태 등을 원형그대로 개발, 보존될 수 있도록 계획 • 기와지붕의 정비는 페인트를 통한 채색이 아닌, 기와자체를 교체하도록 계획 • 창호, 기둥, 서까래, 벽 등의 정비도 페인트로 채색하지 않고, 원형 재료로 계획 • 마당, 진입로, 안내판 등은 흙, 돌, 목재 등의 친환경 자연재료로 계획 • 무형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색채이미지를 발굴, 분석하여 독창적 지역 색채경관 조성에 적용
주 변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주변 마을의 색채경관은 이들 문화재와 조화를 고려한 계획이어야 함 • 문화재 인근 시설물의 색채는 유목성을 낮추어서, 문화재의 색채경관을 압도하지 않도록 계획 • 문화재와 유사조화 범위 내에서 배색

6.2.3 부문별 계획 및 예시

1) 전통가옥의 정비사례

- 기와지붕은 채색에 의한 정비가 아닌, 재료를 교체 정비한다.
- 기둥, 창호, 서까래, 벽체의 정비도 채색에 의한 정비가 아닌, 원형재료로정비한다.



〈그림 168〉 역사·문화경관의 색채정비 사례

2) 향토문화자원에서 색채팔레트 개발사례

- 마을이나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저장고, 방앗간, 정자, 서낭당 등 향토역사문화재를 통하여 독창적 지역 색을 추출할 수 있다.
- 향토문화자원은 채색에 의한 정비보다는 원형 그대로의 형태와 재료, 색채로 정비한다.



N9,7

2Y6,9/3

4Y6,3/2

10YR6,7/5

〈그림 169〉 향토문화경관에서 색채팔레트 개발 사례

6.3 외부공간 시설물 및 광고물의 색채

6.3.1 기본방향

- 마을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공간 및 기타 시설물들의 색채경관은 자연경관은 물론, 생활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 버스정류장, 공동화장실, 정자, 파고라, 벤치, 야외탁자 등의 시설물들도 마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바, 생활경관 색채계획 방법에 준한다.
 - 가급적 자연재료를 사용하여서, 자연과 무난한 색채조화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농촌·어촌다운 색채경관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도시적 색채 이미지보다는 생산경관이나 자연경관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농촌, 어촌다운 색채계획을 한다.
- 마을의 역사, 문화, 전통, 상징적인 시설들의 색채경관을 보존, 발굴, 계승하도록 계획한다.
 - 오랜 세월동안 전통적으로 보존되고 있는 문화적, 상징적 배색특성을 분석·적용함으로써 독창적인 색채경관이 되도록 한다.
- 상업용 광고물 색채는 생활경관 색채계획과 구분하여 계획한다.
 - 무분별한 외부광고물 색채는 지역이나 마을 색채경관을 저해하는 큰 요소이므로 권역 옥외광고물 색채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광고물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 광고물의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면적비율은 색채매뉴얼을 준수한다.
 - 옥외광고물의 색채매뉴얼은 지역특성을 잘 반영해야 한다.

6.3.2 외부공간 시설물 및 광고물의 색채 매뉴얼

〈표 32〉 외부공간 시설물 및 광고물 색채 매뉴얼

구 분	매 뉴 얼
외부공간 및 세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마당이나 공동주차장 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 공동화장실, 정자, 파고라, 벤치 등 세부시설물들도 마을 색채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바, 생활경관 색채계획에 준하여 계획 • 마을의 외부공간과 세부시설물 색채는 자연경관과 대비조화보다는 유사 또는 동색 조화되도록 계획 • 가급적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자연환경색채와 무난하게 조화되도록 계획 • 도시적 세련미보다는 농촌·어촌다운 색채경관 이미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 • 장승, 솟대, 기타 마을 상징물들은 이들의 전통색채와 재료로 계획
표식시설물 및 상업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식시설물의 색채는 생활경관이나, 외부공간 등 기타 시설물의 색채와 구분하여 개발해야 함 • 표식시설물의 색채도 지역 색을 고려하여 개발 • 상업적 외부광고물은 권장색채 매뉴얼을 준수 • 상업광고물은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을 구분하여 개발 • 상업광고물의 개수와 면적을 제한하여야 함 • 상업광고물에 사용하는 색의 수를 제한하여야 함 • 상업광고물에 사용되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면적 비를 제한하여야 함

6.3.3 부문별 계획 및 예시

1) 외부공간 색채계획 사례



<그림 170> 파고라 및 벤치의 색채경관 사례



<그림 171> 버스정류장의 색채경관 사례

- 버스정류장이나, 파고라, 벤치 등의 마을 외부시설마을들도 마을 색채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 버스정류장, 파고라 벤치 등의 외부 시설물 색채는 자연재료를 사용하여서, 자연경관과 유사 또는 동등조화 되도록 한다.
- 도시적 세련미보다는 농촌·어촌다운 색채경관이미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벤치의 디자인과 색채는 조성지역의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가급적 자연재료를 사용하되, 사람의 신체에 직접 닿는 부분은 목재로 계획한다.
- 도시적 세련미보다는 농촌·어촌다운 색채경관이미지로 계획한다.



<그림 172> 벤치 색채경관 사례

2) 표식시설 색채경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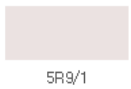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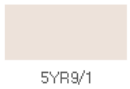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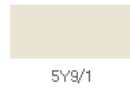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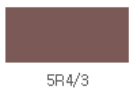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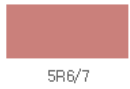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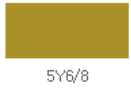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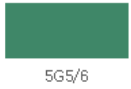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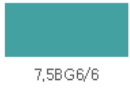
- 표식시설물의 유목성은 자연환경색채와 색상대비에 의해서보다, 색조 대비에 의해 유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주조색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자연재료로 하여서, 주변환경 색채와 무난히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 도시적 세련미보다는 농촌·어촌다운 색채경관이미지로 계획한다.
- 사용하는 색채의 수는 가급적 작게 하며, 최소 크기로 계획한다.



〈그림 173〉 표식시설물 색채경관 사례

3) 상업용 광고물 색채계획 사례

- 상업용 광고물의 개수와 면적은 옥외광고물법 및 시도조례를 반드시 준수한다.
- 개발된 권장색채매뉴얼에 따라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색채와 면적 비를 준수한다.
- 광고물에 사용하는 색의 수에 대한 제한을 준수한다.

주조색	 N8,0	 N9,0	 N9,5	 5R9/1	 5Y9/1	 5Y9/1
보조색	 5YR4/3	 5Y4/3	 5R4/3	 5BG4/2		
강조색	 5R6/7	 5YR6/8	 5Y6/8	 5G5/6	 7,5BG6/6	

간판 정비 전	간판 정비 후	정비 가이드 라인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정비 가이드라인</th> </tr> <tr> <td>지주간판의 형태</td> <td>· 지주간판의 경우 높이 2M이내로 권장 · 가로:세로=1.3:1</td> </tr> <tr> <td>간판의 수</td> <td>· 옥외광고물 관계법과 시도조례에 따름</td> </tr> <tr> <td>색의 수</td> <td>· 하나의 간판에는 4색이내로 제한함</td> </tr> <tr> <td rowspan="2">주조색</td> <td>· 색채</td> <td>· 권장 색채팔레트에 따름</td> </tr> <tr> <td>· 면적</td> <td>· 전체 면적의 70%이상</td> </tr> <tr> <td rowspan="2">보조색 & 악센트 색</td> <td>· 색채</td> <td>· 권장 색채팔레트에 따름</td> </tr> <tr> <td>· 면적</td> <td>· 전체 면적의 30%이내, 3가지 색 이내</td> </tr> <tr> <td>글씨체</td> <td></td> <td>· 업종 특성에 따라 자유</td> </tr> </table>	구분	정비 가이드라인	지주간판의 형태	· 지주간판의 경우 높이 2M이내로 권장 · 가로:세로=1.3:1	간판의 수	· 옥외광고물 관계법과 시도조례에 따름	색의 수	· 하나의 간판에는 4색이내로 제한함	주조색	· 색채	· 권장 색채팔레트에 따름	· 면적	· 전체 면적의 70%이상	보조색 & 악센트 색	· 색채	· 권장 색채팔레트에 따름	· 면적	· 전체 면적의 30%이내, 3가지 색 이내	글씨체		· 업종 특성에 따라 자유
구분	정비 가이드라인																						
지주간판의 형태	· 지주간판의 경우 높이 2M이내로 권장 · 가로:세로=1.3:1																						
간판의 수	· 옥외광고물 관계법과 시도조례에 따름																						
색의 수	· 하나의 간판에는 4색이내로 제한함																						
주조색	· 색채	· 권장 색채팔레트에 따름																					
	· 면적	· 전체 면적의 70%이상																					
보조색 & 악센트 색	· 색채	· 권장 색채팔레트에 따름																					
	· 면적	· 전체 면적의 30%이내, 3가지 색 이내																					
글씨체		· 업종 특성에 따라 자유																					
																							

〈그림 174〉 상업용 광고물 색채계획 사례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요령

개정판 발행	2009년 12월
초 판 발행	2008년 12월
발 행 처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TEL : (02)500-1808(代)
인 쇄	가현기획 TEL : (031)423-6684(代)

■ 표지사진 출처

2009년 제3회 농어촌경관 사진콘테스트 수상작

- (대상) 류종관_유채꽃 피는 함덕마을
- (가작) 박영조_유채밭
- (가작) 유지인_다락논
- (동상) 최임순_오징어 말리기